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2호



2023. 1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2호

2023.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제1부

2023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3)

- I 서문(introduction) / 3
-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 5
-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 11
-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17
- V 서비스(services) / 24
- VI 검증 및 납세 규정 준수 관리 / 34
- VII 징수(collection) / 44
- VIII 분쟁 / 54
- IX 예산 및 인력 / 64
- X 디지털 전환 / 72

목 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85

1. 미국	85
가. 에너지 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상호관계 검토	85
나. 국세청 세정서비스 개선사항 발표	87
다. 스테이킹 보상(Staking Rewards)을 과세대상으로 명시	88
라. 주정부 지원금(State Payments) 과세지침 발표	88
마. 친환경차 세액공제 양도(transfer) 지침 발표	89
바. 2024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Inflation Adjustments) 발표	90
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지침(안) 발표	93
2. 캐나다	94
가. 디지털서비스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 발표	94
나. 신축 임대주택 상품서비스세(GST) 리베이트 인상	96
다. 2024년 연금계획(CCP) 발표	96
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 시행법 발의	98

II 유럽 / 100

1. 영국	100
가. 필라2 관련 다국적 및 내국 추가세액 지침 초안 발표	100
나. 전력발전 추가부담금 지침 발표	101
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회계기준 개정안 채택	101
라. 2023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102
마.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104
바. 암호화자산에 대한 미납세금 관련 자발적 공시 지침 발간	104
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	105

CONTENTS

2. 독일	106
가. 성장기회 및 투자혁신, 조세간소화·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 발표	106
나. 오스트리아·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발표	107
다. 가스·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기 종료	108
라. 제조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	109
마. 요식업 세율감면 지원책 종료 발표	110
3. 프랑스	110
가. EU Public CbCR 지침 관련 내용 입법	110
나. 디지털서비스세 적용 범위 관련 지침 개정	111
다.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상원 통과	112
라. 2024 예산안 발표	113
4. 이탈리아	115
가. 은행에 횡재세 도입	115
나. 최소과세지침 이해를 위한 공개 협의 시작	116
5. 스페인	117
가. 특정 식품에 대한 VAT 인하 연장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 부과	117
6. 포르투갈	118
가. 국가별 보고(CbC reporting) 관련 법령 발표	118
나.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119
다. 사회지원지수 인상 및 연금 지급 연령 연장	124
7. 아일랜드	124
가. 지식개발박스(KDB) 세율 10%로 인상 발표	124
나. 관광 및 환대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125
다. 2024년 예산안 발표	126
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128
8. 스웨덴	128
가. 스웨덴에 위치한 콜오프(Call-Off) 창고로 상품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고정사업장 규정 명확화	128
나.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소유주의 주식 과세 명확화	129
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130
라. PSP 업체의 부가가치세 기록 보고 의무에 관한 법안 관보 게재	131
마. 전문가 세금감면 기간 연장	132
바. 비닐봉지 세금 폐지	132
사. 자연인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제안	133

목 차

9. 오스트리아	134
가. 2024년 개인소득세 면세 한도액 인상	134
나. 스타트업 기업 진흥법 최종 승인	135
10. 노르웨이	135
가. 2024년 예산안 발표	135
나. 2024년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자원임대세 법안 검토	137
11. 벨기에	138
가. 세법 일부개정안 발표	138
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의회 통과	140
12. 룩셈부르크	140
가. 필라2 이행 법안 초안 발표	140
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141
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의회 통과	142
13. 그리스	143
가.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	143
나. 2024년도 예산안 승인	144
14. 네덜란드	145
가. 2024년 부동산 주식 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제안 수정	145
나. 국제 조세 판결에 관한 법령 개정 초안 발표	145
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이행 법안 제정	147
라. 세금부담 없는 전환에 관한 법령 업데이트	148
마.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148
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151
사.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안 개정	151
아. 2024년 세금 계획안 승인	152
15. 덴마크	153
가. 필라2 규정 도입에 대한 공공협의 개시	153
나. 사기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154
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155
라. 개인소득세 개혁 계획 발표	156
마. 2025년부터 승객세 도입 계획 발표	158
16. 핀란드	158
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	158
나. 양도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159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61

1. 일본	161
가.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발표	161
나.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에 관련한 장관급 규정 확정	162
다.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관련 규정 해석 지침 발행	162
라. 2024년 세제 개정 대강 발표	163
2. 중국	165
가. 중국 재무부는 신에너지 승용차에 대한 차량구매세(Vehicle Purchase Tax) 면제 정책 연장을 발표함	165
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관련 조세 완화 정책 발표	166
다. 중국 정부는 R&D기관의 국내 장비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함	166
라. 가격통제형 사회주택 취득·건설 관련 세금 면제·감면 규정 발표	167
마. 사업구조 변경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면제 법안 연장 발표	168
3. 인도	169
가. 새로운 세금 제도와 관련된 사안 개정	169
나. 온라인 게임회사 과세를 위한 CGST 개정안 제정	169
다. 석유 제품 관련 횡재세 개정	170
라. 운송, 광고,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GST 공급장소 규칙 명확화	170
4. 인도네시아	172
가. 현물 혜택의 과세 처리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172
나.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172
5. 홍콩	173
가.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감면 시행 발표	173
6. 호주	174
가. 세제 및 재정 관련 옴니버스 법안 상원 통과	174
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회계표준 개정	174
다. 조세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발표	175
라. 2023년 R&D 세제혜택 청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176
마. 원천징수 분할납부(PAYG installment) 관련 정보 업데이트	177
바. R&D 세제 혜택 관련 정보 공개 요구	177
사. 기업의 장외 자사주 매입 단속 법안 상원 승인	178

목 차

7. 뉴질랜드	179
가. 뉴질랜드 -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79
나. 2023 미니예산 발표	180

IV 국제기구 / 181

1. OECD	181
가. 조세 관련 자동정보교환 국제기준 최종보고서 발표	181
나. 필라1·2 경과보고서 공개	182
다. 필라2 행정지침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추가 발표	182
라. “Tax Policy Reform 2023 보고서” 발간	183
마.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 현재안 발표	184
바. 필라2 STTR 다자협약 발표 및 최저한세 이행 편람 발간	184
2. EU	186
가.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발표	186
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187
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 규정 확정안 발표	187
라.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EFIT) 이니셔티브 제안 발표	188
마. EU 5개국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연기	189

CONTENTS

제1부

2023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3)

〈표 1-II-1〉 총 순 세수징수액 변동(2018~2020년)	6
〈표 1-II-2〉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조세의 비중(2021년)	6
〈표 1-II-3〉 개인소득세 평균 원천징수 비중(2018~2021년)	10
〈표 1-IV-1〉 세목별 전자신고 이용률 비교(2014년 및 2021년)	17
〈표 1-IV-2〉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1년)	21
〈표 1-IV-3〉 세목별 납부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1년)	22
〈표 1-V-1〉 각국의 납세자 인사이트 연구 및 개선 활용사례	25
〈표 1-V-2〉 셀프 서비스 강화 사례	27
〈표 1-V-3〉 가상 어시스턴트(Virtual assistants) 유형 예시	28
〈표 1-V-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s) 서비스 도입 사례	29
〈표 1-V-5〉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 사례	31
〈표 1-V-6〉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용	32
〈표 1-V-7〉 협업 서비스 개발	33
〈표 1-VI-1〉 세무행정의 과학적 분석 시 데이터 활용 소스	35
〈표 1-VI-2〉 세무행정에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국가 비율 변화(2018년, 2021년)	37
〈표 1-VI-3〉 세무조사 수정률 및 추가 징수세액(2018~2021년)	41
〈표 1-VI-4〉 조세범칙조사 기소건수 및 전년 대비 변화율(2018~2021년)	43
〈표 1-VII-1〉 조세채권 징수에 필요한 기능	45
〈표 1-VII-2〉 조세행정당국별 부채관리 개선 계획	46
〈표 1-VII-3〉 2018년과 2021년 사이의 평균 체납률 변화	48
〈표 1-VII-4〉 2018~2021년 세금 유형별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연말 체납 평균 비율 변화	52

표 목차

〈표 1-VII-5〉 조세행정당국별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접근방식	53
〈표 1-VIII-1〉 분쟁해결의 효율성 향상 사례(2023)	56
〈표 1-VIII-2〉 분쟁해결: 연중 개시된 사건 수 변동	57
〈표 1-VIII-3〉 분쟁해결: 회계연도 말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	57
〈표 1-VIII-4〉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 수의 평균 변화(2018~2021년)	60
〈표 1-IX-1〉 2018~2021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64
〈표 1-IX-2〉 2018~2021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화	66
〈표 1-X-1〉 디지털 인증 프로세스가 구축된 기관 비율	73
〈표 1-X-2〉 각 프로세스가 구축된 기관 비율	74
〈표 1-X-3〉 데이터 보안 관련 프로세스 구축 비율	76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I-1〉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 세액공제 내역	86
〈표 2-I-2〉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91
〈표 2-I-3〉 소득세 표준공제 조정	92
〈표 2-I-4〉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주요 내용	93
〈표 2-I-5〉 2024년 CPP 요율 및 최대기여금	97
〈표 2-I-6〉 2024년 CPP2 요율 및 최대기여금	98
〈표 2-II-1〉 포르투갈의 2024년 예산안 개인소득세 세율표 변경	121
〈표 2-II-2〉 청년 근로자의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한 초기 5년간 소득공제	121
〈표 2-II-3〉 벨기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	139
〈표 2-II-4〉 네덜란드 고용소득공제액	152
〈표 2-II-5〉 네덜란드 Box 3 소득 간주 수익률	153
〈표 2-II-6〉 핀란드 2024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160

그림 목차

제1부

2023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3)

[그림 1-II-1]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세수징수액(2021년)	7
[그림 1-II-2] 정부총수입 대비 순 세수징수액(2021년)	8
[그림 1-II-3] 주요 세목의 평균 순 세수징수액 비율(2021년)	9
[그림 1-III-1] 국가별 전체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2021년 기준)	12
[그림 1-III-2]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등록 채널(2021년 기준)	13
[그림 1-III-3] 정부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이용가능 여부 및 데이터베이스 유형(2022년 기준)	14
[그림 1-IV-1] 미리 채움 신고서에 사용되는 공제항목(2021년)	19
[그림 1-V-1] 시각, 청각, 신체, 인지 장애 있는 사용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	31
[그림 1-VI-1] 세무행정 관련 분석 시 빅데이터 활용 현황(2022년)	36
[그림 1-VI-2] 고액 납세자 사무소/프로그램(LTO/P) 존재 여부 및 제공 기능(2021년)	38
[그림 1-VII-1] 2021년 총 순 세수 대비 총 체납금 비율: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정부	49
[그림 1-VII-2] 2021년 총 순수익 대비 총 연체금 비율: 비율이 50% 미만인 정부	49
[그림 1-VII-3] 2021년 총 연말 체납금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금	50
[그림 1-VII-4]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총 체납금 추이	51
[그림 1-VIII-1] 분쟁 해결 시 사용 가능한 검토 체계(2021년)	55
[그림 1-VIII-2] 내부검토절차: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0~2021년)	58
[그림 1-VIII-3] 외부기구의 독립검토: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0~2021년)	59
[그림 1-VIII-4]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의 수	59
[그림 1-VIII-5]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 비율(2020~2021년)	60
[그림 1-VIII-6] 납세자 분류별 협력적 납세순응 접근방식(2021년)	62
[그림 1-IX-1]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1년)	66

CONTENTS

[그림 1-IX-2]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1년)	67
[그림 1-IX-3]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연령(2021년)	69
[그림 1-IX-4]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및 사용 변화	70
[그림 1-X-1] 세무당국의 API 개발 및 타사 관련 비율(2022년)	75
[그림 1-X-2] 정부 부서 간 정보 교환(2022년)	77
[그림 1-X-3]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 및 계획(2022년)	79



제1부

2023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3



I 서문(introduction)

- ▾ OECD 조세행정 시리즈(Tax Administration Series, TA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행정의 진화 방식에 대해 다뤄옴

 - ▶ 특히 이번 2023년 발간본에서는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룸
 -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새로운 업무 방식을 팬데믹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투자
 -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모델의 혁신
 - 더 넓은 범위의 정부와의 협력 및 통합 강화
 - 납세자에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향상된 데이터 세트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
 -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의무이행을 개선
- ▾ 최근 소셜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 고급 분석 기법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술 변화를 통해 조세행정당국의 탄력성과 적응력이 촉진·활성화됨

 - ▶ 이러한 기술은 조세행정당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세무행정 운영모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많은 조세행정당국에서 납세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더욱 활용하고 있음

 - ▶ 전통적으로 조세행정당국의 자체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어온 세무행정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같은 제3자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탑재(embed)' 하도록 하고 있음
 - ▶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납세자 의무이행을 강화하면서 부담은 축소시킬 수 있음

- ▣ 이러한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의 중심 업무가 적시성 있고 정확한 세액 징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하의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봄
 - ▶ (제2장)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조세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통계를 다룸
 - ▶ (제3장) 모든 납세자의 등록여부 확인과 관련한 조세행정당국의 업무 및 디지털 신원 확인과 관련하여 조세행정당국의 노력에 대해 다룸
 - ▶ (제4장) 세무신고 및 납부의 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조세 평가 기능을 살펴보고 신고·납부를 위한 e-채널 사용을 검토,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행정당국의 노력과 적시 신고·납부 수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 ▶ (제5장) 납세자의 '셀프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이 정교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룸
 - ▶ (제6장) 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의무 불이행을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의 변화를 다룸
 - ▶ (제7장) 조세행정당국의 미납채무 징수 관리방식과 관련한 최근 특징을 다룸
 - ▶ (제8장) 조세행정당국이 조세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다룸
 - ▶ (제9장) 조세행정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추세에 대해 다룸
 - ▶ (제10장) 조세행정당국이 수행 중에 있는 디지털 전환 여정의 트렌드를 다룸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 ▣ 조세행정의 주된 목적은 공공 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조세행정당국의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옴
- ▶ 이 장에서는 징수된 순 세입과 조세행정 성과와 관련된 여러 주요 수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는 데 조세행정이 수행하는 더 넓은 역할을 살펴봄

1 코로나19 이후 조세행정당국의 역할 및 징수

- ▣ 여러 조세행정당국이 코로나19 당시 도입하였던 업무 관행은 이제 일상적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행정당국의 운영 방식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됨
 - ▶ 벨기에는 2020년 'REACH-OUT' 캠페인을 통해 특정 납세자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서비스 대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캠페인은 이후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지연 납부를 한 기록이 있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문제를 지원함
- ▣ 또한 세수 징수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었음
 - ▶ 2019년과 2020년 기간 동안 대다수의 관할국에서 세수 징수액이 감소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 기간 동안에는 거의 모든 관할국에서 다시 세수 징수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표 1-11-1〉 총 순 세수징수액 변동(2018~2020년)

(단위: %)

총 순 세수징수액 변동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증가(조세행정당국의 비율)	96	23	95
감소(조세행정당국의 비율)	4	77	5
평균 변동률	+6.2	-3.8	+17.2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29 Table 2.1. 재인용

2 조세행정당국(tax administrations)의 역할

▣ 조세행정당국의 업무범위는 비(非)조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고, 동 추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됨

▶ 조세행정당국의 업무범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세 및 간접세 징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 업무범위는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옴

- 추가되는 업무범위는 다음을 포함함: (i) 납세자에게 복지혜택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 (ii) 학자금 등 대(對)정부채무 징수, (iii) 도박·인구등록부 감독·관리 등 비(非)조세 영역
-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제공을 위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지급금 제공에 대한 적격성과 세무상 거주지 상태 등 대상자의 적격성을 결정함

〈표 1-11-2〉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조세의 비중(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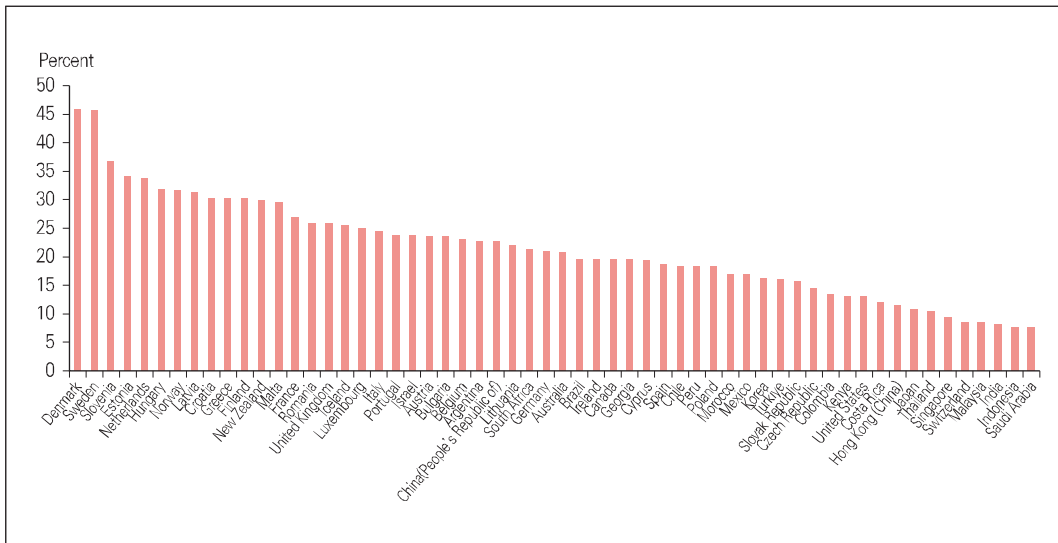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소비세- 국내	차량세	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및 기타 세금	기타 상품 및 서비스세	사회보장 기여금	관세
98	100	95	62	48	47	24	48	55	40	5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29 Table 2.2. 재인용

3 세수 징수액(revenue col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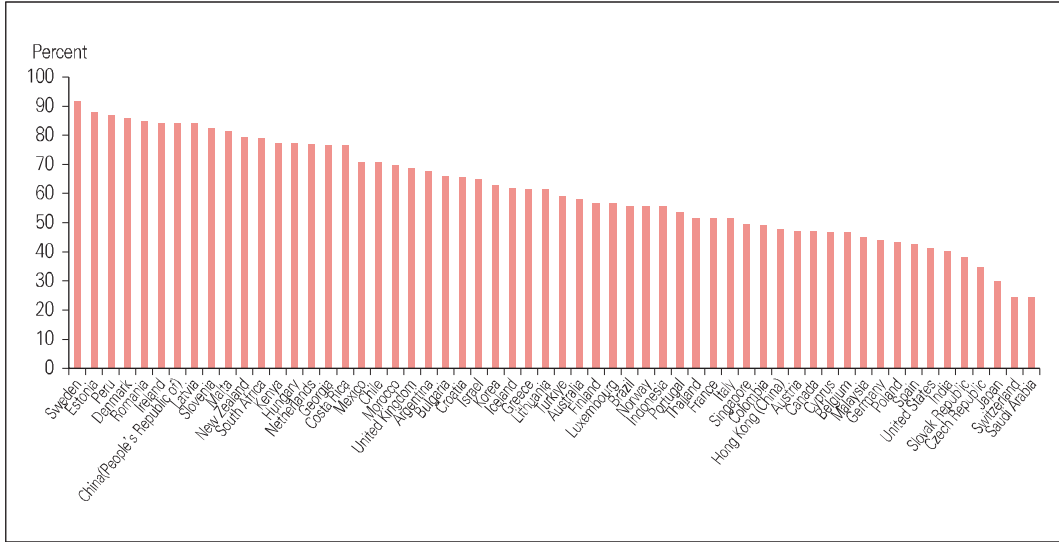
- ▾ 2021년, 조세행정당국의 순 세수징수액은 관할국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1%를 차지하였으며, 관할국 정부총수입의 평균 61%를 차지함
- ▶ 아래의 [그림 1-II-1]은 2021년 관할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세수징수액을 나타내며, 국가별로 10% 미만에서부터 40%를 초과하기도 함
 -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아래의 [그림 1-II-2]는 2021년 관할국의 정부총수입에서 순 세수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 중 40개 조세행정당국에서 정부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순 세수징수액을 보고하였음

[그림 1-II-1]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세수징수액(2021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1 Figure 2.1. 재인용

[그림 1-11-2] 정부총수입 대비 순 세수징수액(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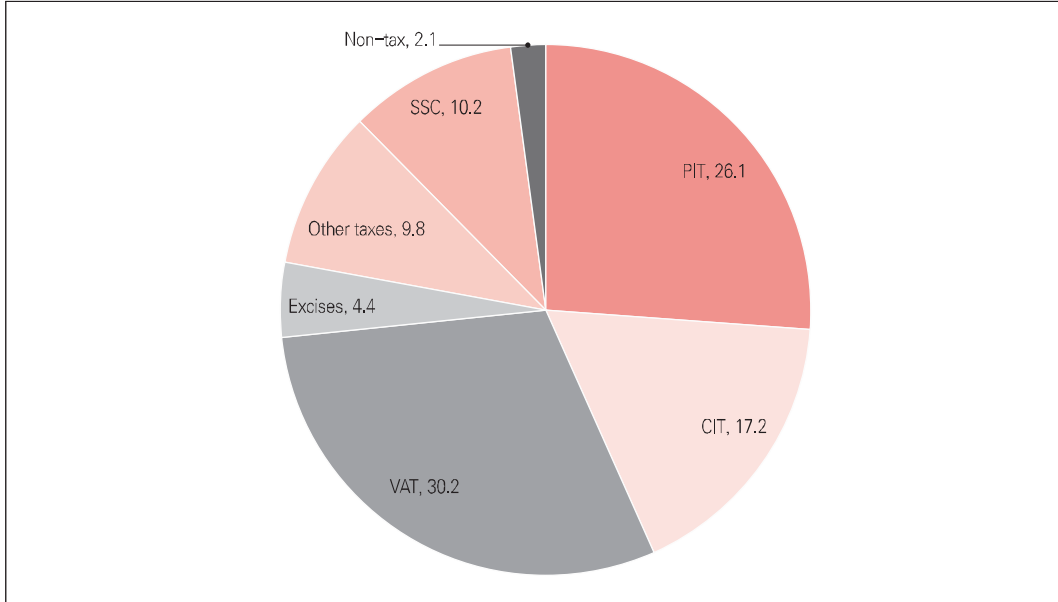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1 Figure 2.2. 재인용

- ▣ 또한 2021년,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는 각각 순 세수징수액의 30%와 26%를 차지하였음([그림 1-11-3] 참조)
- ▶ 법인세의 경우 순 세수징수액의 17%를, 사회보장기여금은 10%를 차지함
 - 다만 사회보장기여금은 조세행정당국이 징수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으므로 동 수치는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그림 1-11-3] 주요 세목의 평균 순 세수징수액 비율(2021년)

(단위: %)



주: PIT-개인소득세, CIT-법인소득세, VAT-부가가치세, Excises-소비세, Other taxes-기타세금, SSC-사회보장기여금, Non-tax-비(非)조세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1 Figure 2.3. 재인용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조세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조세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 의무불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규 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음

▶ 새로운 납세자 교육 이니셔티브를 개발함

- 예를 들어, 브라질은 재정 시민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재정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조세 문제에 대한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납세자 조세 의무이행 개선에 힘씀
- 핀란드는 ‘행복한 납세자(Happy Taxpayer)’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창의적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세수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소개함으로써 조세 납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
- 인도는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보드게임, 3D 퍼즐, 만화책, 애니메이션 등을 출시하여 미래 납세자의 조세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둠

- ▶ 조세 징수 접근방식을 디지털화함
 -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세청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세 유형에 걸쳐 일선 업무를 통합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와 지속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납세자를 관리하는 접근 방식을 차별화함
 - ▶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함
 - ▶ 조세 의무불이행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함
- ▣ 징수 효율화를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신고 및 과소납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 자동화의 확대, 데이터의 교차 검증 강화, 범정부적 접근 방식 등은 오신고 및 과소납부 문제를 줄일 수 있음
 - ▶ 아래의 <표 1-II-3>은 제3자가 원천징수한 후 해당 세액을 행정당국에 납부한 총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며, 2021년에는 개인소득세 총 징수액의 약 80%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추정됨

<표 1-II-3> 개인소득세 평균 원천징수 비중(2018~2021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18년과 2021년 간 변동(%p)
79.1	78.9	81.7	81.2	+2.6

주: 2018~2021년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43개 관할국의 개인소득세 평균 원천징수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5 Table 2.3. 재인용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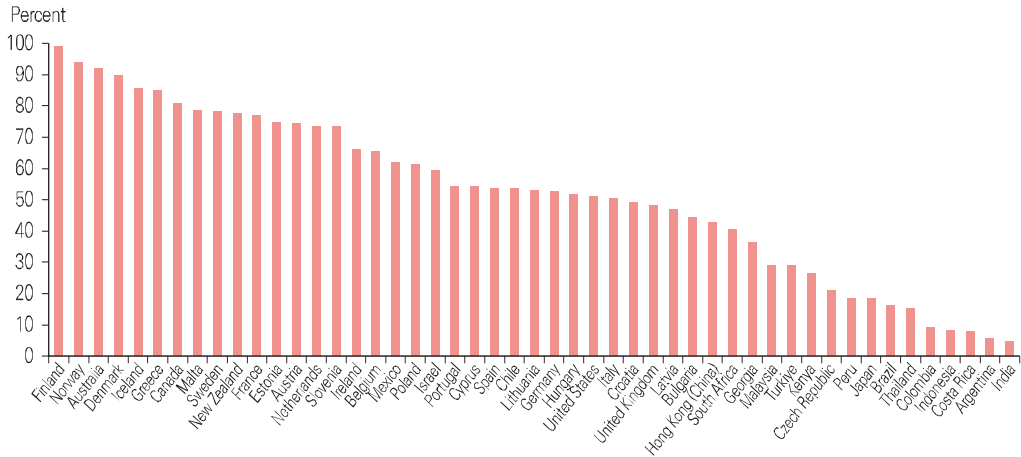
- ▾ 납세자를 등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체 검증,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제3자 신고 및 대사(matching) 등 납세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이 장에서는 납세자 등록 및 신원확인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쟁점인 등록 수준, 등록 채널,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신원확인 관리, 디지털 신원확인에 대한 공통 접근에 대해 설명함

1

등록 수준

- ▾ 조세절차상 의무를 설정하고 조치 및 개입을 모니터링하는 납세 시스템 내로 납세자를 진입시키는 납세자 등록 시스템은 조세행정당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 이러한 효과적인 납세자 등록 시스템은 납세자를 관리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함
 - ▶ 다음 [그림 1-III-1]은 전체 인구 대비 등록된 개인납세자의 비율을 보여주며, 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 지역 국가에서 등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III-1] 국가별 전체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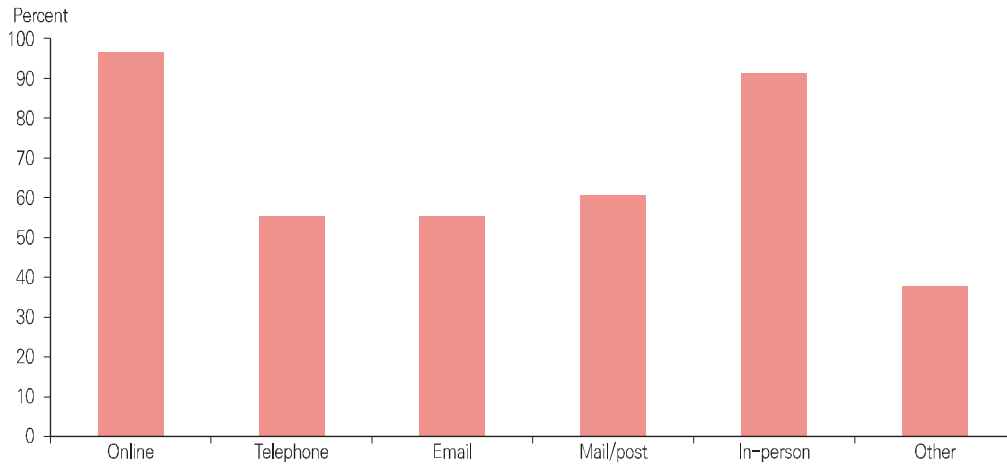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8 Figure 3.1. 재인용

2 등록 채널

- ▣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채널이 하나 이상 있으며, 조사 대상 국가 중 두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였음
 - ▶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라인 등록 채널은 현재 97%의 국가에서 제공되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등록 채널이며([그림 1-III-2] 참조),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납세자 등록이 온라인으로만 허용되기도 함
 - ▶ 대면 채널은 여전히 중요한 채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III-2]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등록 채널(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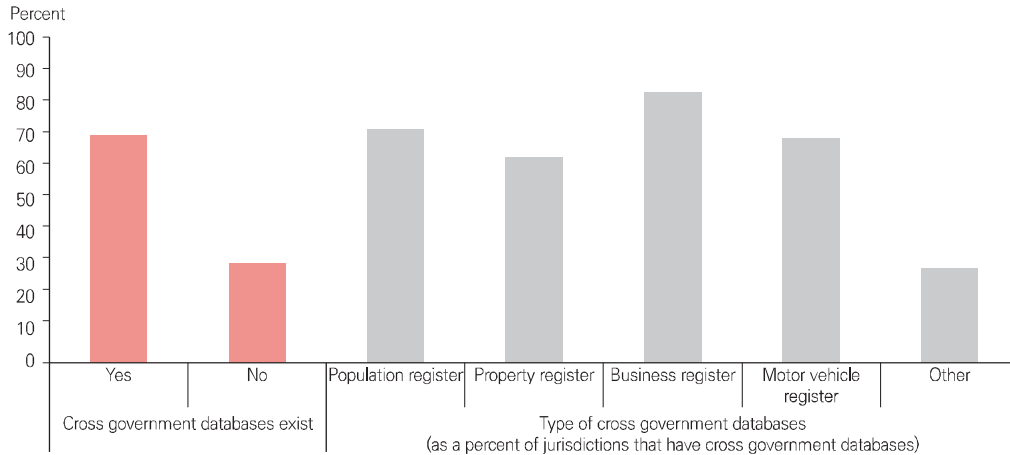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39 Figure 3.2. 재인용

- ▶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확인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CVITP)을 통해 전담 자원봉사 팀을 구성하여 납세자 신원 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2019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My Number Card'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멕시코는 생체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가 지문, 홍채 스캔, 사진 및 서명 등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로그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 ▣ 각 조세행정당국은 최신의 세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타 정부기관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 ▶ 2022년 기준, 약 70%의 행정당국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함을 보고하였으며, 법인 등록(business register) 및 인구 등록(population register) 등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그림 1-III-3] 참조)

[그림 1-III-3] 정부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이용가능 여부 및 데이터베이스 유형(2022년 기준)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41 Figure 3.3. 재인용

- ▣ 납세자 주소지, 은행 정보 등 조세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시민 및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 납세자와 연락하거나 직접적 혜택이나 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기관이 증가하면서 정부 전반의 정보 통합이 늘어나고 있음
 - ▶ 이외에도 법인의 신규 등록이나 자녀의 출생 등록과 동시에 납세 시스템에도 등록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동일한 식별 정보로 납세자가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체코는 법무부, 재무부 및 재무총국 간 세무 관리 과정에서 수취한 데이터를 등기 법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 이러한 통합의 결과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됨

4 신원확인 관리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 정보의 획득에 대한 불법적인 시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신분 도용과 정보의 도난을 막기 위해 다단계 인증을 통해 실제 납세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 고유의 생체 정보를 사용하기도 함
- ▾ 아르헨티나는 모바일 앱 “토큰 AFIP”를 이용하여, 민감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AFIP를 통해 디지털 절차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납세자를 위한 이중 인증 프로세스를 구현함
- ▾ 중국은 통합 신원관리 플랫폼(Unified Identity Management Platform)을 통해 통합 신원관리, 신원 인증, 접근 통제, 암호 서비스 및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함
 - ▶ 이름, 이메일 계정, 휴대폰 번호, SMS, 암호,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의 조합을 활용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5단계 인증을 제공함
 - ▶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모두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의 조세행정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당국의 내부통제 업무를 지원함

5 디지털 신원확인에 대한 공통 접근

- ▾ 최근 각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영역을 넘어선 국경 간 거래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거래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 ▶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공유경제의 확산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인 중소기업과 개인이 점차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하여 이들의 소득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짐
- ▾ 이렇게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조치 및 모델 규칙이 도입 혹은 제안되기도 함
 - ▶ EU는 2014년 국경을 넘어선 신원확인 및 등록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자 신원확인 인증 및 신뢰 서비스(European Union’s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를 도입함

- ▶ OECD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 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비거주자의 금융 계좌 정보는 계좌주의 과세목적상 거주지의 조세행정당국을 통해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
 - 공통보고기준과 맥락을 함께하는 다른 조치로는 미국의 FATCA(United State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있음
- ▶ 또한 OECD는 2019년 보고서 『공유 및 깃 경제(The Sharing and Gig Economy)』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모델 규칙을 발표함
 - 플랫폼을 통해 숙박, 교통 및 개인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소화되고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이 장에서는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의 전반적인 조세행정을 살펴봄

- ▶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란 신고서 제출, 환급 등과 같은 세무신고와 납부행정, 은
행업무 등과 같은 세금납부에 대한 조세행정의 모든 활동을 검토하는 것임
 -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납세자의 전자채널 이용현황을 살펴봄
 - 미리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는 각 행정당국의 사례를 제공함
 -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의 준수에 대해 논의함
 - 조세행정 평가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

1 전자채널의 이용(Use of e-channels for filing and paying)

▣ 조세행정의 전산화로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채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전자신고) 2014년 대비 2021년 전자신고 이용률(e-filing rates)이 약 17~21% 크게
증가함
 - 2021년 전자신고 이용률은 개인소득세의 경우 85%, 법인소득세의 경우 95%, 부가가
치세의 경우 98%를 상회함

〈표 1-IV-1〉 세목별 전자신고 이용률 비교(2014년 및 2021년)

(단위: %)

세목	2014년	2021년	증감
개인소득세(33개)	65.0	85.1	+20.1
법인소득세(35개)	77.2	95.3	+18.1
부가가치세(32개)	81.4	98.7	+17.3

주: 2014년과 2021년 동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평균 전자신고 이용률로, 괄호 안의 숫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입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48 Table 4.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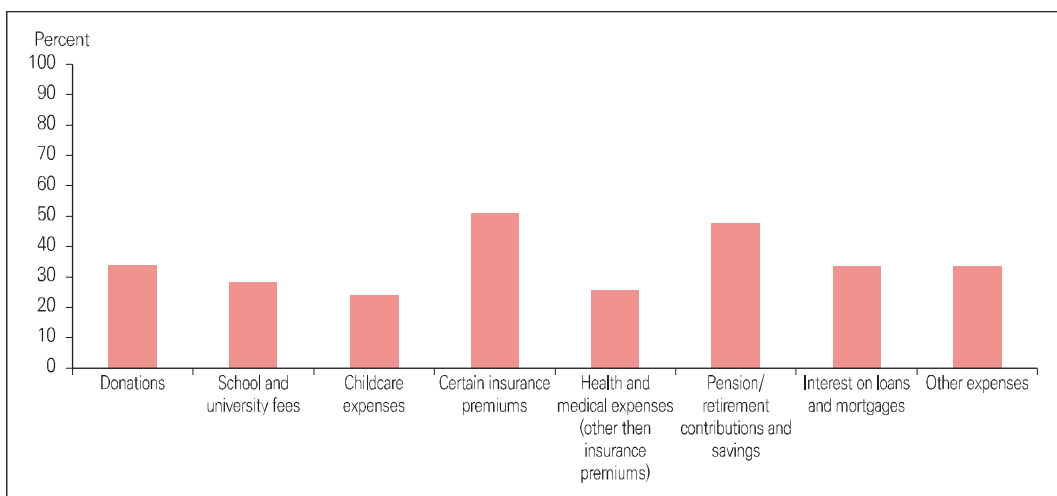
- ▶ **(전자납부)** 2021년 전자납부 이용률(electronic payments rates)은 약 90%임
 - 특히 납부세액이 고액인 납세자의 전자납부 이용률이 높음
- ▶ 다만, 여전히 다수의 관할권에서는 전자채널이 아닌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고서(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약 5,700만건 이상임
 - 전자채널의 이용을 권장하는 행정당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채널이 아닌 서면 등 다른 방식의 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보고서에서는 헝가리와 일본의 전자채널 세무신고서비스를 소개함
 - ▶ 헝가리는 ‘단일과세 마법사 앱(the Flat Rate Tax Wizard Web Application)’을 제공함
 - ‘단일과세 마법사 앱’은 미리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세무 및 사회보장기여금 신고서의 완성을 납세자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도와주는 세무신고서비스임
 - 동 서비스 대상자는 단일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로 헝가리의 자영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헝가리는 동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 일본은 ‘e-Tax 앱’을 제공함
 - ‘e-Tax 앱’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세무신고서비스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약 51%가 동 서비스를 이용함
 - 동 서비스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찍으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 세부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이 탑재됨

2 미리 채움 신고서(Pre-filled returns)

- ▣ 행정당국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미리 채움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은 ‘미리 채움 신고서’를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함
 - 데이터의 범위에는 조세행정당국이 보유한 소득, 인적사항 등과 더불어 제3자 기관을 통해 획득한 과세정보가 포함됨

- 제3자 기관은 기부금, 등록금,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 또는 세액공제에 대한 원시데이터를 제공함
- 사전 작성의 범위는 행정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과세정보에 따라 결정되므로 광범위하고 시기적절한 제3자 기관의 보고는 매우 중요함
- 조세행정당국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 신고서의 항목이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함

[그림 1-IV-1] 미리 채움 신고서에 사용되는 공제항목(2021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50 Figure 4.1. 재인용

- ▶ 일부 조세행정당국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법률을 모색하고 있음
 - 세무신고 자동화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제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세제의 단순화는 세무신고 자동화의 오류를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 일부 나라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인 ‘완전한 미리 채움 신고서(complete pre-filled returns)’를 제공하고 있음
 - ▶ 호주는 2022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향상된 미리 채움 기능을 도입함
 - 이전에는 미리 채워진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후속조치가 필요했음

- 신고 시 미리 채워진 은행정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모델을 시범 시행했고 그 결과 후속조치는 74% 감소함
- ▶ 체코는 2021년, ‘MOJE daně(My Taxes)’ 프로젝트를 시행함
 - 체코는 부동산의 소유주 변동으로 양도소득세¹⁾ 신고를 할 때 ‘MOJE daně’ 포털을 이용하면 신고서에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짐
 - 또한 세무신고서의 과세정보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음
- ▶ 멕시코는 ‘CFDI(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²⁾의 과세정보를 토대로 미리 채움 신고서를 제공함
 - 국세청은 징수 및 감사기능을 ‘CFDI’의 거래정보를 실시간 액세스하여 개선함
 - ‘CFDI’의 도입으로 과세표준은 150% 증가하고 2010년 대비 2016년의 탈세율은 35.7%에서 16.1%로 감소함
- ▶ 네덜란드는 상업용 장부부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세무신고 모듈을 제공함
 - 국세청은 상업용 장부부기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부기자료를 세무신고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듈을 구축함
 - 동 모듈은 상업용 장부부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에게 모두 제공되고 부기자료는 국세청의 세무신고서로 자동 변환됨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가 범하는 오류를 검토하여 무신고 등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예측기술을 개발함
 - ▶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연락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규정 미준수 납세자에게 맞춤형 경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함
 - ▶ 스페인은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무신고자를 식별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무신고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후속 감사조치를 줄이고자 함

1) 부동산의 매입 또는 매각으로 소유주 변동이 있을 때 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신고서에 기입해야 함
 2) ‘CFDI’란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내용증빙인 디지털 영수증으로 구입시기, 금액, 부과세금 등이 기재됨

3 세무신고 준수(On-time return filing)

- ▣ 세무신고는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성립하고 조세행정당국의 세금징수를 집행하는 주요한 수단임
 - ▶ 신고기한 준수율은 조세제도의 건전성과 조세행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법인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85%가 신고기한을 준수함
 -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소득세의 신고기한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재무제표 및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임

〈표 1-Ⅳ-2〉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1년)

(단위: %)

세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소득세(37개)	85.6	85.1	85.5	85.5
법인소득세(40개)	78.3	79.2	78.2	76.2
원천징수세(28개)	89.0	88.6	87.1	88.1
부가가치세(42개)	87.1	86.3	86.0	85.7

주: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평균 신고기한 준수율로, 괄호 안의 숫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입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53 Table 4.5. 재인용

- ▣ 기한 내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각국은 신고절차의 주요 지점에서 ‘넋지효과’³⁾를 활용함
 - ▶ 브라질은 어려운 법률 또는 전문용어 대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납세자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자 노력함
 - 브라질 국립행동경제학센터(Behavioural Economics National Centre, CECOM)는 암기하기 쉬운 7가지 기본규칙이 담긴 지침을 개발하여 국세청을 대상으로 교육함
 - 국세청 실무진은 동 지침을 바탕으로 어려운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납세자와 소통함
 - ▶ 슬로바키아는 무신고자와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신고준

3)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임

수율을 개선시킴

- 슬로바키아는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자 중 3분의 1만이 신고서를 제출함
- 2020년 과세연도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2020년 양도소득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통지함
- 그 결과 서신을 받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하여 무신고자의 신고율은 27%, 신고대상자의 신고율은 14% 증가함

4 세금납부 준수(On-time payment)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납부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함
 - ▶ 납세자는 기존 사용하던 은행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게 됨
 - ▶ 납부방식의 개선으로 조세행정의 비용은 낮아지고 세금납부의 접근성은 높아져 기한 내 납부건수가 늘어나고 미납건수는 줄어들음
 - 다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의 기한 내 납부 준수율은 하락함

〈표 1-Ⅳ-3〉 세목별 납부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1년)

(단위: %)

세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소득세(30개)	81.5	81.2	81.0	77.2
법인소득세(33개)	84.6	85.1	82.5	83.5
원천징수세(29개)	94.5	94.3	91.6	91.4
부가가치세(33개)	87.9	88.0	87.0	86.9

주: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평균 납부기한 준수율로, 괄호 안의 숫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입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57 Table 4.7. 재인용

- ▣ 영국은 온라인 해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미납을 방지하고자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인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 영국 국세청은 학계 및 핀테크 협력업체와 함께 결제 데이터 전송기술을 개발함
 - 결제 데이터 전송기술이란 기존 결제채널에 개입하여 결제 데이터를 조세행정당국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를 최종 목표로 함
 - ▶ 그동안 온라인채널 해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정부의 세수손실,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이 문제되었고 이를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5 환급 및 공제 관련 조세행정 간소화(Refunds and credits)

- ▣ 조세행정당국의 환급이 지연되면 납세자의 초과 납부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환급 관련 조세행정 간소화는 중요함
 - ▶ 대부분의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있음
 - 다만, 수월한 환급시스템은 사기성 환급신청에 취약하므로 환급시스템 구축에는 위험기반 접근방식이 요구됨
 - ▶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각국은 환급 관련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고자 노력함
 -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상당수의 납세자가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음
 - 환급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환급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함
- ▣ 네덜란드는 2015년, 환급신청의 검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 동 소프트웨어는 환급신청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규칙과 통계를 기반으로 개발됨
 - 네덜란드 국세청은 연간 약 250만건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수동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네덜란드 감사원은 2019년, 방대한 양의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를 동 소프트웨어가 상당부분 지원하여 선별의 효율성을 두 배로 높여준다고 발표함
 - ▶ 최신 버전에는 설명의 명확성, 선별의 현대화, 외국기업의 환급신청 검토 등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환급시스템을 개선함

V 서비스(services)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다양한 기술 혁신 및 활용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납세자 개별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확대 중임
 - ▶ 인공지능,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2M(Machine-to-Machine)⁴⁾ 등의 첨단기술로 더 많은 ‘설계별 규정 준수(Compliance-by-Design)’의 접근방식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세무행정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관련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추세가 가속화될 예정임
 - 납세자 규정 준수 지원의 핵심은 구체적인 지침, 적절한 프롬프트(Prompts), 계산 도구와 같이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각 조세행정당국은 관련 운영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 사용을 급속히 늘리고 납세자 개별 상황에 보다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중임
 - ▶ 디지털 혁신을 통한 납세자 지원 강화 사례로 이탈리아의 쉬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납세지원 요청을 관리하는 기술 도구의 업데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와 접근 채널을 구현하여 효율성을 증대한 바 있음
 - 쉬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요청 관리를 위한 과학 기술적 툴(Technological tools) 업데이트, 납세자 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및 접근 채널(전화, 메일, SMS)을 구현하여 납세자를 지원·관리하고 관련 만족도 조사를 종합·분석적으로 행함

1 납세자 인사이트(Taxpayer Insight)

- ▣ ‘행동통찰력(Behavioral insight)’을 통한 조세행정당국의 납세자 서비스 개선
 - ▶ 기술 사용의 증가와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로 인해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서비스 사용 경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4) 기계와 기계의 직접통신, 즉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들이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기계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용 가능함

- ▶ ‘행동통찰력(Behavioral insights)’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지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 행동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정책과 개입 설계에 사용됨
 -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된 통찰력은 앞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조세행정을 위해 사용 및 강화될 수 있음
- ▶ 자발적 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 연구자를 고용하고 특정 영역에서 행동 통찰력을 사용하는 세무당국의 보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또한, 각국의 세무당국이 행동통찰력 방법론이나 기법을 사용 중에 있음을 이전 발행 보고서상 보고함
 - 납세자 행동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자발적인 준법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의 피드백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 사례들이 보고됨(<표 1-V-1 참조)

<표 1-V-1> 각국의 납세자 인사이트 연구 및 개선 활용사례

국가	주제	내용
호주	의도적 선택 행동 통찰력 안내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독촉장 수령 후에도 미납하는 이유 연구(고지서와 채무 독촉장 결합 발송과 별개 무작위 발송 대조 실험) · 독촉장과 고지서 결합 시 납부 계획 이행비율을 크게 높임(단, 전체 납부액 영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레버(Behavioral levers) 사용 시 일반적인 통지문 대비 납부 준수를 증대
브라질	재정 시민의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소셜 네트워크 댓글을 긍정·중립·부정으로 분류, 분석하여 국세청 관련 부서가 핵심 문제 파악 · 세금의 경제적 중요성, 공공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 투자 필요
조지아	피드백 매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웹사이트, 문의센터, 전자 채팅, 이메일, 웹 포털 등을 통해 받은 서비스, 정보 평가 가능 · 2022년 납세자에게 피드백 시스템 및 전자 서비스 접근 기능 제공, 채팅 및 콜센터에 영어 가능 직원 배치 등 피드백 매커니즘 개선
이탈리아	납세자 서비스 제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소리 시스템’의 고객만족도 조사 및 시민 만족도 측정, 새로운 서비스 요구사항을 테스트하여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 식별, 개발 시 맞춤형 디자인 제작 · 중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추적하는 심층조사 및 간단한 CS 조사 모두 실시로 납세자의 불만족 영역을 식별하여 개선 조치에 즉각 개입·분석 가능

5) 행동통찰력이란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처리하고,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으로 신경과학, 행동경제학 같은 행동 과학의 원리를 사용하는 학제 간 연구 분야임

〈표 1-V-1〉 의 계속

국가	주제	내용
뉴질랜드	국세청 연결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리서치 패널 IR(Inland Revenue) 7,000여명의 커뮤니티가 IR의 전략 개발에 도움 납세자의 목소리 반영, 납세자 중심 조직, 납세자 중심적인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
스페인	지원 포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 통합 지원 포털(Portal de Asistencia al Contribuyente, PACO)을 통해 모든 영역의 지침, 지원 자료를 통합하여 납세자 및 세무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 프로그램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전화지원, 통지, 법적 프레임워크 및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등 각 섹션 주제별 정보 및 지원과 세무 공무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와 지원 제공
터키	행동 통찰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의 세금 인식과 자발적 준수 향상을 위해 납세자 행정 전반에 걸친 모든 관행 및 서비스 검토·평가 행동 공공정책 개발 및 실행 부서의 설립을 위한 팀 구성(141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본부의 17개 부서, 지방의 30개 세무서 인력으로 구성) 이는 미리 작성된 신고서 제출 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납부 증가의 결과를 가져옴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64-66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작성

2 서비스 수요관리(Managing service demand)

- ▣ 납세자 만족을 위해 중요한 주요 채널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요구·제약 사항에 대한 올바른 측정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 ▶ 팬데믹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과 함께 온라인 채널 사용이 크게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 ▶ 세무서 직접 방문은 2021년 이후 급격히 감소된 이후 지속되었으며 관련 데이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직접방문에서 온라인 상호 작용으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암시함
 - 종이로 된 안내문 등의 사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챗봇을 통한 디지털 지원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 채널이 되었음

가. 셀프 서비스 지원

▶ 조세행정당국에서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는 확대 및 지속적인 성장 중임

- ▶ 다양한 대화형 도구와 함께 온라인으로 등록, 제출, 지불하는 기능 등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가능함
- ▶ 또한, 다수의 세무당국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납세자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발전 중에 있음
- ▶ 구체적인 셀프 서비스 강화 사례는 이하 <표 1-V-2>와 같음

<표 1-V-2> 셀프 서비스 강화 사례

국가	주제	내용
캐나다	진행상황 추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에 제출된 파일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담은 서비스 옵션을 납세자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게 목표 완료 날짜 제공, 파일 상태 변경 시 전자 알림 · 향소 서비스, 법인세 초기 평가 및 조정 등의 기능을 포함한 개인·기업·대표자를 위한 서비스 확장 중
일본	결제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없는 납부를 장려하여 국세 납부 대책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기타 관련 기관 협력 · 양도세 납부의 경우 은행계좌, 저축계좌에서 자동 인출이 가능하며 국세 직접 온라인 납부(온라인신고 e-Tax 포털을 이용하여 지정 은행계좌에서 세액 인출), 인터넷 뱅킹, ATM을 이용한 온라인 세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가능 · 금융기관·세무서·편의점 현금 납부 가능
네덜란드	미리 채움 디지털 결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실수, 미결제 금액, 은행 계좌번호, 결제 참조 등으로 인해 다수 오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 과정 자체 어려움으로 미납 가산세와 함께 납부 연체 다수 ·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사전 입력 디지털 온라인 결제 가능 파일 제작으로 미결제 금액을 미리 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오류율 4%에서 0%으로 개선 - 결제 서비스 사용자 설문조사결과 99% 개선, 편리함 응답
영국	오픈뱅킹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 인증 기술 사용 · QR코드 결제 가능하며 PC에서 결제 시작하여 폰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결제 가능 · 2023년에는 온라인 계정 로그인 고객이 미래 날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 도입으로 납세의무 효율적 관리 예정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67-69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작성

나. 가상 어시스턴트(Virtual assistant)

- ▣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 문의 응답 및 납세자 셀프 신고 지원을 위해 가상 어시스턴트를 사용 중이며 관련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 ▶ 2018~2021년 사이 가상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 발달로 납세자의 셀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상,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행정부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강조함
- ▶ 2022년 기준 행정당국의 가상 어시스턴트 사용 유형으로는 가상 어시스턴트가 없는 관리 38.5%, 가상 어시스턴트가 있는 관리 61.5%이며, 이 중 규칙기반(Rule-based) 21.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17.3%, 두 가지 유형 모두는 23.1%으로 조사됨
- 해당 수치는 52개 관할권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완료한 ITTI(Inventory of Tax Technology Initiative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표 1-V-3〉 가상 어시스턴트(Virtual assistants) 유형 예시

국가	서비스명	내용
포르투갈	강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납세자별 자주 묻는 질문에 간단한 답변 제공(연중무휴 24시간 사용 가능, 9시~7시까지 실시간 상담원 지원) · 사용자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와 동시에 대면, 전화 서비스 연락처를 자동 응답으로 전달 · 챗봇과 소셜 미디어 간의 상호 작용, 봇 음성 대화 가능
미국	챗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간 200만건 채팅 처리(영어, 스페인어 제공) · 결제, 통지문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응답에 대한 정보 포함(메뉴 프롬프트를 대신하여 단순화된 시뮬레이션 봇과 대화 가능) · 자동징수시스템(ACS)을 사용하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 관련 음성 봇 서비스 제공 · 적격 납세자는 간단한 단계로 신원 인증하여 납부 계획 설정, 상환 금액 확보, 계좌 거래 정보 수신 등 납부 관련 문제 해결 옵션 선택 가능 ·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ID로 신원 인증 가능, 해당 정보로 프로세스 탐색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 번호 생성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70~71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작성

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국가별 조세행정당국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어 왔으며 단순 정보 및 안내 제공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활용 중에 있음
-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정보 및 안내 제공으로 사용되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거래 및 사용량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납세자 관련 기록 및 개인 세금 계정 접근, 세무당국과 통신, 관련정보 및 세금 신고서 제공, 세금 보고 주요 방법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 또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특성상 납세자는 이동 중에도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여 유연한 셀프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표 1-V-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s) 서비스 도입 사례

국가	서비스명	내용
아르헨티나	생체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모바일 앱상 안면 생체인식 인증 통합으로 방문 없이 신원 확인으로 디지털 방식의 소통 가능(이전에는 내방하여 신원증명 후 세금 로그인 코드 수령) · 동일 기기로 경제 활동 신고, 관련 세금 신고, 전자 고지서 발행, 사업 허가 등 가능
독일	온라인 세금 포털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서류를 OCR이나 QR코드로 스캔하여 소득세 신고서 입력 시 메타데이터 자동 삽입 · 개별 문서 효율적 스캔으로 각 납세자별 온라인 계정 관리 가능 · 납세자 사용자 계정에 보관된 스캔 문서를 세무공무원이 사용 가능하여 서면 요청 생략 · 메타데이터(금액, 날짜, 카테고리) 기록을 온라인 저장하여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 접근 가능
헝가리	모바일 앱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로부터 국세청이 자동차세 평가 업무 인수한 결과 해당 전자결제로 우편 제출 건수 50% 이상 감소함 · 자동차 세금 평가를 지원하고 원활한 납세자의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IT 솔루션 개발 결제서비스
폴란드	전자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으로 전자영수증 다운 가능하여 식별된 결제 바코드를 위해 고객 식별 데이터 불필요 · 언제든지 전자영수증에 접근이 가능, 종이 사용량 감소, 그림자 경제 줄이는 데 도움

〈표 1-V-4〉 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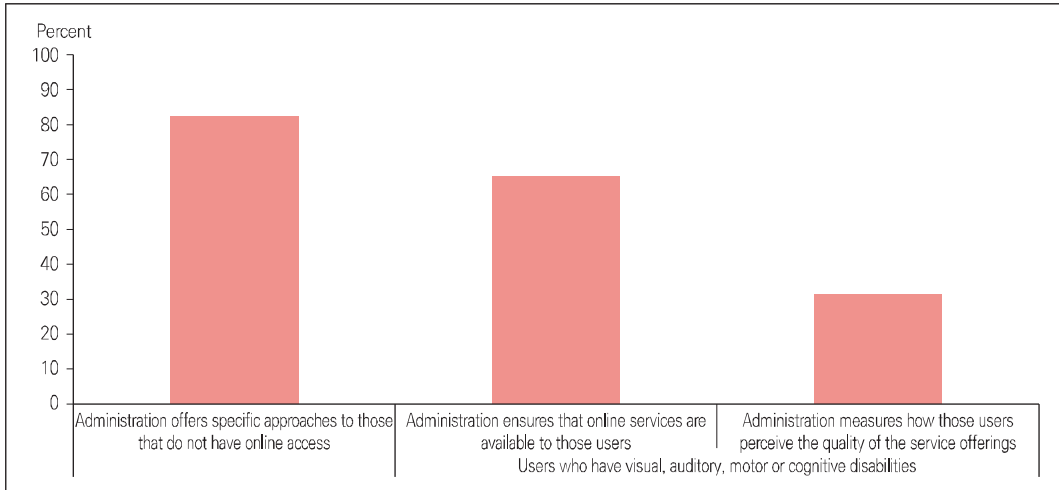
국가	서비스명	내용
포르투갈	자영업 납세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가 셀프로 쉽게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전문 활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발행 및 확인, 템플릿 저장, 수입·지출 분석 및 연도별 비교 가능, 수입액·영수증 발행건수 상위 5위 고객 확인, 세무 공무원 튜토리얼 및 지원 제공 · 디지털 재정 의제, 세금 준수 알림, 앱을 통한 전자결제, 검색 시 음성 인식, 송장 발행 등 새로운 기능 도입 예정
스페인	세금 체납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계좌이체, 카드 결제를 통해 한 번의 결제로 여러 미납액 결제 가능 · 납세 대리인이 접근 가능한 미납액 상담 옵션을 통해 일부 미결제 미납액을 확인하고 모든 세부 정보에 접근 가능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71~72 내용을 저자 요약 작성

3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

- ▣ 디지털 서비스는 편의성 및 비용 효율성을 갖춘 전자 서비스를 갖춰 납세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일부 납세자는 접근할 수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조세행정당국의 전략이 필요함
 - ▶ 디지털 포용성이 필요한 구성원 외 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 전환 전략이 필요함
 - ▶ 이와 관련하여 [그림 1-V-1]에는 80%의 행정당국이 온라인 미접속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60% 이상의 행정당국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함
 - ▶ 해당 납세자 포용성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지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함
 - 각 조세행정당국은 해당 납세자 그룹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전략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며 현행 디지털 포용 사례는 <표 1-V-5> 참조

[그림 1-V-1] 시각, 청각, 신체, 인지 장애 있는 사용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



주: 해당 수치는 52개 관할권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완료한 ITTI 데이터 기반으로 하였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74; OECD, "Non-digital services and services for users with visual, auditory, motor or cognitive disabilities," 2022 인용

<표 1-V-5>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 사례

국가	주제	내용
캐나다	개별 세금 신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세금신고 지원(ITFA)을 통해 각 개인별 연락으로 납세 의무 이행, 세금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가상 세금 진단'을 포함한 CVITP(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인증된 세금 소프트웨어와 다른 신고 방법으로 신고됨 · 대리인이 유선상 개인의 세금 신고서 작성 가능 · 팬데믹 기간 중 지원 제공 안내문 발송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립 · 소득, 상황 등의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환급을 위해서는 적정 심사통과 필요
라트비아	비온라인 납세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시스템(EDS)의 이점: 시간절약, 정확성 향상, 데이터 보안 향상 · 'EDS e-서비스 권한'은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협력하여 전자 제출 가능함(현재 연간 세금 신고서 제출, 전자 급여등록 및 변경 서비스 제공 중) · 국세청 고객 서비스 센터 방문 시 직원이 서면상 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 가능
스페인	고령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P(Platform for the Elderly and Pensioners)은 조세행정당국과 고령자 지원 기본 지침 및 조치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위원회 창설, 고령자 특정 문제 식별 및 분석 - 고령자 연간 지원 계획 -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토콜 개발 - 양식 단순화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3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92-93 내용을 저자 요약 작성

4 협업 서비스(Collaborative Services)

- ▶ 과세행정당국의 디지털 서비스 성장의 핵심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납세자의 시스템 연결 기회를 확대한 것임
 - ▶ API는 직접적인 접근 없이도 시스템, 사람, 사물 간 연결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에서 강조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과세행정당국의 80%가 API를 만들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3이 제3자인 외부 개발자에게 API 제공 중

〈표 1-V-6〉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용

국가	주제	내용
라트비아	전자신고 시스템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시스템(Electronic Declaration System, 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회계 시스템의 정보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인 'System to System' 원칙을 사용하여 수동 입력 최소화 · 인증된 표준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존 전자신고시스템 문서의 데이터 구조와 콘텐츠를 보존함 · EDS를 통해 접수된 문서는 구조화된 검사를 거쳐 납세자에게 결과 및 수정 가능한 오류 알림
멕시코	API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API 관리용 플랫폼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API 간소화 - API 개발 및 배포 관련 향상된 감독 기능을 기관에 제공 - API 관련 자세한 사용 보고서를 생성하여 API 사용자의 사용빈도, 오류 등 정보 도출 가능 - 납세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최신 상태 확인 가능함 - 정보교환 과정을 개선하고 정보교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 진행 중
영국	API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디지털화(Making Tax Digital, MTD)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기업 거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MTD 호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와 신고서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 · 보안, 고객 개인 데이터 보안, 저장,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기술 표준 제시 · 안전한 금융정보 수신, 연도별 업데이트를 통한 연말 납부할 예상 세금 추정 가능(납부계획 및 현금흐름 관리 용이)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75-76 내용을 저자 요약 작성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열린 서비스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새로운 통합 서비스 개발 및 정부 외부 조직과의 협력 심화를 의미함
- ▶ 각 과세행정당국이 운영 모델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와 세무행정의 시스템 연결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며 관련 예시는 아래 <표 1-V-7> 참고

<표 1-V-7> 협업 서비스 개발

국가	주제	내용
핀란드	부동산 거래 디지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주택 거래 플랫폼(Digital Housing Trade Platform, DIAS)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디지털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인, 은행, 국세청을 포함 전체 부동산 시장 협력 개발 - 전자 부동산 거래 가능 및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자동화 - 은행과 중개인 간의 업무처리 과정 효율성 개선
싱가포르	은행 대리인 지정 시스템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사용하여 목록생성, 지정 상태 업데이트 개선 중(현재 은행 지정 약 97%가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암호화된 디지털 리스트 사용으로 분류 및 배포의 수동 처리 방식 과정 제거 - 은행과 타 대리인이 수행한 디지털 결제 식별이 용이
슬로바키아	은행계좌 전자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세액에 대하여 파산 전 회수 절차 진행을 중점으로 둠(신속한 상호 작용 및 IT기술 필요) · IPEX(징수 공무원을 위한 정보 지원)으로 은행, 사회보장국,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 정보 대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체납자의 사기 행위 방지 - 신속한 체납 해결로 자산 압류 기간 감소
영국	API 협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I 최초 적용한 세금디지털화(Making Tax Digital, MTD) 프로그램 시행으로 납세 업무 디지털화 · 납세자 디지털 기록 보관 의무화 및 API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계산오류, 기타 실수 감소로 규정 준수 향상 기대 · MTD 이용 시 더 빠른 신고서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비즈니스 신뢰도 및 생산성 향상 · 500개 이상 MTD호환 소프트웨어 옵션 보유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77-79 내용을 저자 요약 작성

VI 검증 및 납세 규정 준수 관리

1 세무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평가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주요 업무로, 각국의 국세청은 납세 규정 준수 절차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적용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 ▶ 디지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데이터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조세 격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 온라인 금융 거래를 비롯한 전자 세금계산서, 온라인 현금 등록기 등을 통해 납세자 및 관계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는 추세임
 - ▶ 또한 전반적인 납세 규정 준수 위협에 대한 이해와 행동 패턴 파악과 적절한 개입을 위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동과학에 결합하는 경향까지 보여짐
 - 행동과학을 활용하는 조세관청의 비율은 2018년 62%에서 2021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관련하여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기법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존재함
 - ▶ 캐나다 국세청은 밀도 기반 방식, 다중의사결정 나무 방식, 평균 이동 군집화 방식과 같은 이상 탐지법이나 가우시안 혼합 모델 병합군집과 같은 머신러닝의 비지도 학습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집단 내 고위험 혹은 변칙적인 요소들을 식별하고 있음
 - ▶ 스웨덴 국세청은 스웨덴어로 작성된 고유의 필기를 해석 목적으로 개발하고 훈련시킨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수기로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60여개 주제 카테고리 중 하나로 자동 분류함

가. 과학적 분석 시 활용 데이터

- 다양한 기술과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저장 및 통합이 쉬워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은 크게 넓어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는 다음 <표 1-VI-1>과 같음

<표 1-VI-1> 세무행정의 과학적 분석 시 데이터 활용 소스

구분	내용
거래 등록 장치 정보	온라인 금전등록기, (운송 수단외) 여정 기록기 자료
결제 및 중간업체 정보	은행, 가맹점, 결제 중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제공 자료
공급업체 정보 (납세자)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납세자 직접 제출 자료 [국가별 활용 사례] -핀란드: '소득등록부'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소득, 연금, 복리후생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연금 부담금 및 통계, 수수료 결정 등에 활용 -폴란드: '국가 세금계산서 시스템(KSeF)'을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회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수동 데이터 입력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함
소비자 정보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비자 요청 자료
비정형 정보	인터넷 및 SNS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및 거래 관련 활동 추적
타부처 정보	면허, 규제 또는 사회보장 목적으로 타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국가별 활용 사례] -칠레: 대화형 소득세 신고 플랫폼이 정부 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내용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 -스웨덴: 토지등록소 및 국유림 조사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목재 자원의 가치를 평가
국제 협력 정보	공통 보고 표준 및 국가별 보고에 따른 국제 정보 교환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p. 85~87 내용을 저자 요약 작성

- 이때 국제 협력 정보와 관련하여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가 보유한 세무 관련 정보의 요청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자동 이전을 요청에 따르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제 거래의 확대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

해, OECD는 2020년부터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한 표준화된 보고 요건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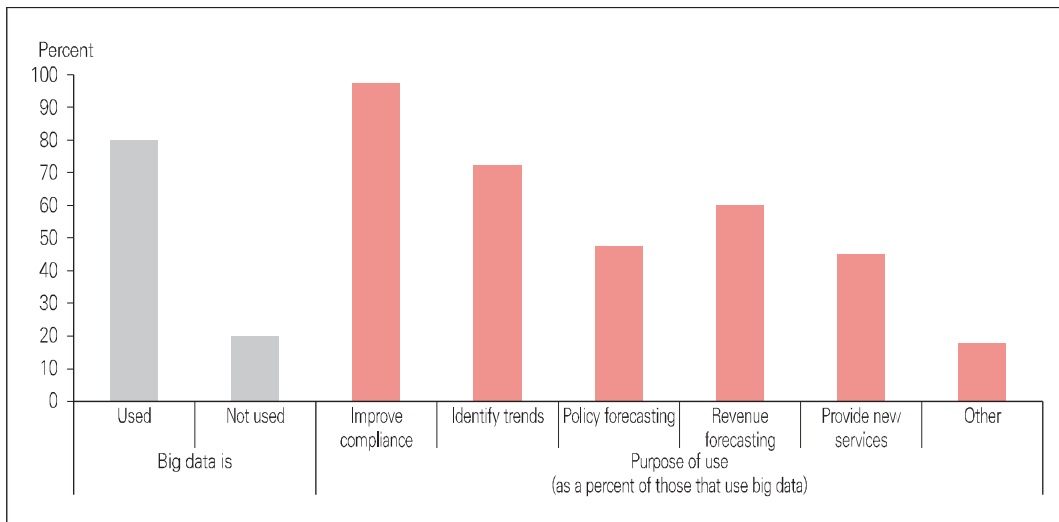
- ▶ 이와 함께 OECD는 2022년 암호화폐와 같은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금융 자산 역시 과세 관련 정보 보고 방식을 표준화하고 이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를 승인한 바 있음

나. 정교화된 분석 기법

1) 데이터 과학 활용

- ▣ 최근 몇 년간 위험 관리 및 식별에 고급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 ▶ 2022년 현재 세무당국의 80%가 업무 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이 납세 순응성을 개선(improve compliace)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VI-1] 세무행정 관련 분석 시 빅데이터 활용 현황(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 90 Figure 6.3. 재인용

- ▶ 2021년 현재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 국가 58개국 중 94.8%(55개)는 이미 데이터 과학 및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준비 과정에 있음
- ▶ AI 역시 위험 평가 및 조세 포탈 행위를 탐지하는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의 사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구현하는 과정에 있음

〈표 1-VI-2〉 세무행정에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국가 비율 변화(2018년, 2021년)

(단위:%)

구분	데이터 과학/분석도구			AI(머신러닝 포함)			프로세스 자동화		
	2018	2021	변화율	2018	2021	변화율	2018	2021	변화율
도입 및 사용중	71.9	94.8	+22.9	31.6	54.4	+22.8	22.8	50.0	+27.2
도입 예정	19.3	5.2	-14.1	15.8	28.1	+12.3	14.0	8.6	-5.4
미도입	8.8	0	-8.8	52.6	17.5	-35.1	63.2	41.4	-21.8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 89 Table 6.1. 재인용

- ▶ 각국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음
 - ▶ 호주는 2022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유예된 조세 부채에 대한 징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자산과 소득 흐름을 파악하는 재정 탄성(Financial Resilience Insight, FRI) 분석 모델링 기능을 개선함
 - 또한 해당 기능이 포함된 기업 고객 프로필(Enterprise Client Profile, ECP) 도구를 활용해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상환 기간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 칠레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금신고서, 물품세 및 부가세 서류를 비롯한 납세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기타 관련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비준수 행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탐지함
 - ▶ 이스라엘은 다양한 지원 분석 툴을 제공하여, 세무행정 절차의 시간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분석 센터를 운영함
 - 분석 센터는 AI 모델, 그래프 분석 모델, 규칙 기반 엔진, 통계보고서 생성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 모델을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모델들을 동시 접속하여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마련함
 - 기업 선정 모델은 2022년 초 세무조사 추천 기업 131개 목록을 제공하고, AI 모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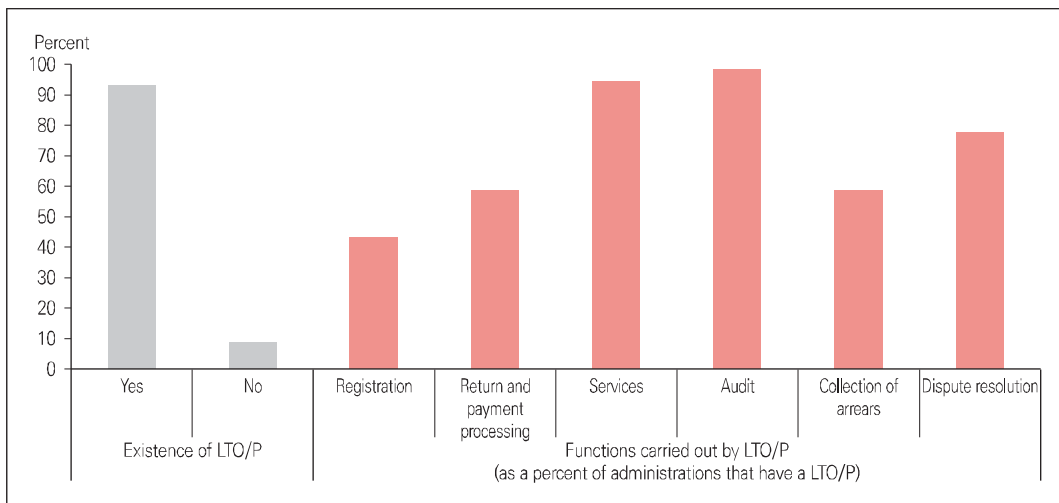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425명을 탐지하기도 함

- ▶ 스웨덴 국세청은 검색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여, 자동 정보 교환 플랜을 통해 수신된 불완전한 데이터를 매칭시키는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킴
 - 이에 따라 식별 비율이 75%에서 90%로, 식별 정확도는 95.2%에서 99.9%로 증가함

2) 특정 납세자 전담 부서 및 프로그램 운영

- ▣ 위험 분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업이나 고액 개인 납세자와 같은 특정 납세자 그룹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프로그램(Large Taxpayer Office/Program, 이하 LTO/P)을 마련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고액 납세자는 인원 대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평균적으로 해당 부서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고액 납세자 2.4%가 징수된 총세수의 4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담 부서들은 해당 납세자에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세무 조사(audit) 목적으로 해당 부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VI-2] 고액 납세자 사무소/프로그램(LTO/P) 존재 여부 및 제공 기능(2021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 90 Figure 6.3. 재인용

-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합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지아는 고액 납세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중국은 국세청의 지역 사무소만이 관할권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 대상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사용한 세무조사 대상 그룹 식별이 가능해짐
 - 통합 시스템은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여부, 사업 활동, 규정 준수 내역,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는 11개 범주의 정보를 간단한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조지아의 고액 납세자 사무국은 다양한 정보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표준 보고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을 장려하고 조세 포탈 위험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음

다. 위험 요소 예측 및 대비 사례

- ▣ 현재 다양한 모델링 기술들이 납세 규정 준수와 관련한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세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 아일랜드 국세청은 납세자가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 없이 문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문의를 분류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함
 - ▶ 이스라엘 국세청은 2022년부터 부동산세 평가에 세무조사관의 작업을 시뮬레이션하는 AI 기능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된 30,500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활용함
 - 이를 통해 2022년 세무조사관의 평가에 소요되는 30,500시간⁶⁾이 절약되었으며, 근무 시간당 평균 세금 신고액은 2021년 대비 48%가 증가함
 - ▶ 싱가포르 국세청은 지급 위험 평가를 간단하게 수행하고 다양한 지급 제도의 잠재적 납용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 분석 솔루션인 One Payout Platform을 개발함
 - ▶ 스웨덴 국세청은 AI 모델을 활용해 공제 청구가 실제 요건과 상충되는 건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식별된 청구 건에 대해 자동화된 입증 요청을 발송한 후 미응답 시 공제를 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6) AI 기능을 활용한 신고서의 작업 시간은 기존 방식보다 한 건당 1시간이 단축됨

- ▣ 각국의 국세청은 현재 발생하는 규정 준수 관련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함
- ▶ 브라질 국세청은 납세 준수와 관련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 각 부서의 자체적인 기준 및 이해도에 따라 세분화된 방식으로 처리해 왔으나, 2021년 이후 통합 위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직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고급 분석 도구를 활용한 통합 위험 평가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대용량 데이터를 명확한 형태의 위기관리 정보로 수집 및 변환하여, 사전 예방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 ▶ 뉴질랜드 국세청은 중앙집중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고 있음
 - 위험 요소들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와 접근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책임과 조치를 명확하게 보다 정의할 수 있게 됨

2 납세 순응을 위한 조치

가. 신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의 전자적 검토

- ▣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 의무를 제대로 보고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국의 국세청이 취하는 준수 검토 조치가 자동화된 전자 검토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와 정교한 분석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조세 포탈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신고서 및 청구서 또는 거래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데이터 양의 증가와 보다 발전된 기술로, 프로세스 초기에 실시간으로 오류를 포착하는 전자적 규정 준수 검사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 ▶ 전자적 검토는 주로 세무 조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청구 자동 거부나 메일 발송, 데이터 매칭과 같이 사전에 정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자동화된 전자적 검토를 수행하거나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함

- ▣ 이러한 자동 전자 검토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로는 인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등이 존재함
 - ▶ 인도 소득세청은 전자 인증제도(eVerification Scheme)를 통해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모든 전자 금융 정보를 세금 신고 시 납세자에게 자동 제공하며, 정보 불일치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함
 - ▶ 아일랜드 국세청은 기존의 사후 일괄 검토 시스템이 아닌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신고 정보를 내보내기 하는 대시보드를 도입함
 - 이를 통해 사전에 설정한 규정 준수 규칙에서 벗어난 신고는 차단하는 등 신고 내용에 즉시 대응함
 - ▶ 리투아니아 국세청 역시 2020년부터 실시간으로 불일치 사항을 식별하는 스마트 세무행정 서브시스템인 i.Kon을 도입하여 2021년 2,100만유로, 2022년 5,900만유로의 추가 신고를 달성함

나. 세무 조사

- ▣ 201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한 수정률은 50% 후반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수액은 총 세수액의 4%가량에 달함
 - ▶ 2021년의 높아진 비율의 경우 고위험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에 집중했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부 국가의 고도로 표적화된 감사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됨
 - ▶ 세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추가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3.6%의 2배 이상, 개인소득세 2.4%의 3배 이상 수준임
 - ▶ 또한 고액납세자 전담 부서의 세무 조사를 통해 추가된 세액은 총 추가 징수액의 약 30%를 차지함

〈표 1-VI-3〉 세무조사 수정률 및 추가 징수세액(2018~2021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세무조사 수정률(39개국 평균)	57.4	58.3	58.6	61.7
추가 징수세액(48개국 평균)	4.1	4.1	4.5	3.9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 101 Table 6.3. 재인용

- ▣ 세무조사 역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방문 조사에서 가상 및 디지털 조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

 - ▶ 세무조사 관련 문서의 전자 제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서 폐쇄 및 원격근무로 인해 이러한 양상이 가속화됨
 - 32개 국가가 현장 세무조사의 90%에 가까운 부분이 이미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76%는 이후에도 전환을 이어갈 예정임
 - ▶ 호주 국세청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 프로세스에서 식별한 고위험 신고서에 대해 28일 이내에 관련 비용 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게 발행한 바 있음
 - 이때 응답이 없으면 청구 내용이 자동으로 수정되며, 그 결과 세무조사 수정률이 2배로 증가함
 - ▶ 중국 국세청은 자동 스캐닝 및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조세 포탈 위험이 식별되면, 처리할 하나의 업무가 생성되어 담당자에게 배정되는 스마트 세무조사 플랫폼을 운영함
 - 규정 준수 위험이 3개월 연속 자주 발생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세무조사 담당기관의 장에게 알람을 보내며, 이에 대한 처리 기한이 초과될 경우 본청 조사국에까지 알람을 보내 프로세스를 가속화함
 - ▶ 멕시코 국세청은 조사인과 피조사인과의 전자 통신을 허용하는 원격감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체 인증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설문지, 증거 검토를 위한 인터뷰 등을 문서 작성, 녹음, 녹화 등으로 진행함
 - ▶ 슬로바키아는 세무조사 중앙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 활동 계획부터 피드백까지 전체 주기를 관리함
 - 시스템은 조사관에게는 대상 업체의 세부 정보와 관련 법률 및 판례, 권장 조치 과정 등을 제공하며, 이후 조사 활동에 대한 시스템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사관은 활동 내용과 결과를 보고함

3 조세범칙조사

-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58개 국 중 32개국에서 조세범칙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세무당국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지휘하거나,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타 기관의 지시 및 권한 하에 조사 수행만을 담당하기도 함
 - ▶ 조사에 관여하는 32개국의 조사 담당 기관에 기소된 총 사건 수는 2020년 이후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재분배의 일환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기소 능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표 1-VI-4〉 조세범칙조사 기소건수 및 전년 대비 변화율(2018~2021년)

(단위: 건, %)

	2018	2019	2020	2021
총 사건 수(32개국)	41,631	40,426	33,874	30,490
전년 대비 변화율	-	-2.9	-16.2	-10.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p. 106 Table 6.4. 재인용

- ▣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OECD와 UN개발계획의 공동 계획인 ‘조세범 조사를 위한 국경 없는 세무 조사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for Criminal Investigation, TIWB-CI)’이 8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 ▶ ‘OECD 조세범칙조사 성숙도 모델(OECD Tax Crime Investigation Maturity Model)’을 통해 국가 자체 평가 수행 후, 이를 기반으로 파트너 행정부나 UN개발계획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8~24일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함
 - 시행 절차는 성공 지표가 포함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 조세범칙행위와 기타 금융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모든 집행 기관을 통합하여 ‘정부 전체 접근 방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VII 징수(collection)

1 서문

- ▶ 징수 기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함
 - ▶ 지난 몇 년 동안 “미리 채움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은 여전히 납세자의 책임 영역으로 남아 있음
 - 2021년 기한 내 신고 비율은 평균 76%에서 88% 사이였지만 최소 1억 6천만건의 신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음
 - 행정당국은 신고의 지연 및 미제출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 체납세액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 세무당국을 제외한 조사에 참여한 모든 행정당국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인력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함
 - ▶ 세무행정 국제조사(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ISORA) 2022에서 행정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전체 직원 수의 평균 11%가 징수 기능에 투입되고 있음
 - ▶ 입법 체계는 세무 공무원에게 채권 관리, 체납세액의 징수 및 체납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채권 징수 기능의 특징

- ▶ 조세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발적 준수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은 채권 징수 접근방식이 목적에 적합하고, 시스템이 관리되는 방식이 납세자의 권리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 이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나 단기 현금흐름 문제와 같은 납득 가능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서비스 접근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함을 의미함
- ▶ 조세행정당국이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적(end-to-end) 또는 시스템 관점에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패턴 및 이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이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음
- ▶ 2014년 보고서 ‘조세채권관리에서의 업무 증진(Working Smarter in Tax Debt Management)’에서는 현대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관하여 <표 1-VII-1>과 같이 개요를 제시함

<표 1-VII-1> 조세채권 징수에 필요한 기능

기능	내용
고급분석	·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적시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적합한 체납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음
처리전략 (Treatment strategies)	· 징수 기능에는 납세자의 채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및 적절한 강제집행 조치와 같은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
아웃바운드 콜센터	· 많은 수의 조세 채권을 효율적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조직	· 채권 추심은 전문적인 기능이므로 올바른 성과 측정과 지속적인 개선 접근 방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함
국경을 넘어서는 조세채권	· 국제적 공조, 특히 조세행정당국 간 협정을 통해 조력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111~112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 ▶ 2019년 보고서 ‘성공적인 조세채권관리’에서는 성공적인 조세채권관리를 위한 4가지 전략과 조세채권관리 성숙도 모델 및 성공적인 조세채권관리 계획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표 1-VII-2>을 통해 살펴봄
 - 전략의 기본 전제는 채권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부채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미납 세금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임

〈표 1-Ⅶ-2〉 조세행정당국별 부채관리 개선 계획

국가	계획	내용
호주	비즈니스세 (business tax) 조세채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세 조세채무 공개 법안은 체납된 조세채무를 공개하여 체납자의 조세채무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사업 활동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부채를 신용보고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90일 이상 미납된 10만호주달러 이상의 '관리되지 않은' 채무를 보유한 상태로 계속 사업 중이라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국세청은 공개 의향 통지서(Intent to Disclosure Notice, ITDN) 발행을 통해 체납자 선정 및 최초 연락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말까지 연락을 받은 납세자 3명 중 1명이 조세채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20억호주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협의가 진행 중임
조지아	조세채권 관리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납세자의 규정 준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세채권관리 체계를 도입함 · 납세자에게 채무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납부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달성됨 ·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채무가 있는 납세자를 감지하고 채무가 증가하는 납세자를 식별하여 개입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향상시킴 · 납세자의 사업 연속성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채무 상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오래된 조세채무를 줄임 · 조세채권관리 체계를 통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채무관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및 예상 징수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
슬로바키아	체납자의 운전면허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부터 택시기사 등 소득이 운전면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세금 고지서 발행을 통해 시작되며,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운전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회생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회수 절차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회수할 수 없었던 체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됨
스페인	경매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국세청은 경매 절차에 포함된 부동산과 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함 · 이 기능은 경매 접근 가능성을 높여 경매에서 달성되는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세청과 체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잠재적 입찰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낙찰자를 지원하는 전용 전화 서비스로 보완됨 · 시스템은 모든 자산을 쉽게 찾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매가 시작되면 관심있는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알림 구독 시스템이 포함됨 ·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다양한 정부 디지털 신원 플랫폼을 통해 부여되며, 경매와 관련된 공지는 국세청 웹 포털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짐

〈표 1-Ⅶ-2〉 의 계속

국가	계획	내용
영국	셀프 서비스 납부기한 (Self-Serve Time to Pay, SST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의 미래 조세행정 비전은 탄력성, 효율성 및 납세자 지원을 개선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전액 또는 납부 계획의 일부로 체납세액을 최대한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됨 · 2022년에 국세청은 셀프 서비스 납부기한 제도를 고용주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까지 확대함 ·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의 납세자 서비스 부서는 보다 복잡한 문의와 조세채무를 해결할 때 일대일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집중할 수 있음 · 이 디지털 서비스는 비즈니스 세금 계정 및 영국 정부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적격 납세자에게 선불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적격 자체 평가 및 고용주 PAYE 부채에 대한 납부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함 · 첫 두 달 동안 약 600명의 납세자가 250만파운드가 넘는 부채 금액으로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112~114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3 미납채권 징수 실적

- ▾ 미결제 연체 총액은 2조 5천억유로에 달하고 있음
 - ▶ “연말 미납 채무 총액”은 조세채무 및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기타 수입에 대한 채무 총액으로 이자와 과태료가 포함됨
- ▾ 회계연도 말 현재 징수 가능한 체납금은 7,100억유로에 달하고 있음
 - ▶ “징수 가능한 체납금”은 총 체납액에서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타 이유로 징수할 수 없지만 상각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액인 분쟁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데이터를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 제도 및 행정 관행이 관할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요소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함
 -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많은 정부가 팬데믹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미납 채무 징수를 중단하는 등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임
- 이는 2019년 이후 징수 가능 체납금 증가의 주요 요인일 수 있음

▣ 2021년 순 세수 대비 체납률은 평균 32%였음

- ▶ 지난 몇 년간과 마찬가지로 순 세수 대비 체납금 비율이 50% 이상인 소수의 관할국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브라질, 케냐, 인도, 불가리아, 페루, 칠레)으로 인해 평균 값이 올라간 것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은 2021년 순 세수의 약 14%로 감소함

〈표 1-Ⅶ-3〉 2018년과 2021년 사이의 평균 체납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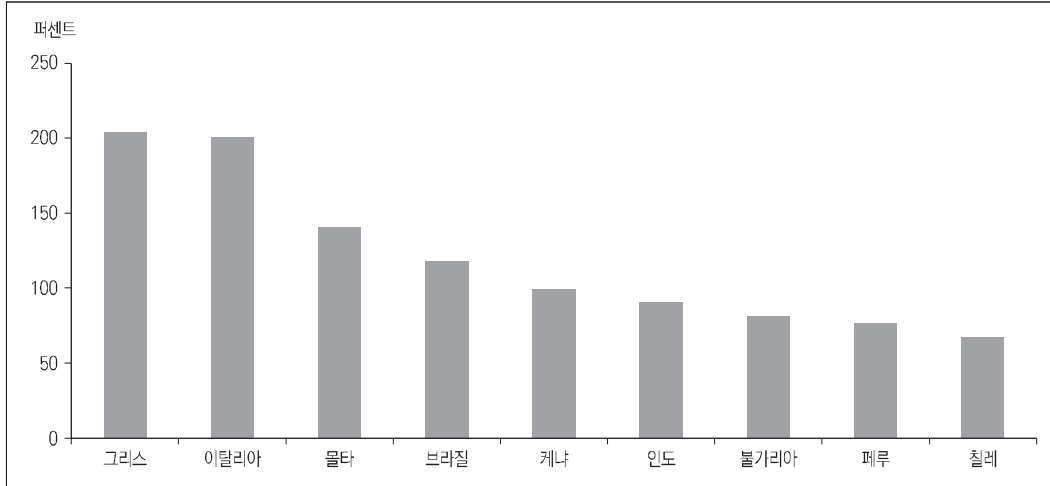
체납률	2018	2019	2020	2021	백분율 변화 (2018~2021년)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총 연말 체납금 (50개 관할국)	28.2	27.9	34.7	30.2	+7.0
총 연말 체납금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금 (40개 관할국)	50.7	51.5	54.3	54.4	+7.2

주: 이 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평균 체납률을 보여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국의 수는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불가리아의 데이터는 4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총 연말 체납금' 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Table D.33,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4 Figure 7.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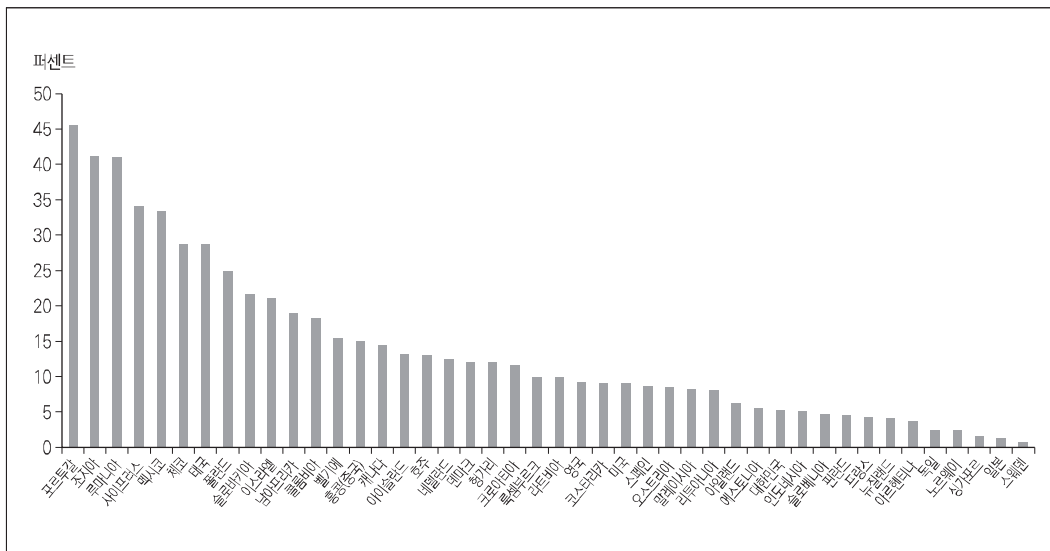
- ▣ 2021년과 2020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총 연말 체납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이는 팬데믹의 첫 해인 2020년에 해당 비율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 그러나 2021년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총 연말 체납금의 비율은 2018년보다 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이러한 감소는 일반적으로 관할국 수준 데이터에도 반영됨
 - 2020년에는 약 85%의 관할국에서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총 체납금' 비율이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68%의 관할국에서 해당 비율이 감소함

[그림 1-Ⅶ-1] 2021년 총 순 세수 대비 총 체납금 비율: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정부



자료: Table D.33,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5 Figure 7.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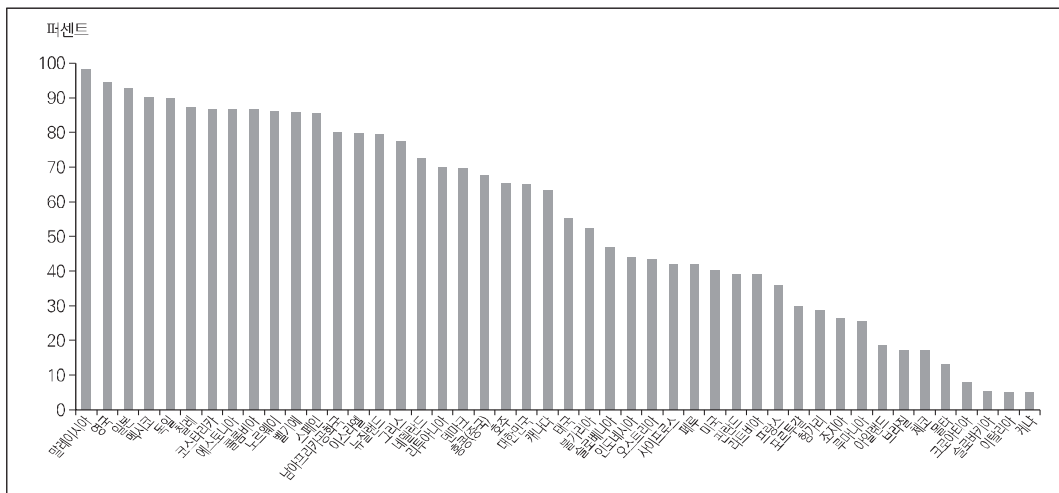
[그림 1-Ⅶ-2] 2021년 총 순수익 대비 총 연체금 비율: 비율이 50% 미만인 정부



자료: Table D.33,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5 Figure 7.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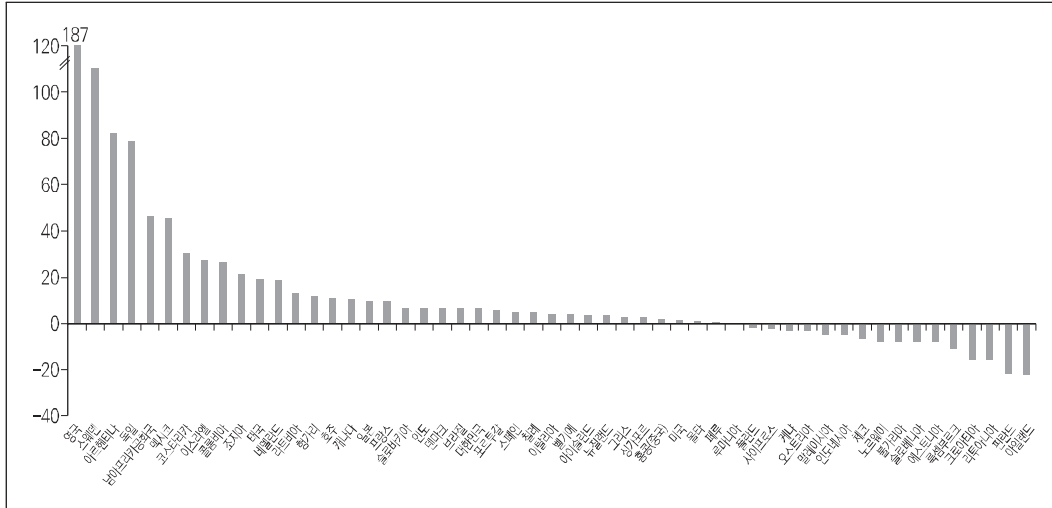
- ▣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총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징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 ▶ 이는 2018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임
 - ▶ 그러나 조세행정당국 간의 격차가 관찰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조세채권이 징수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거의 모든 조세채권이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그림 1-Ⅶ-3] 2021년 총 연말 체납금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금



자료: Table D.33,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6 Figure 7.3. 재인용

[그림 1-VII-4]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총 체납금 추이



자료: Table D.34,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6 Figure 7.4. 재인용

▾ [그림 1-VII-4]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의 총 연말 체납금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절대 수치로 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53개 관할국 중 36개 관할국에서 연말 총 체납금이 증가함

- ▶ 유형별 조세 체납의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기업보다 적시에 납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2021년 징수된 법인세 순수입에 대한 법인세 체납 평균 비율 및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은 약 25%임
 - 개인소득세 체납비율은 약 15%로 법인의 체납비율에 비해 훨씬 낮음
 - 이 데이터는 또한 팬데믹 초기에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시켜 주는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평균 비율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
 - 고용주의 원천징수세 체납비율은 약 7%로 가장 낮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해당 세금을 조세행정당국에 전달하는 책임을 가질 뿐 그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표 1-VII-4〉 2018~2021년 세금 유형별 징수된 순 세수 대비 연말 체납 평균 비율 변화

(단위: %)

세금 유형	2018	2019	2020	2021
법인세 체납비율(39개 관할국)	24.0	26.8	30.5	24.3
개인소득세 체납비율(42개 관할국)	16.2	14.2	15.5	15.0
고용주의 원천징수세 체납비율(34개 관할국)	7.2	6.5	7.2	6.9
부가가치세 체납비율(39개 관할국)	23.8	23.5	30.2	25.1

주: 이 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평균 비율을 보여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국의 수는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불가리아의 데이터는 3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연말 체납금 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또한 평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그리스의 데이터는 법인세 평균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몰타의 데이터는 부가가치세 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Table D.36, D.37,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7 Figure 7.2. 재인용

4 예방적(preventive) 접근

- ▣ 체납을 방지하고 미납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이 취하는 조치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음
 - ▶ OECD 보고서에 보고된 예측 모델링 및 실험 기법을 통해 더 나은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고급 분석을 하고 있음
 -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행동 통찰 방법론 또는 기술과 같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바, <표 1-VII-5>에서 살펴봄

〈표 1-Ⅶ-5〉 조세행정당국별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접근방식

국가	개입 방식	내용
호주	이사에 대한 패널티 고지 서한 (Director penalty awareness let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이사로부터 법인의 미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패널티 통지서(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발급함 · 통지서가 발행될 때까지 개별 이사가 체납액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서 발행 전에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관련 사항을 알리는 고지 전략을 시행함 · 고지 서한에는 법인의 체납세금, 이사에 대한 패널티 제도에 따른 법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 개인의 책임,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 국세청은 법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각 이사에게 직접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현재까지 약 7만건의 서한이 이사들에게 발송되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조세채권의 징수가 가능하게 됨
라트비아	불법 회생 방지 (Combating illegal phoenix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전 법인의 미납세금을 새로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로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함 · 결과에 따라 승계 법인에게 미납세금 납부기한을 명시한 경고장을 보내거나 법인 이전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 제출을 요청함 · 미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무 이행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지 않고 납세자가 국세청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즉시 발효되는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결정을 내림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8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VIII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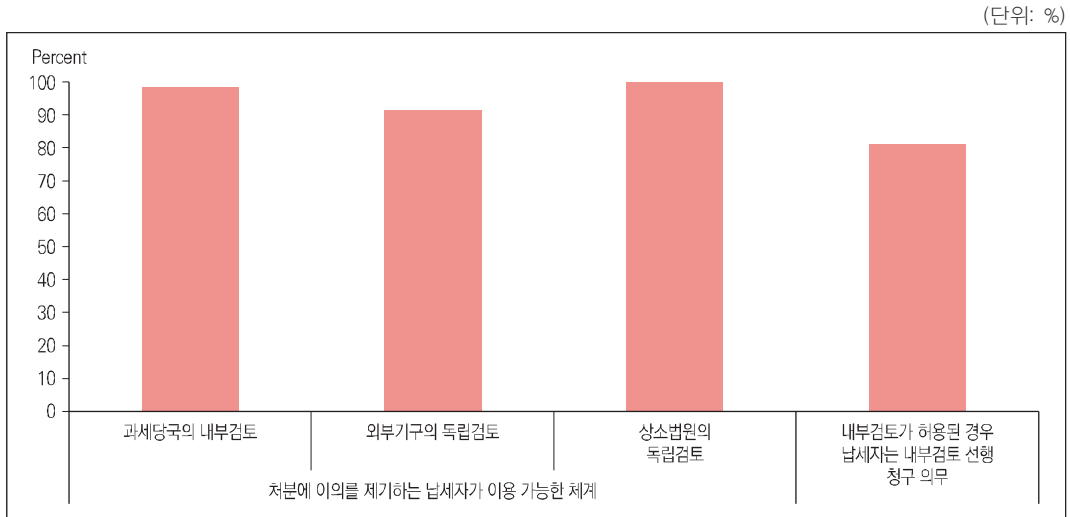
- ▣ 본 장은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관할국의 분쟁 해결 및 검토 전략을 살펴보고, 분쟁 해결의 현황을 다룸
 - ▶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납세자가 처분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임
 -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는 법률이나 납세자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⁷⁾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의 강화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보장함
 - ▶ 동시에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양 당사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1 분쟁 해결 검토 체계

- ▣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58개 관할국 모두 납세자에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함
 - ▶ 거의 모든 행정당국은 내부검토 체계를 보유함
 - ▶ 다수의 행정당국은 납세자에게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를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
 - 이러한 선택권은 잠재적으로 비용과 기간이 소모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를 위한 법적 확실성 향상에 도움을 줌
 - 내부 및 외부검토 체계를 모두 제공하는 행정당국의 약 80%는 납세자에게 외부기구에 사건 검토를 구하기 전에 내부검토를 구하도록 요구함

7) 관할국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납세자의 권리에는 알 권리·지원을 받을 권리·의견을 표명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정확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권리, 명확성 보장,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이 있음. 납세자의 의무에는 진실의무, 협력의무, 적시에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 기록 보관 의무, 기한 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1)

[그림 1-Ⅷ-1] 분쟁 해결 시 사용 가능한 검토 체계(2021년)



주: 행정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2 Figure 8.1. 재인용

- ▣ 국제적인 조세분쟁 해결 체계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가 있음
 - ▶ 동일한 거래 또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조약, 즉 조세조약은 보통 당사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과세권 배분에 대해 상호 합의된 규칙을 설정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하고자 함
 - ▶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그 규칙의 적용 또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상당수의 조세조약은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 절차가 있음
 - 공식절차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의 프레임워크로서 대부분의 관할국이 활용함
 -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며, 이중과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줌
- ▣ 분쟁 해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당국이 사법 절차의 시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분쟁해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향상되도록 작업 중임
 - ▶ 이러한 작업에는 중재 또는 기타 비사법적 절차도 포함됨

- ▶ 아래 <표 1-VIII-1>은 기술 발전이 조세행정당국에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

<표 1-VIII-1> 분쟁해결의 효율성 향상 사례(2023)

국가	내용	
프랑스	법적 기능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국세청(DGFIP)의 법적 기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점은 인력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활동 대응, 정보 검색 개선,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납세자와 국세청의 입장의 공유, 로펌 및 다른 관련자와의 기술 경쟁에서의 경쟁력 유지 등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국세청은 장기(2023~2030)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디지털화로 인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모듈식' 접근 방식을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청에 대한 단일 창구를 구축하고, 통합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세청의 의견을 수집한 후, 전문가 시스템을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통합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함
조지아	통합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조지아 국세청 직원 및 납세자 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검색 플랫폼으로, 국제협약·명령·정부안, 내부규정·지침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세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식별하여 취하는 추가 조치, 실무 관행의 명확성 및 일관성으로 인한 분쟁 감소, 분쟁 검토 기구의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 등의 중요한 목표의 상당수를 달성할 수 있음
이탈리아	기업 지식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식 포털은 이탈리아 국세청의 다양한 활동, 즉 조세 소송, 결정, 세무 조사 및 납세자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감독함 · 조세 분쟁과 관련하여 기업 지식 포털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보고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소송 관련 영역에는 재정법원의 사건 수에 대한 분석, 예산 목표와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 선별된 조세 분쟁 사건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분쟁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p. 123~124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 ▣ 분쟁해결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감독 체계가 필요하며, 많은 행정당국은 이용 가능한 관리 정보 수준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임
 - ▶ 그 결과 본 보고서에는 약 90%의 행정당국의 현황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 <표 1-VIII-2>와 <표 1-VIII-3>은 내부검토와 외부검토 모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개시된 사건 수와 회계연도 말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을 비교함
 -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부분의 행정당국은 개시된 사건 수와 회계연도 말에 계류 중인 사건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함

- 위와 같은 결과는 외부검토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 그러나 내부검토 중인 사건 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행정당국은 2021년에 사건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함

〈표 1-VIII-2〉 분쟁해결: 연중 개시된 사건 수 변동

(단위: %)

변동	내부검토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외부기구의 독립검토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연도 간 변동			연도 간 변동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증가	50	38	58	44	27	44
감소	50	62	42	56	73	56

주: 개시된 사건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한 행정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4 재인용

〈표 1-VIII-3〉 분쟁해결: 회계연도 말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

(단위: %)

변동	내부검토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외부기구의 독립검토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연도 간 변동			연도 간 변동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증가	63	46	55	50	33	38
감소	37	54	45	50	67	62

주: 계류 중인 사건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한 행정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4 재인용

▣ [그림 1-VIII-2]와 [그림 1-VIII-3]은 관할국 수준에서 데이터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회계연도 말 내부검토 및 외부검토 중인 사건 수 변동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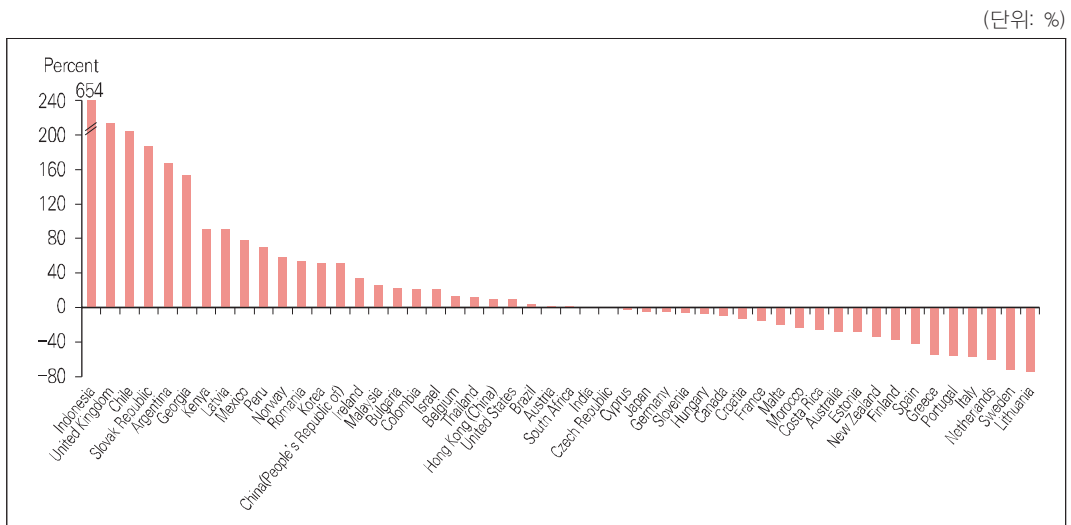
▶ 일부 관할국에서 보고된 내부검토 사건 수는 크게 증가함

- 동시에 관할국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매우 다르며, 사건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이는 내부검토절차의 사용에서 관할국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1-VIII-4]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 수의 평균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1-VIII-4>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 수가 평균 8~9건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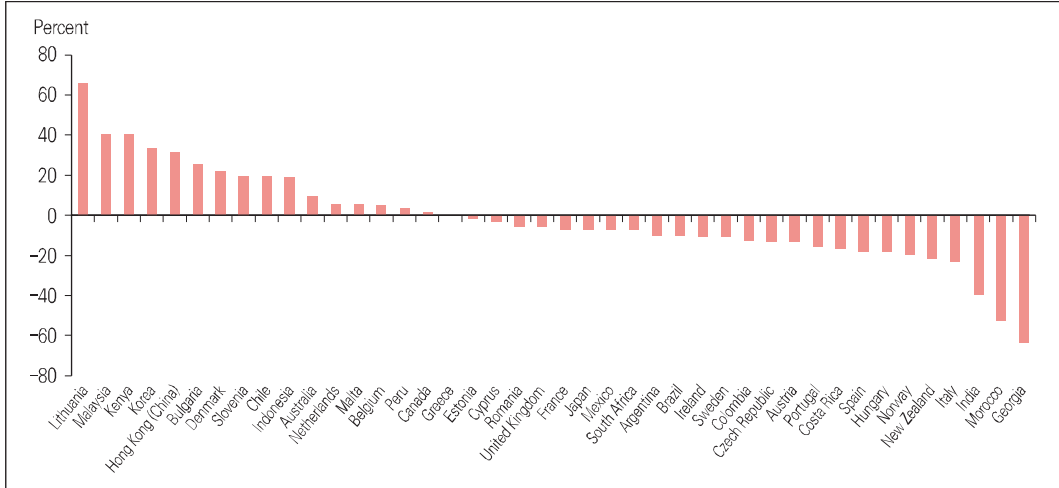
[그림 1-VIII-2] 내부검토절차: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0~2021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5 Figure 8.2. 재인용

[그림 1-VIII-3] 외부기구의 독립검토: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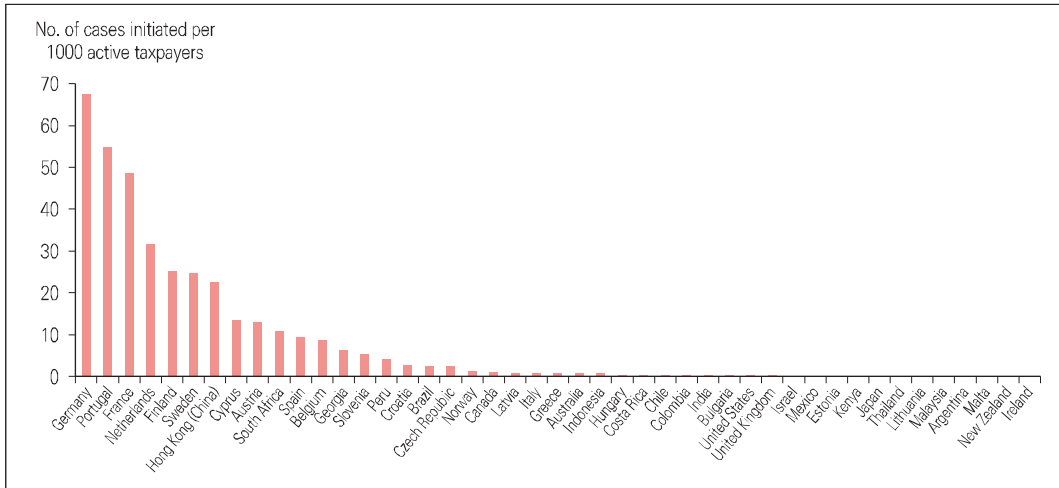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5 Figure 8.3. 재인용

[그림 1-VIII-4]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의 수

(단위: 건)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6 Figure 8.4. 재인용

〈표 1-VIII-4〉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 수의 평균 변화(2018-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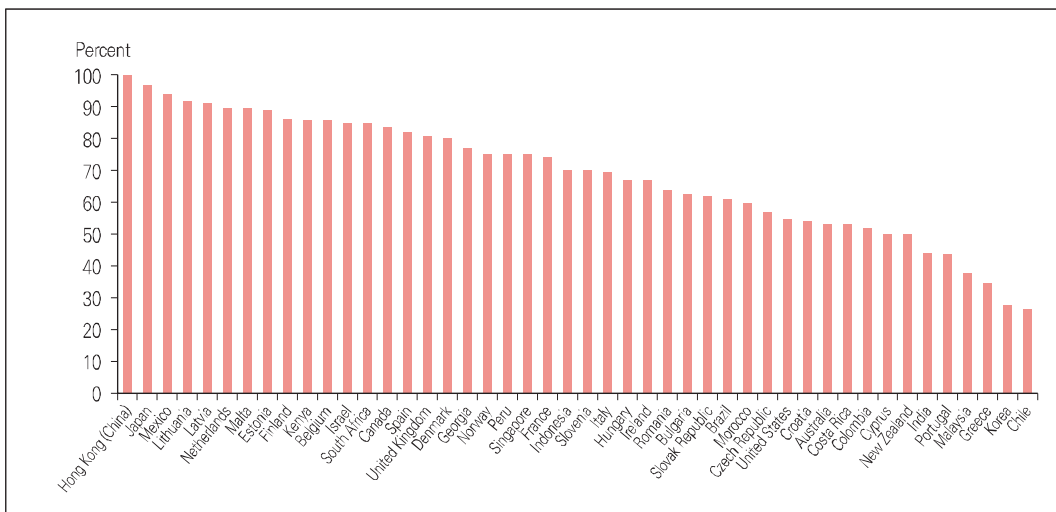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천 명당 개시된 내부검토 사건의 평균 개수(40개 관할국)	8.1	8.5	8.0	9.0

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평균임. 괄호 안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수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126 재인용

- ▣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의 세법 해석이 다른 것은 조세행정상 정상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내부검토 및 외부검토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 ▶ 조세행정당국은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 단계로 넘어갈 필요없이 해결된다고 보고하지만, [그림 1-VIII-5]는 법원이 결정한 사건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현황을 보여줌
 - ▶ 일부 관할국의 경우 결정된 사건 수가 매우 적어 연도별로 결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지만, 행정당국의 승소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림 1-VIII-5]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 비율(2020~2021년)



- 주: 1.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은 각 사건에서 다투진 쟁점의 50% 이상에서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을 의미함. 콜롬비아, 프랑스,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예외임
 2. 콜롬비아: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의 수에는 행정당국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 포함됨
 3. 프랑스: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의 수에는 행정당국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 포함됨. 행정당국이 일부 승소한 사건의 수는 31건(2018회계연도), 11건(2019회계연도), 10건(2020회계연도), 16건(2021회계연도)임
 4. 이스라엘: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의 수에는 쟁점 중 하나 이상에서
 5. 과세관청이 승소한 모든 사건이 포함됨
 대한민국: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의 수는 모든 쟁점에서 과세관청이 승소한 사건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7 Figure 8.5. 및 Annex A. Data tables, Table A.73 재인용

2 분쟁 예방

- ▣ 분쟁은 자원 집약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며, 분쟁 예방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는 납세자에게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임
 - ▶ 조세행정당국은 광범위한 서비스 전략의 일환으로 분쟁을 예방함
 - 조세행정당국의 웹사이트에 정보 및 소통 도구 제공, 지침 및 납세자 정보 안내서 발간, 교육 및 사업 지원이 포함됨
 - ▶ 많은 행정당국은 구체적인 분쟁 예방 체계를 제공하고 이러한 접근법 중 일부를 본장에서 설명함
- ▣ 결정(ruling)을 통해 행정당국이 집행하는 법률의 해석 및 특정 상황에서 세법의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행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처분의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조세행정당국의 노력의 일환임
 - ▶ 공개결정은 특정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임
 - 공개결정은 특정 규정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규정이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공개결정이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경우 공개결정은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당국에 구속력이 있음
 - ▶ 비공개결정은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가 제안되거나 완료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행정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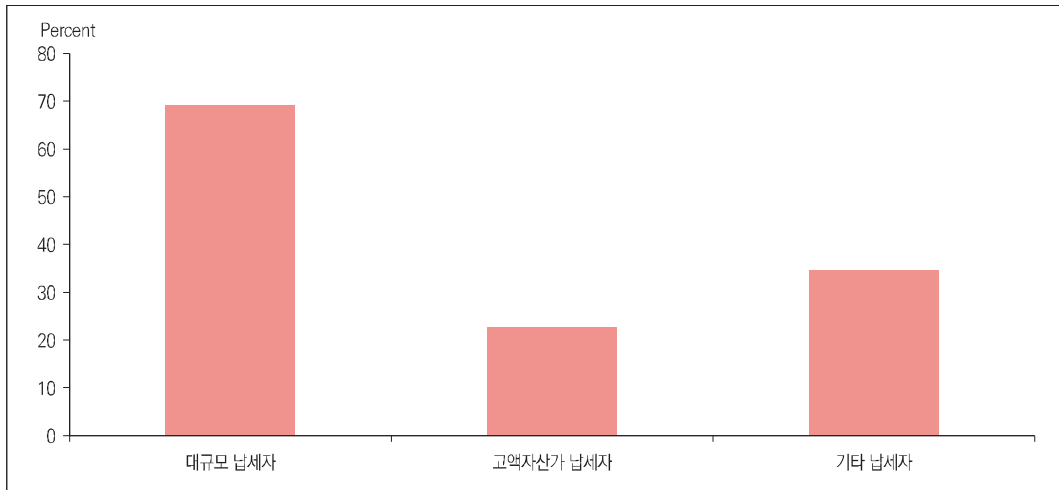
- 비공개결정의 목적은 보다 복잡한 거래의 조세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임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s)과 관련하여,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납세순응을 관리하고 조세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합의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 이 프로그램은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의 투명한 관계에 관련되고, 중대한 조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포함할 수 있음⁸⁾
-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조세행정당국 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의 높은 수준의 관여로 인해 자원 집약적이므로, 전통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규모 기업을 위한 것이었음
- ▶ 그러나 위험 평가 절차의 기술적 발전으로 많은 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이 개념을 다른 납세자 그룹에 적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함([그림 1-VIII-6] 참조)

[그림 1-VIII-6] 납세자 분류별 협력적 납세순응 접근방식(2021년)

(단위: %)



주: 협력적 납세순응 접근방식을 취하는 행정당국의 비율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8 Figure 8.6. 재인용

8) 협력적 납세순응의 개념은 여러 OECD 보고서의 주제였으며, 가장 최근 보고서로는 “협력적 납세순응: 개선된 조세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OECD, 2016)”이 있음

- ▣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ICAP)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위험 평가 및 확약 절차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임
 - ▶ ICAP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적극적·공개적이며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특정 활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확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 ▶ ICAP은 상호합의절차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 그룹의 위험 평가에 참여하는 조세행정당국이 대상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약을 제공함

- ▣ 공동 세무조사(joint audits)는 두 개 이상의 행정당국의 공무원이 단일의 세무조사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또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관할국에서 납세자의 역외 사업 활동에 관한 쟁점 또는 거래를 조사하는 것임
 - ▶ 공동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조세행정당국은 협력을 통해 이견 또는 잠재적 분쟁을 초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IX 예산 및 인력

- ▣ 본 장은 조세행정 에 투입되는 자원과 조세행정 인력에 대해 다루며, 과세당국이 고품질화된 인력관리와 기술이 납세자에게 개선된 해결방안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과세당국의 인력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살펴봄
 - ▶ 세수 확보와 조세행정의 핵심은 충분한 재정 자원과 양질의 결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임
 - ▶ 본 장에서는 조세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의 사용과 조세행정의 인력과 업무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

1 예산 및 정보통신 기술

- ▣ 조세행정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은 과세당국,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 예산정책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 사업계획에 명시된 성과와 연계하여 편성함
 - ▶ <표 1-IX-1>과 같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세무행정기관의 약 80%가 운영관련 지출(Operating expenditures)이 증가하였음

<표 1-IX-1> 2018~2021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단위: %)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증가	75.5	71.7	77.4
감소	24.5	28.3	22.6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31 표 9.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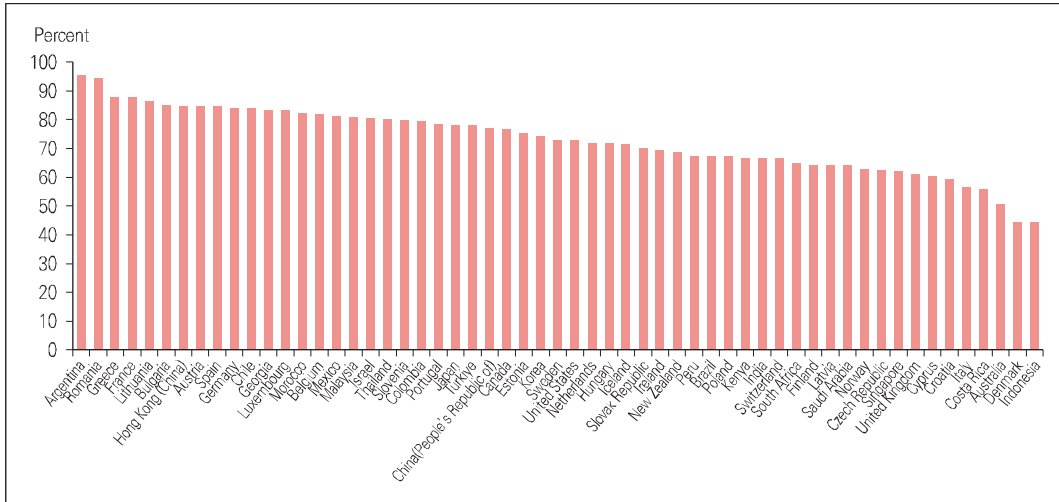
- ▼ 인건비 및 정보통신기술(ICT) 운영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 운영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운영 예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으로는 정보통신 기술 운영비로, 평균적으로 운영비의 11%를 차지함
 - 일부 조세행정당국은 정보통신 기술 운영비가 20% 이상 차지하기도 함

- ▼ 조세행정당국은 예산 제약을 충족하고 납세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관련 규정 준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함

-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확립한 새로운 업무방식과 장기적인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원격 근무 등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칠레 국세청은 팬데믹으로 인한 현장 세무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자 영수증 발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도록 전자 영수증 처리에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음
 - 전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납세자를 식별하여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고, 현재 주류 판매점, 제과점, 레스토랑, 청과점, 정육점, 약국, 꽃집, 보석상, 미니마켓, 철물점 등 10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경보 프로그램을 구축함
 - ▶ 멕시코 국세청은 근로자의 원격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관의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음
 - ▶ 루마니아 국세청은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세무서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시작된 웨비나(Webinar) 서비스를 시행하였음
 - 웨비나는 납세자에게 재정적 의무를 알리고, 납세자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림 1-IX-1]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1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33 Figure 9.1. 재인용

- ▾ 조세징수비용(Cost of collection) 비율은 각국 조세행정당국 예산 편성의 효율과 효과성 등을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당국은 징수비용 비율을 연간 보고서 등에 공개하고 있음
 - ▶ 조세징수비용 비율은 조세행정 분야의 연간 지출과 회계연도 동안 징수한 순수입을 비교하여 계산함
 - ▶ <표 1-IX-2>를 살펴보면, 55개의 조세행정당국의 2018년과 2021년 사이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세행정당국의 약 80%가 조세징수비용 비율이 증가함과 달리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비율이 감소하였음

[표 1-IX-2] 2018~2021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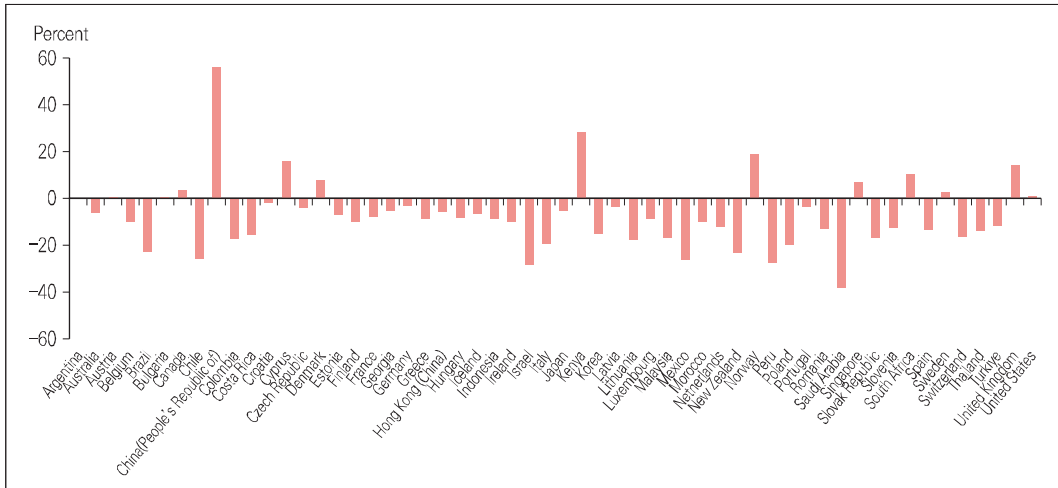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증가	45	82	22
감소	55	18	78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34 표 9.2. 재인용

▶ [그림 1-IX-2]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조세행정당국의 조세징수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세징수비율은 56개국 중 43개국에서 감소하였으며, 13개국만 증가함

[그림 1-IX-2]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1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34 Figure 9.2. 재인용

- ▣ 조세징수비율의 하락추세는 상대적 비용의 감소와 납세준수 개선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조세징수비율에 반영되어 국제적 비교가 어려움
 - ▶ 조세징수비율은 조세 제도의 세수 잠재력, 즉 실제로 징수한 세금과 최대 잠재 세수 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음
 - ▶ 국내적 관점으로는 조세행정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 조세행정에 사용되는 방안으로 등록, 신고, 납부 및 감사 시스템을 포함하는 ICT 운영은 대부분의 조세행정당국이 자체 기술을 사용하며, 상용 기술(commercial-off-the-shelf)을 사용하는 당국은 55%를 차지함
 -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하는 조세행정당국은 45%를 차지하였으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외부 시스템에 조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문제가 됨

-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하여 법적 및 기술적 해결책이 확인됨에 따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인력

- ▣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는 연간 예산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함
 - ▶ 2021년 기준 58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약 17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조세행정 업무를 4가지⁹⁾로 분류함
 - ‘회계감사 및 조사’와 ‘신고 및 납부서비스’ 분야는 평균적으로 각각 30%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두 분야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 [그림 1-IX-3]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¹⁰⁾ 지역과 중동 및 아프리카¹¹⁾의 지역의 조세행정당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직원의 약 30%가 35세 미만임
 - ▶ 반면, 미주¹²⁾와 유럽¹³⁾의 경우 35세 미만 직원은 약 20% 이하로, 54세 이상의 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에 고용된 직원 중 54세 이상의 고령 직원 비율이 약 66% 이상 증가함
 - 이는 고용된 직원의 근속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핵심 지식·경험 등을 보유한 수많은 고령직원이 향후 몇 년 동안 퇴직한다면, 다른 직원의 업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9) ① 신고 및 납부 서비스, ② 회계감사 및 조사, ③ 채권추심 및 강제징수 관련 역할, ④ 기타 등의 4가지로 조세행정 업무를 분류함

10) 호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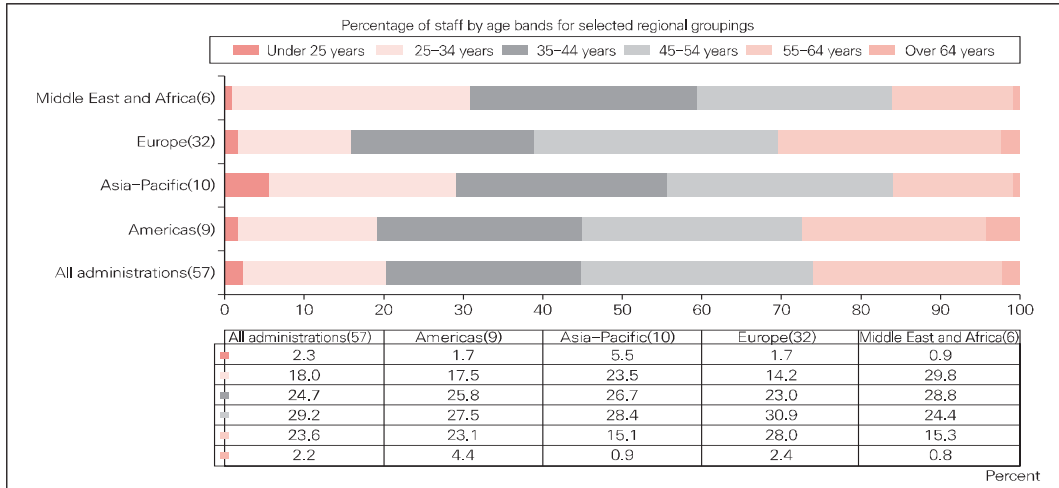
11) 이스라엘, 케냐,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12)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미국

13)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그림 1-IX-3]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연령(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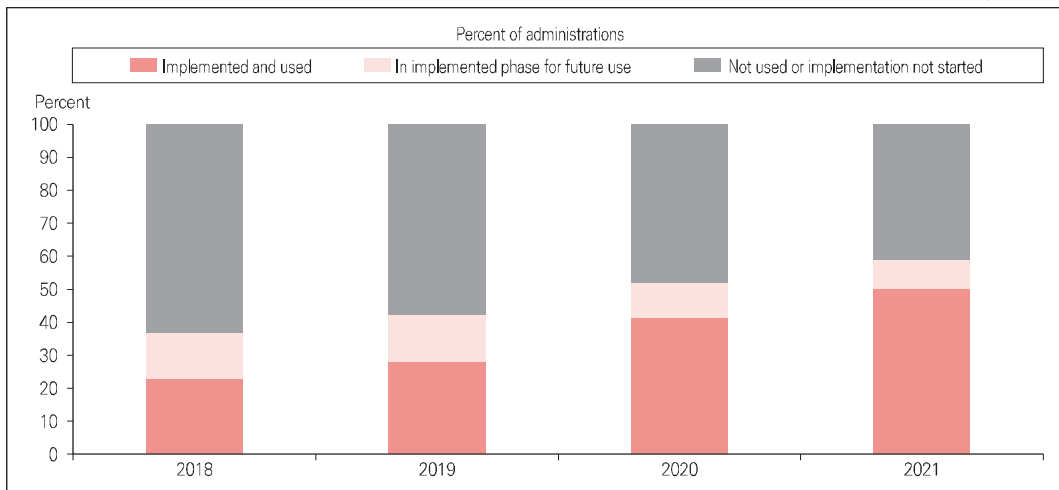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40 Figure 9.6. 재인용

- ▣ 또한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HR Process)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에는 대면 방식에 의존하던 채용과정이 원격으로 진행되며 조세행정당국은 조세행정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 국세청(DGFIP)은 IT 기술을 사용하여 지원자 중심의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다양한 인지 능력을 평가하여 지원자의 적성, 대인관계 기술, 추론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 ▶ 일본 국세청은 디지털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조세행정 미래 비전 2.0’을 발표하였음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공계 전문분야의 인재를 채용하고자 2023년부터 이공계 전공인 수학, 컴퓨터 과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 부문을 신설함
 - 직원들이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개발하도록 통계과학, 머신러닝 등 초급부터 전문가 과정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함
 - ▶ 라트비아는 디지털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지원서류 평가 후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테스트 과제 또는 플랫폼 링크를 전송하여 원격 시험과 화상 통화를 통해 원격 면접을 시행함

- ▣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직원들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당국이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
- ▶ [그림 1-IX-4]를 살펴보면, 조세행정당국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조세행정당국의 50% 이상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할 계획임

[그림 1-IX-4]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및 사용 변화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46 Figure 9.11. 재인용

- ▶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보유하여 세무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납세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함
- ▶ 캐나다 국세청(CRA)은 기존 디지털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문서 관리 프로그램(DDMP)으로 납세자로부터 수신되는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대량의 종이 우편물 수신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임
- ▶ 프랑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식별하고자 발급 예정인 부가가치세 환급액 수혜자 목록과 납부 기한이 지난 징수 명령 목록을 비교하는 등 디지털 어시스턴트(digital assistant)를 개발함

- 해당 디지털 비서는 조세행정당국이 징수할 권한이 있는 다양한 행정당국에서 발행한 과태료 등의 채무(non-fiscal debts)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분야를 확대할 예정임
- ▶ 멕시코 국세청은 키워드에 기반한 자동 분류를 통해 민원과 이메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여 수신 서비스 요청의 처리 및 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조세 행정당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 납세자에게 프로세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확한 모니터링을 보장함
- 신고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잠재적인 부패 행위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함
- ▾ 직원 역량 개발 및 교육 부분은 라이브 온라인 교육, 사전 녹화된 교육 동영상, 웨비나 등 기존의 방식에서 전자 채널 등 가상환경 기반의 교육 환경으로 변환됨
- ▶ 사전 녹화된 교육 자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덜어주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속도와 편의에 맞게 학습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 프랑스 국세청(DGFIP)은 매년 채용되는 신입 직원들에게 DGFIP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고, 해당 앱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여 채용 홍보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음
- 2022년부터 DGFIP 신규 교육생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실 학습과 전용 머신 시스템 학습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 세션을 결합하여 교육생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X 디지털 전환

1 개요

- ▣ 지난 10년간 세무행정은 디지털화에 투자하여 종이 기반 및 방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함
 - ▶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으로 시민과 기업의 거래 방식이 변화하였고, 이는 세무행정 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함

- ▣ 세무행정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으며, OECD가 2020년에 발간한 『Tax Administration 3.0』(OECD, 2020)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6개의 핵심 구성 요소를 규정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 핵심요소 1: 디지털 인증
 - ▶ 핵심요소 2: 납세자 접점
 - ▶ 핵심요소 3: 데이터 관리 및 표준 규정
 - ▶ 핵심요소 4: 세금 규칙 관리 및 적용
 - ▶ 핵심요소 5: 디지털 전환과 인적 자원
 - ▶ 핵심요소 6: 디지털 전환 관리 프레임워크

- ▣ 이 장에서는 6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세무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함

2 디지털 인증

- ▣ 세무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보안, 디지털 확인, 디지털 신원 확인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각 세무당국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다른 부분 또는 제3자의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 각국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에의 보안 접속과 제3자 및 정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지식과 데이터 세트를 활용 중임
 - ▶ 공통의 디지털 신원은 세무행정 업무에 중요하며, 대부분의 정부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표 1-X-1〉 디지털 인증 프로세스가 구축된 기관 비율

(단위: %)

납세자 유형	보안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	디지털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기관			세무당국이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 수단 호환 기관	
		세무당국	타 국가부처	사적 영역	타 국가부처	사적 영역
개인	100	69	63	39	37	14
법인	94	67	50	35	47	9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54 표 10.1, 재인용

-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 더 높은 보안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모든 행정부는 디지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함
 - ▶ 암호 기반 인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다음으로 다중 장치 인증과 모바일 앱이 사용되고, 일부 행정부는 안면 인식이나 지문을 사용함
 - ▶ 특정 유형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표 1-X-2〉 각 프로세스가 구축된 기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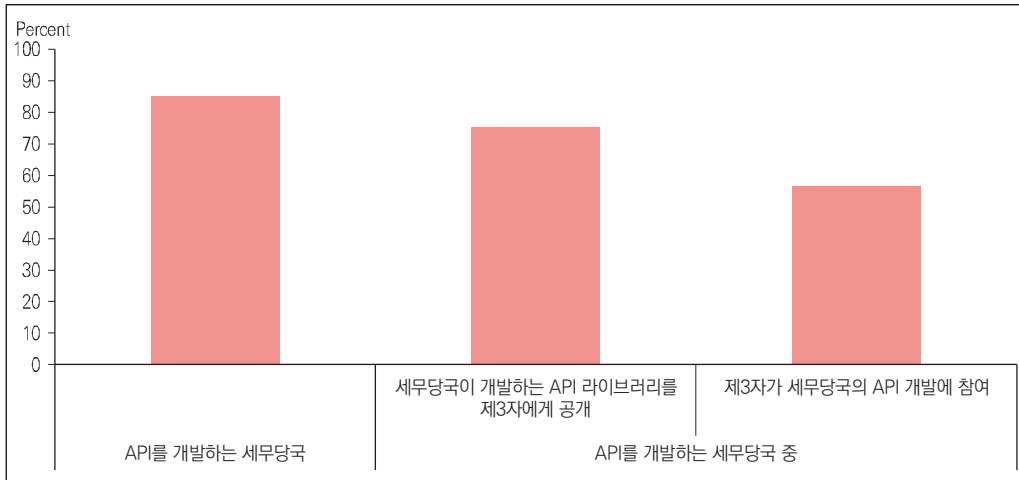
세무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인증수단						특정 유형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3자의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
87	38	42	13	13	62	50	87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54 표 10.2, 재인용

3 납세자 접점

- ▾ 조세행정 3.0 비전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일상생활과 사업에서 사용하는 자연 시스템에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임
 - ▶ 이는 조세 준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 ▾ 80% 이상의 세무당국은 이러한 협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75%가 API를 타사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API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60%의 가까운 세무당국은 제3자와 공동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1-X-1] 세무당국의 API 개발 및 타사 관련 비율(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56 Figure 10.1. 재인용

- ▣ API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교해지면서, 세무행정은 API의 관리 및 감독에 투자해야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의 납세자에의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함

- ▣ API는 대규모의 통합 데이터 세트와 분석 도구를 통한 데이터의 손쉬운 사용을 통해 발전하였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활용은 이러한 세무행정의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열어줌
 -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이러한 API의 일환으로 IRIN(Inland Revenue Interactive Network)를 개발하여 모든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yTaxPortal을 통해 납세자에게 eServices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IRIN은 또한 IRAS 담당자를 위한 핵심 처리, 집행 및 분석 기능을 용이하게 함

4 데이터 관리 및 표준 규정

- ▣ 디지털 인증 및 API 등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정부 간 세무 문제에서 정보 교환을 뒷받침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당사자가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규정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

 - ▶ 이 규정은 규정 준수를 극대화하고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임
- ▣ 세무 정보와 관련된 규정은 세무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 위치, 납세자 시스템 운영에 관한 메타데이터, 세무 관련 데이터의 품질, 가용성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함
- ▣ 이러한 변화는 세무 행정부가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 ▣ 데이터 시스템이 더욱 연결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표 1-X-3>과 같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현은 이제 행정당국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었고 이는 세무행정의 중요한 기능임

 - ▶ 이는 더 넓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다시 납세자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됨

<표 1-X-3> 데이터 보안 관련 프로세스 구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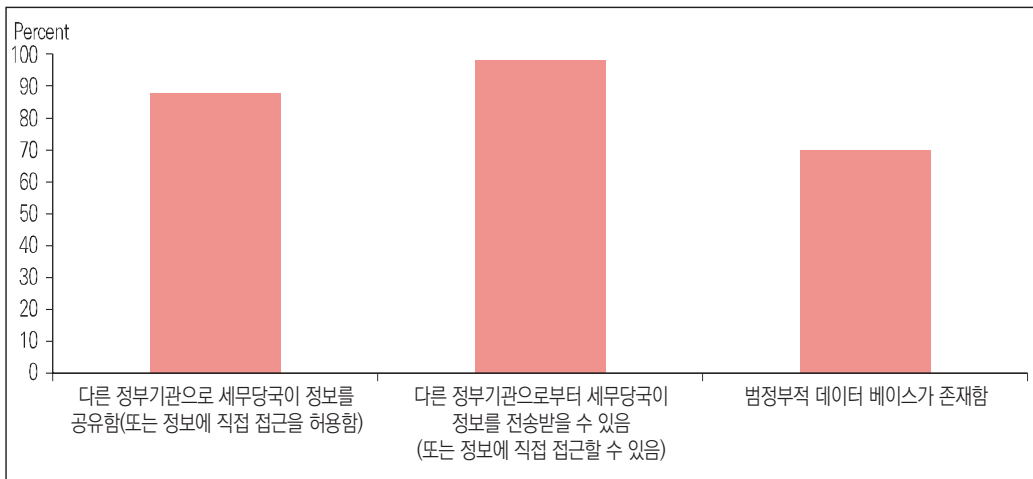
(단위: %)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 규정	보고된 데이터의 데이터 품질평가	데이터 윤리 규정 마련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및 보안 제어	무단 액세스 자동 감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Data Privacy Officer)고용	사이버 보안 장치 존재	시스템보안 테스트 외부 관계자 고용
66	88	74	100	84	90	90	82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59 표 10.5. 재인용

- ▣ 95% 이상의 세무당국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며 90%에 가까운 세무당국이 다른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당국은 정부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
- ▶ 세무당국이 취급하는 정보의 특성상 신원에 대해 확인된 최신 정보를 자주 보유하고 제3자(금융기관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큼

[그림 1-X-2] 정부 부서 간 정보 교환(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61 Figure 10.2. 재인용

5 세금 규칙 관리 및 적용

- ▣ 세무행정 3.0 비전에서는 세무행정 시스템 내에 규칙이 포함되어 있고, 양식을 통해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세무처리 요소에 필요한 기술적 규칙과 정보가 납세자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이러한 목표에는 특정 상황 발생 시 납세자의 자동 등록 및 등록 해제, 세법 규칙 및 계산의 회계 소프트웨어 통합, 원천징수 애플리케이션 또는 자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 이러한 세금 규칙 준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세무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
 - ▶ 약 50%의 행정부가 인공지능을 위험 평가 및 사기 탐지에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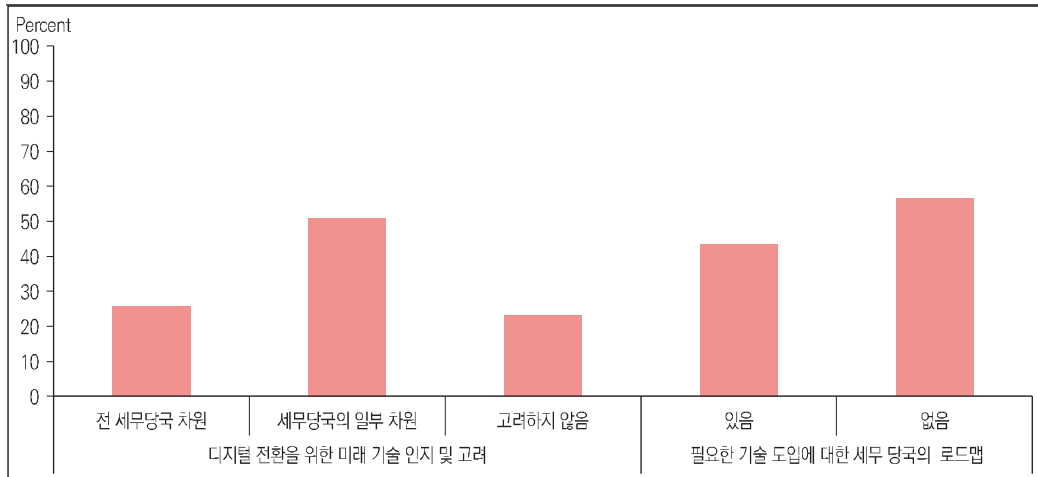
- ▾ 하지만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은 관리 감독을 위해 윤리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함
 - ▶ 캐나다 국세청(CRA)은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험과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AI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1월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CRA 내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알고리즘 영향 및 정렬 평가(Algorithmic Impact and Alignment Assessment, AIAA) 도구의 의무 사용을 지원함
 - AIAA를 통해 CRA는 AI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음

6 디지털 전환과 인적 자원

- ▾ 디지털 전환은 세무행정의 운영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직원 채용 및 기존 직원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인사 관리 및 변경 프로세스는 세무 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임
 - ▶ 세무행정당국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직원 교육에 투자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준비해야 함

- ▾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광범위한 영향과 공유된 접근법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그림 1-X-3]과 같이 많은 세무행정이 디지털 기술 개발에 대해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음

[그림 1-X-3]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 및 계획(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64 Figure 10.4. 재인용

- ▾ 디지털 전환은 세무행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도 요구함
 - ▶ 세무당국은 납세자와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범기능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야 함

- ▾ 이러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세무당국은 직원들에 대해 일반 교육 제공 방식을 재고하고 온라인 생중계 교육 세션, 사전 녹화된 비디오·웨비나 등을 활용하여 교육 환경 전반을 가상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음
 - ▶ 가상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은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 원격 훈련은 이동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수강하는 직원의 수를 늘릴 수 있음

7 디지털 전환 관리 프레임워크

- ▣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 세무행정이 새로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채택하여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게 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행정포럼은 『Digital Transformation Maturity Model』(OECD, 2022)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였고 50개 이상의 세무당국이 활용하고 있음

 - ▶ 이 모델은 세무 당국이 현재 성숙도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고유한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 납세자들 환경에는 세금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 ▶ 핀란드 세무당국은 내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관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피드백을 포함시킴
 - IT기술과 관계 없는 공무원들이 무코드·로우코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해 관계자의 공식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앱을 만들었고, 앱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 걸쳐 사례에 따라 각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세무당국의 종합 디지털 데이터 룸에 연결되어 조직 성과에 대한 정보와 지표를 수집함
 - 데이터 룸 보고는 불만 사항의 상태, 주제 영역, 평가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증거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함

- ▣ 이해 관계자의 사례는 일부 세무당국이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이러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며, 세무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프레임 워크를 수립해야 함

 - ▶ 호주 국세청(ATO)은 2022년 8월 신뢰성과 효과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생태계를 형성하는 선도적인 행정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디지털 전략(2023~2025)을 새롭게 발표함
 - 네 가지 기둥과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이 전략은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과 직원의 경험을 개선하고, 조세 성과를 향상시키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캐나다 국세청(CRA)은 전략적 계획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여 의사결정과 투자를 안내하며, 프레임 워크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와 가이드라인 원칙을 CRA의 미션, 비전, 가치, 및 최종 결과와 연계함
 - 단기~장기 계획 기간 동안 CRA는 디지털 우선의 원활한 경험 제공, 공격적인 조세 계획 및 회피와의 전쟁,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다양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며 CRA는 사용자 중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 및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협업을 촉진함
 - 매년 CRA는 외부 환경, 캐나다 정부의 우선순위, 국제 세무행정 조사(ISORA) 데이터 등의 변화 요인과 성과를 평가하여 여러 계획 기간에 걸친 계획 목표를 결정하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CRA가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가이드라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작업 간의 시너지를 보장함
- ▣ 한편 디지털 전환 전략의 구현은 인력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
- ▶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세무행정당국은 52개의 세무 당국 중 절반에 불과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1 미국

가. 에너지 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상호관계 검토

[조세동향 23-07호]

- ▾ 미국 의회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2023년 6월 30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Tax Credits)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의 상호관계를 다룬 보고서(IF12439, Version 1)를 발표함¹⁴⁾, ¹⁵⁾

 - ▶ 의회조사국은 본 보고서를 통해 다국적기업(MNEs)이 에너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으로 세제혜택이 상쇄되어 추가 세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발표함
- ▾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 환급(refundable) 또는 양도(transferable)할 수 있는 에너지 세액공제는 <표 2- I -1>과 같음

14) CRS, "Energy Tax Credits and the Global Minimum Tax," 2023. 6. 30.,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439>, 검색일자: 2023. 7. 20.

15) IBFD, "Clean Energy Tax Credits May Be Eliminated Under Global Minimum Tax,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arns," 2023. 7.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06_us_3.html, 검색일자: 2023. 7. 20.

〈표 2-1-1〉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 세액공제 내역

구분	환급(refundable)	양도(transferable)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IRC Section 30C)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		○
산화탄소 격리 세액공제(IRC Section 45Q)	○	○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U)		○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V)	○	○
상업용차량 세액공제(IRC Section 45W)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X)	○	○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Y)		○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Z)		○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		○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C)		○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E)		○

자료: CRS, "Energy Tax Credits and the Global Minimum Tax," 2023. 6. 30., p. 1 Table 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439>, 검색일자: 2023. 7. 20.

▣ 의회조사국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에너지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함

▶ 제안한 정책은 아래와 같음

- 일반 세액공제(all general business credit)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도록 함
- 양도 가능한 에너지 세액공제를 환급 가능하도록 함
- OECD와의 협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효과와 동일하게 취급받도록 함
- 세액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IRA에 따른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일반 법인세가 없더라도 공제대상 세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세액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상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다른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⁶⁾

16)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한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산춘추』, vol. 69, 2023, p. 53

- 일반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실효세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
- ▶ 또한 제안한 네 가지 정책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나. 국세청 세정서비스 개선사항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7월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한 국세청 세정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함^{17), 18)}
 - ▶ (납세서비스 개선) 납세자에게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제공함
 - 지역사회 지원 방문·35개의 납세지원센터 개설 등 대면서비스 확대, 개인 또는 세무전문가 계정 기능 향상, 대량 신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모바일 신고양식 제공 등
 - ▶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강화) 고소득자 체납 추징을 강화하고 백만장자가 탈세를 위해 숨긴 자산·소득을 추적하는 전담수사팀을 운영함
 - 체납액 징수, 탈세 추적, 미신고자 단속 등
 - ▶ (국세청 시스템 현대화)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용품을 교체하고 국세청 시스템을 현대화하고자 함
 - 우편분류기계 및 스캐너 교체, 신고양식 디지털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nform Me¹⁹⁾ 시제품(prototype) 개발 등

17) IRS, "Building on filing season 2023 success, IRS continues to improve service, pursue high-income individuals evading taxes, modernize technology," 2023. 7. 14., <https://www.irs.gov/newsroom/building-on-filing-season-2023-success-irs-continues-to-improve-service-pursue-high-income-individuals-evading-taxes-modernize-technology>, 검색일자: 2023. 7. 20.

18) Bloomberg, "IRS News Release: IRS Announces Improved Service in Filing Season 2023, Other Initiatives," 2023. 7. 15., <https://news.bloomberglaw.com/daily-tax-report/irs-news-release-irs-announces-improved-service-in-filing-season-2023-other-initiatives?context=search&index=152>, 검색일자: 2023. 7. 20.

19) Inform Me는 종이 IRS 양식, 통지서, 기타 문서 등을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서를 인식하고 납세자가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IRS.gov 관련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사용자 테스트 후 배포할 예정임

다. 스테이킹 보상(Staking Rewards)을 과세대상으로 명시

[조세동향 23-08호]

-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7월 31일,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²⁰⁾으로 얻은 가상화폐 스테이킹 보상(Cryptocurrency Staking Rewards)²¹⁾이 과세대상 소득임을 명시한 'Rev.Rul. 2023-14'를 발표함^{22), 23)}

 - ▶ 가상화폐를 스테이킹한 보유자는 네트워크에서 검증자로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된 검증자는 검증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보상받을 수 있음
- ▾ 재산거래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에 공정시장가치(the fair market value of the cryptocurrency)를 총 수입금액(gross income)으로 신고해야 함

 - ▶ 전환가능한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원칙이 가상화폐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임
 - IRC Sec 61은 수입금액(income)에 대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실현된 모든 이익 또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의 접근이라 규정하고 있음
 - ▶ 납세자는 실제 또는 추정 수령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라. 주정부 지원금(State Payments) 과세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9호]

-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8월 30일, 총수입금액(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

20) 지분증명이란 가상화폐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메커니즘을 의미함
 21) 스테이킹이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후 가상화폐의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의미함
 22) IRS, "Revenue Ruling 2023-14," 2023.7. 31., <https://www.irs.gov/pub/irs-utl/rev-ruling-2023-14.pdf>, 검색일자: 2023. 8. 24.
 23) IBFD, "IRS: Taxpayers Must Report Cryptocurrency Staking Rewards as Gross Income Upon Obtaining Control Over Rewards," 2023. 8.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1_us_3.html, 검색일자: 2023. 8. 24.

금(State Payments)²⁴⁾에 대한 내용이 담긴 'Notice 2023-56'을 발표함^{25), 26)}

- ▶ 동 지침은 지난 2023년 2월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IR 2023-23'의 후속지침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 동 지침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 17개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²⁷⁾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임
 - 2022년 연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년 귀속 지원금을 2023년 수령하더라도 2023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 주세의 환급세액(state tax refund)은 연방소득세 신고 시 표준공제를 적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2021년 과세연도의 경우 개인의 90%가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를 적용함
 - ▶ 주정부 지원금은 연방소득세법(IRC) 제61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예외가 되는 사례임을 강조함

마. 친환경차 세액공제 양도(transfer)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10호]

-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10월 6일, 구매자가 판매업체에 친환경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를 양도(transfer)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28), 29)}
 - ▶ 2024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차 구매자는 적격판매업체(eligible entity)에 친환경차 세

24) IRS, "State Payments," 2023. 2. 10., <https://www.irs.gov/newsroom/state-payments>, 검색일자: 2023. 9. 19.
 25) IRS, "IRS issues guidance on state tax payments," 2023. 8. 30.,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on-state-tax-payments>, 검색일자: 2023. 9. 19.
 26) IBFD, "IRS Issues Guidance on Federal Taxability of State Payments," 2023. 9.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1_us_3.html, 검색일자: 2023. 9. 19.
 27) Alask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Main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28) IRS, "IRS Issues Guidance for the Transfer of Clean Vehicle Credits and Upda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3. 10. 6.,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for-the-transfer-of-clean-vehicle-credits-and-updates-frequently-asked-questions>, 검색일자: 2023. 10. 16.
 29) IBFD, "IRS Provides Guidance on Transfer of New and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Tax Credits,"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us_5.html, 검색일자: 2023. 10. 16.

액공제를 양도할 수 있고 양도를 통해 공제시점이 앞당겨져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음

- 현행은 구매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구매자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에 등록된 적격판매업체에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구매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국세청 선불프로그램을 통해 양도받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³⁰⁾

- ▶ 구매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양도한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세액공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정산함
- ▶ 판매업체는 ‘국세청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사이트(IRS Energy Credits On-line)’에 등록해야 함
 - 판매업체는 구매자에게 국세청에 등록된 판매업체임을 증명하는 보고서 사본(a copy of the seller report)과 판매가액, 세액공제액, AGI 한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공해야 함
 - 판매업체는 양도받은 세액공제를 수령하기 위해 국세청 선불프로그램(the advance payment program)을 이용해야 함

바. 2024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Inflation Adjustments)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11월 9일, 60개 이상의 소득·세액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발표함^{31), 32), 33)}

30) IRS, “Topic H-Transfer of New Clean Vehicle Credit and Previously-Owned Clean Vehicles Credit,” 2023. 10. 6., <https://www.irs.gov/newsroom/topic-h-transfer-of-new-clean-vehicle-credit-and-previously-owned-clean-vehicles-credit>, 검색일자: 2023. 10. 16.

31)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4,” 2023. 11. 9., <https://www.irs.gov/new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4>, 검색일자: 2023. 11. 24.

32)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4 - Part I,” 2023. 1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3_us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33) Bloomberg, “IRS Releases 2024 Inflation-Adjusted Payroll Amounts (1),” 2023. 11. 1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MGNST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nVzdWx0cy81ZDU1Mzk2NTE3OWI1NThjMDhmMTMxMzE3N2VkMDIwYjJdXQ-f15d240afe49d52b7457a>

- ▶ 국세청은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토대로 내국세입법(IRC)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해 매년 조정함
 - 동 조정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감소, 과세표준 구간 이동 등을 방지함
- ▶ 동 조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므로 2025년 제출할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됨
- ▣ 주요한 조정 사항은 과세표준, 표준공제, 근로장려세제, 해외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음
 - ▶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조정함
 - 소득세 최고세율인 3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731,201달러,³⁴⁾ 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365,601달러,³⁵⁾ 세대주와 독신의 경우 609,351달러³⁶⁾ 이상으로 조정함

〈표 2-1-2〉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단위: 달러¹⁾)

구분	부부합산		부부별도		세대주		독신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10%	23,200 이하	22,000 이하	11,600 이하	11,000 이하	16,550 이하	15,700 이하	11,600 이하	11,000 이하
12%	23,201~94,300	22,001~89,450	11,601~47,150	11,001~44,725	16,551~63,100	15,701~59,850	11,601~47,150	11,001~44,725
22%	94,301~201,050	89,451~190,750	47,151~100,525	44,726~95,375	63,101~100,500	59,851~95,350	47,151~100,525	44,726~95,375
24%	20,105~383,900	19,075~364,200	100,526~191,950	95,376~182,100	100,501~191,950	95,351~182,100	100,526~191,950	95,376~182,100
32%	38,390~487,450	36,420~462,500	191,951~243,725	182,101~231,250	191,951~243,700	182,101~231,250	191,951~243,725	182,101~231,250

cafa8da0a94d81e12b6&criteria_id=5d553965179b558c08f1313177ed020b&search32=ohP-BwgiVEPvsH_ediHUsg%3D%3DWFMTNZlzmwjH-ayypWQdjXWJBOM2pG_k_dvV9Tk-OKR_iYKuYtJLk8C1FX8xUscKGQ_EFb07QWcu7elyQoer2Oiv-Lorf_kzJctfgEVjV6ftNszcKbbRtmfPnAD4ivCzAGqlyh9ebEbDoTghab_6EBVdiltNJZhTShX3T55Fw9j8F7HI7vmEAYFFSDFkKrRwtd8ZkLMNRFOA-wP_axiw_NH6wAojVal5nH2JwENT1gtS06mg7PTPz-ztbfMORYbBSKfkmG8Czj_SJtYZzztY9k2OL8UfJAF_CZsKMLn56KNs5_sG_EL_Zl8-OpGrAr, 검색일자: 2023. 11. 27.

34)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9억 4,288만 2,400원임
 35)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4억 7,144만 2,489원임
 36)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7억 8,575만 6,825원임

〈표 2-1-2〉 의 계속

구분	부부합산		부부별도		세대주		독신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35%	48,745~ 731,201	46,250~ 693,750	243,726~ 365,600	231,251~ 346,875	243,701~ 609,350	231,251~ 578,100	243,726~ 609,350	231,251~ 578,125
37%	731,201 초과	693,750 초과	365,600 초과	346,875 초과	609,350 초과	578,100 초과	609,350 초과	578,125 초과

주: 1) 2023년 12월 11일 기준 1달러는 약 1,318원임
 자료: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 - Part I," 2022. 10.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9_us_4%23tns_2022-10-19_us_4, 검색일자: 2023. 12. 11.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는 아래와 같이 조정됨

〈표 2-1-3〉 소득세 표준공제 조정

신고유형	2024년 ¹⁾	2023년
부부개별 및 독신 신고	14,600달러 (약 1,882만 6,700원)	13,850달러
부부합산 신고	29,200달러 (약 3,765만 3,400원)	27,700달러
세대주 신고	21,900달러 (약 2,824만 50원)	20,800달러

주: 1) 2023. 11. 29. 기준
 자료: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 - Part I," 2022. 10.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9_us_4%23tns_2022-10-19_us_4, 검색일자: 2023. 12. 11.

-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7,430달러³⁷⁾에서 7,830달러³⁸⁾로 조정됨
- ▶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12만달러³⁹⁾에서 12만 6,500달러⁴⁰⁾로 조정됨

37) 2023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8만 985원임
 38) 2023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9만 6,785원임
 39) 2023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474만원임
 40) 2023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312만 1,750원임

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지침(안) 발표

[조세동향 23-12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12월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함^{41), 42)}

 - ▶ 동 지침은 2023년 12월 15일 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짐
-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 핵심광물 등이고 품목별 세액공제 주요 내용은 <표 2- I -4>와 같음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의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정액금액으로 세액공제함
 - 핵심광물의 경우 생산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함

<표 2- I -4>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주요 내용

품목	주요내용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 ² , (폴리실리콘) 3\$/kg 등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드스 발표」, 2023. 12. 15.

41) IRS, "Treasury, IRS issue guidance for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2023. 12. 14.,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guidance-for-the-advanced-manufacturing-production-credit>, 검색일자: 2023. 12. 22.

42) IBFD, "Department of Treasury and IRS Propos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Regulations," 2023. 12.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5_us_1.html, 검색일자: 2023. 12. 22.

- ▶ 동 세액공제는 환급(refundable) 및 양도(transferable)가 가능한 세액공제임⁴³⁾
-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하는 제품에 적용함
 -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함

2 캐나다

가. 디지털서비스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9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3년 8월 4일,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의 수정된 법률 초안⁴⁴⁾과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법률 초안⁴⁵⁾을 발표함^{46), 47)}
- ▶ 재무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법률 관련 의견을 2023년 9월 8일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관련 의견을 2023년 9월 29일까지 수렴함
- ▾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디지털서비스세)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 연간 매출이 7억 5,000만유로⁴⁸⁾ 이상이고, 캐나다 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⁴⁹⁾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함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국 - 에너지 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상호관계 검토』,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7호)

44) Government of Canada, “Legislative and Regulatory Proposals Relating to the Digital Services Tax Act,” 2023. 8. 8., <https://fin.canada.ca/drleg-apl/2023/ita-lir-0823-l-3-eng.html>, 검색일자: 2023. 9. 19.

45) Government of Canada, “Legislative Proposals Relating to the Global Minimum Tax Act,” 2023. 8. 8., <https://fin.canada.ca/drleg-apl/2023/ita-lir-0823-l-4-eng.html>, 검색일자: 2023. 9. 19.

46)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consults Canadians on Budget 2023 measures to grow the clean economy, close tax loopholes, and deliver tax relief for Canadians,” 2023. 8. 4., <https://www.canada.ca/en/departement-finance/news/2023/08/government-consults-canadians-on-budget-2023-measures-to-grow-the-clean-economy-close-tax-loopholes-and-deliver-tax-relief-for-canadians.html>, 검색일자: 2023. 9. 19.

47) IBFD, “Department of Finance Seeks Public Input on Draft Legislation for Pillar Two and Digital Services Tax,” 2023.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8-08_ca_1%23tns_2023-08-08_ca_1, 검색일자: 2023. 9. 19.

48)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조 710억 7,500만원임

- 디지털서비스세가 적용되는 첫 과세연도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매출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디지털서비스세를 산출함
- ▶ (Pillar 2)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다국적기업(MNEs)에 소득 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과 적격내국최저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적용함
-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⁵⁰⁾를 시행하여 초기 몇 년 동안 저위험 관할국(lower-risk jurisdictions)에서의 다국적기업 영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 138개국 및 관할권⁵¹⁾은 2023년 7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감행⁵²⁾함
- ▶ 캐나다는 2021년 10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시기를 유예할 때 다자간 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발효할 예정⁵³⁾이었고 이를 2023회계연도 예산안으로 반영함⁵⁴⁾
- ▶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3년 9월,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⁵⁵⁾

49)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00억 2,600만원임

50)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위험 관할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국가별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추가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과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제도임(정훈·김재경·이희경,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분석 및 고려사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7., p. 96)

51) OECD, “Member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at have approved the July 2023 Outcome Statement on the Two 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s of 11 July 2023,” <https://www.oecd.org/tax/beps/oecd-g20-inclusive-framework-members-outcome-statement-on-two-pillar-solution-to-address-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july-2023.pdf>, 검색일자: 2023. 10. 6.

52) IBFD, “Canada to Move Forward with Digital Services Tax in 2024, Despite OECD Agreement,” 2023. 7.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7-13_ca_1%23tns_2023-07-13_ca_1, 검색일자: 2023. 9. 19.

53) IBFD, “Canada Pushes Digital Tax Implementation to 2024 Following “Historic” OECD Agreement,” 2021.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12_ca_1.html, 검색일자: 2023. 10. 6.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캐나다 -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023. 5. 12.,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3. 9. 19.

55) USTR, “Readout of Ambassador Jayme White’s Meeting with Canada’s Deputy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Rob Stewart,” 2023. 9. 2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september/readout-ambassador-jayme-whites-meeting-canadas-deputy-minister-international-trade-rob-stewart>, 검색일자: 2023. 10. 10.

나. 신축 임대주택 상품서비스세(GST) 리베이트 인상

[조세동향 23-10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3년 9월 14일, 신축 임대주택(New Purpose-Built Rental Housing)의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리베이트 강화를 발표함^{56), 57)}

 - ▶ 캐나다는 신축 임대주택의 상품서비스세 리베이트를 100%로 인상하는 법안 도입을 발표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상품서비스세의 36%를 리베이트(GST Rental Rebate) 신청할 수 있음⁵⁸⁾
 - ▶ 신축아파트(new apartment buildings), 학생 기숙사(student housing),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senior residences), 장기 임대주택 등 특정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이 대상임
 - 2023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3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착공해야 하며 2035년 12월 31일 까지 완공해야 함
 - ▶ 개인 소유의 콘도미니엄, 단독주택 등은 대상이 아니며 기존 리베이트 기준에 따름
 -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renoviction)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거단지의 대규모 리모델링에는 적용하지 않음
 - ▶ 강화된 리베이트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적용함

다. 2024년 연금계획(CCP)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캐나다 국세청은 2023년 11월 1일, 2024년 캐나다 연금계획(the Canada Pension Plan,

56) Government of Canada, "Enhanced GST Rental Rebate to Build More Apartments for Renters," 2023. 9. 1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9/enhanced-gst-rental-rebate-to-build-more-apartments-for-renter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57) IBFD, "Canada to Remove Goods and Services Tax on New Purpose-Built Rental Housing," 2023.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0_ca_1.html, 검색일자: 2023. 10. 16.

58) Government of Canada, "GST/HST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2020. 10. 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231/gst-hst-new-residential-rental-property-rebate.html>, 검색일자: 2023. 10. 16.

CPP)을 발표함⁵⁹⁾, ⁶⁰⁾

- ▶ CPP는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연금제도로, 캐나다는 CPP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 ▶ 동 발표에는 새로운 소득상한(maximum pensionable earnings)인 CPP2(second additional CPP contributions)에 대한 내용이 담김
 - 2024년부터 시행되는 CPP2는 새로운 소득상한으로 기존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다른 요율을 적용함⁶¹⁾
- ▣ 소득상한액은 연간 평균 임금증가율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되고 2024년 소득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 ▶ 소득상한액은 6만 6,600캐나다달러⁶²⁾에서 6만 8,500캐나다달러⁶³⁾로 인상됨
 - 면제소득액(basic exemption amount)은 3,500캐나다달러⁶⁴⁾임

〈표 2-1-5〉 2024년 CPP 요율 및 최대기여금

구분	2024년	2023년
직원 및 고용주	5.95% (각 3,867.50CAD)	5.95% (각 3,754.45CAD)
자영업	11.90% (7,735.00CAD)	11.90% (7,508.90CAD)

- ▶ 새로운 소득상한액인 CPP2는 7만 3,200캐나다달러⁶⁵⁾임
 - 6만 8,500~7만 3,200캐나다달러⁶⁶⁾ 구간에서는 CPP2가 적용됨

59)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venue Agency announce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and contributions for 2024," 2023. 11. 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3/maximum-pensionable-earnings-contributions-2024.html?utm_source=mediaroom&utm_medium=eml, 검색일자: 2023. 11. 27.

60) IBFD, "Canada to Increase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Amount, Implements Second Earnings Ceiling for 2024," 2023.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6_ca_1.html, 검색일자: 2023. 11. 27.

61) Government of Canada, "Canada Pension Plan Enhancement: Second CPP Contribution," 2023. 6. 2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cra-multimedia-library/businesses-video-gallery/canada-pension-plan-enhancement-second-cpp-contribution.html>, 검색일자: 2023. 11. 29.

62)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28만 5,318원임

63)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09만 755원임

64) 2023년 12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9만 4,930원임

65)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55만 6,836원임

66)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09만 755원~6,955만 6,836원임

〈표 2-1-6〉 2024년 CPP2 요율 및 최대기여금

구분	2024년
직원 및 고용주	4% (각 188.00 CAD)
자영업	8% (376.00 CAD)

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 시행법 발의

[조세동향 23-12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3년 11월 28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을경제보고서시행법(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3)을 발의함^{67), 68)}

 - ▶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와 2023년 예산안의 특정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안 C-59를 발의함
- ▾ 법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중산층 지원, 주택공급 안정화, 청정에너지 지원, 디지털서비스세 시행 등임

 - ▶ 심리치료사와 상담치료사가 제공하는 심리치료 관련 서비스의 GST/HST를 면제(exempt)함
 -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대주택 건설의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면제대상을 확대함
 - 협동조합주택법인(cooperative housing corporations)의 건설에 대해서도 면제함

67)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announces legislation to make life more affordable, build more homes, and create good jobs for Canadians," 2023. 11.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11/government-of-canada-announces-legislation-to-make-life-more-affordable-build-more-homes-and-create-good-jobs-for-canadians.html>, 검색일자: 2023. 12. 22.

68) IBFD, "Canada Introduces Legislation Allowing for Implementation of Digital Services Tax, Other Key Measures from 2023 Fall Economic Statement and Budget," 2023. 1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04_ca_1.html, 검색일자: 2023. 12. 22.

- ▶ 청정에너지 지원을 위해 청정기술, 전기, 수소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s)를 우선적으로 시행함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투자세액공제 등을 제공함
- ▶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
 - 캐나다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 특정 법인 및 신탁의 순이자 및 금융비용 공제를 제한함
 - 혼성 불일치 규칙(hybrid mismatch rules)을 시행함

II 유럽

1 영국

가. 필라2 관련 다국적 및 내국 추가세액 지침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영국은 2023년 6월 15일, 2023년 봄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신규 다국적 및 내국 추가세액 (new multinational top-up tax and domestic top-up tax) 관련 법률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⁶⁹⁾
 - ▶ 영국은 필라2의 일환인 적격 소득산입 규칙 및 적격 내국 최저한세 도입을 목적으로 동 법률을 마련한 바 있음
 - ▶ 지침이 적용될 그룹의 범위, 해당 세액의 부과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함
 - ▶ 지침은 서론, 과세 범위, 과세 집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과세 범위에서는 제외기업에 대한 지침, 매출액 기준, 경과 CbCR 세이프하버 규칙의 적용에 대해 설명함
 - ▶ 동 지침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은 2023년 9월 12일에 종료될 예정임⁷⁰⁾

69) IBFD, "United Kingdom-United Kingdom Consults on Draft Guidance on Multinational and Domestic Top-up Taxes Under Pillar 2," 2023. 6.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0_uk_1.html, 검색일자: 2023. 7. 20.

70) GOV.UK., "Draft guidance: multinational top-up tax and domestic top-up tax," 2023 6. 15.,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raft-guidance-multinational-top-up-tax-and-domestic-top-up-tax>, 검색일자: 2023. 7. 20.

나. 전력발전 추가부담금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영국은 2023년 7월 12일, 전력발전 추가부담금(Electricity Generator Levy, EGL) 지침⁷¹⁾을 발표함⁷²⁾

 - ▶ 전력발전 추가부담금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대해 45%의 효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 영국은 전력 도매가 상승에 따라 특정 영국 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이익을 창출함에 따라 전력발전 추가부담금을 도입하였음
 - 도입된 EGL은 횡재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 EGL에 따라 영국은 전력 가격을 MWh당 75파운드⁷³⁾ 이하로 제한하고 가격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수익에는 45%의 효율을 적용함
 - 75파운드 가격 기준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될 예정임
 - ▶ 전력발전 추가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적 제도이며, 2028년 3월 이전이라도 전력 도매가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 폐지될 수 있음

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회계기준 개정안 채택

[조세동향 23-08호]

- ▾ 영국 승인이사회(UK Endorsement Board, UKEB)는 2023년 7월 26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세 회계기준인 IAS 12 개정안의 채택을 발표함^{74), 75)}

71) GOV.UK., "HMRC internal manual -Electricity Generator Levy Manual," 2023. 7. 1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lectricity-generator-levy-manual>, 검색일자: 2023. 7. 20.

72)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Clarifies Electricity Generator Levy," 2023.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14_uk_1.html, 검색일자: 2023. 7. 20.

73) 2023년 7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만 2,900원임

74) UK Endorsement Board, "UKEB adopts International Tax Reform: Pillar Two Model Rules (Amendments to IAS 12)," 2023. 7. 19., <https://www.endorsement-board.uk/ukeb-adopts-international-tax-reform-pillar-two-model-rules-amendments-to-ias-12>, 검색일자: 2023. 8. 3.

-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당 개정안을 채택한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예외규정을 마련함
 - 상기 예외사항에 대해 별도 주석 공시를 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 법인세 비용)을 공시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는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해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IAS 12에 통합될 예정임

라. 2023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영국은 2023년 11월 22일, 2023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을 발표함⁷⁵⁾, ⁷⁷⁾
 - ▶ 금번 예산안은 연간 약 150억파운드⁷⁸⁾ 규모의 법인세 감면 계획을 담고 있으며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금번 예산안이 투자 활성화, 근로에 대한 보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함
- ▾ 법인세 및 기타 세목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정책을 발표함⁷⁹⁾
 - ▶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R&D SME scheme)는 2024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존 연구개발비 지출 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75)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Amends Accounting Rules to Comply with Pillar Two Rules,” 2023. 7.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26_uk_1.html, 검색일자: 2023. 8. 2.

76) IBFD, “United Kingdom - Tax Cuts for Working People and Businesses Headline Chancellor’s 2023 Autumn Statement,” 2023. 11.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2_uk_3.html, 검색일자: 2023. 11. 23.

77)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3,” 2023. 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5e107697196d000d985d6b/E02982473_Autumn_Statement_Nov_23_Accessible_v3.pdf, 검색일자: 2023. 11. 23.

78)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조 6,147억원임

79) IBFD, “United Kingdom - Autumn Statement 2023 in Depth: Chancellor Introduces Permanent Full Expensing, other Measures for Businesses,” 2023. 1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7_uk_3.html, 검색일자: 2023. 11. 30.

Credit, RDEC)와 합쳐질 예정임

-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 기업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6년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를 영구화함

- 영국은 지난 2023년 3월, 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즉시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동 제도를 2023년 4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⁸⁰⁾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 신규 특별투자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특별투자구역에서의 세금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숙박·소매·레저 업종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법인세 75% 인하 조치도 5년간 연장하기로 함

- 동 조치는 산출된 법인세액의 75%를 감면하며, 기업당 최대 11만파운드⁸¹⁾를 한도로 함

▶ 주세는 2024년 8월까지 동결될 예정임

▣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요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⁸²⁾

▶ 2024년 1월 6일부터 국민보험(NI) 요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함

- 이를 통해 연간 35,400파운드⁸³⁾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는 2024/2025연도에 45파운드⁸⁴⁾ 이상 국민보험을 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2024년 4월 6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NI 부과를 폐지함

8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3호, p. 8

81) 2023년 12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270만원임

82) IBFD, “United Kingdom-Autumn Statement 2023 in Depth: Chancellor Announce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Measures,” 2023. 1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7_uk_4.html, 검색일자: 2023. 11. 30.

83)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47만원임

84)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만원임

마.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조세동향 23-11호]

- ▾ 영국은 2023년 11월 10일, 암호화폐의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힘^{85), 86)}

 - ▶ 공동성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48개 국가⁸⁷⁾ 및 관할권이 참여하였음
 - ▶ 공동성명의 참여국은 2027년까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바. 암호화자산에 대한 미납세금 관련 자발적 공시 지침 발간

[조세동향 23-12호]

- ▾ 영국 국세청은 2023년 11월 29일, 암호화자산을 통해 수취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발적 공시와 관련한 지침을 발간함^{88), 89)}

 - ▶ 금번 지침에서 다루는 암호화자산은 비트코인 등의 거래 토큰(exchange tokens),

85)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Joins Collective Agreement to Imple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3.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7_uk_1.html, 검색일자: 2023. 11. 23.

86) GOV.UK., “Policy Paper - International Joint Statement on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3. 11.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joint-statement-on-th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 검색일자: 2023. 11. 23.

87)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88) IBFD, “United Kingdom-Tax Authority Clarifies Voluntary Disclosure of Unpaid Tax on Crypto Assets,” 2023. 11.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30_uk_1.html, 검색일자: 2023. 12. 22.

89) GOV.UK., “Guidance - Tell HMRC about unpaid tax on cryptoassets,” 2023. 11. 29., https://www.gov.uk/guidance/tell-hmrc-about-unpaid-tax-on-cryptoassets?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topic&utm_source=2da236e5-7e5d-4014-92ce-4bc17c07074d&utm_content=daily, 검색일자: 2023. 12. 22.

NFT,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포함함

- ▶ 지침에 따라, 몇 년간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공시되어야 하는 연도의 수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달라짐
 -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미납세금이 발생한 경우, 현재 연도 이전의 4개 연도의 미납세액에 대해 공시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전 6개 연도의 미납세액에 대해 공시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거 20개 연도의 미납세액에 대해 공시해야 함
- ▶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됨
 - 납세의무자가 미납세액을 자발적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는 경감될 수 있음
 - 또한 과태료 수준은 납세의무자의 태도(부주의, 고의 또는 고의 및 은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영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자 및 과태료 계산기를 제공함⁹⁰⁾
 - 상세한 납부 방법에 대한 지침 또한 홈페이지에 제공됨⁹¹⁾

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

[조세동향 23-12호]

- ▣ 영국은 2023년 12월 18일,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함⁹²⁾
 - ▶ 영국의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세라믹, 비료(fertiliser), 유리, 수소(hydrogen), 철강(iron and steel) 등임
 - ▶ EU는 지난 4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CBAM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⁹³⁾ 영국

90) GOV.UK., "Guidance-Calculate interest and penalties for tax years ended 5 April 2002 to 5 April 2021," 2023. 1. 27., <https://www.gov.uk/guidance/calculate-interest-and-penalties-for-tax-years-ended-5-april-2003-to-5-april-2021>, 검색일자: 2023. 12. 22.

91) GOV.UK., "Guidance-Pay tax on cryptoassets," 2023. 11. 29., <https://www.gov.uk/guidance/pay-tax-on-cryptoassets>, 검색일자: 2023. 12. 22.

92) GOV.UK., "Factsheet: UK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3. 12. 18.,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ddressing-carbon-leakage-risk-to-support-decarbonisation/outcome/factsheet-uk-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 검색일자: 2023. 12. 26.

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5호, p. 24

또한 지난 3월 CBAM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음⁹⁴⁾

- ▶ 영국 정부는 CBAM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계 및 지침은 2024년에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2 독일

가. 성장기회 및 투자혁신, 조세간소화·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2023년 7월 17일, 독일 재무부는 성장기회 및 투자혁신 강화, 조세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법률(Gesetz zur Stärkung von Wachstumschancen, Investitionen und Innovation sowie Steuervereinfachung und Steuerfairness),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의 초안을 발표함⁹⁵⁾
 - ▶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성장기회법 초안은 세법의 불공정성 제거, 경제적 부담 대응과 경제성장 기회 확대를 목표로 독일 세법의 변경사항과 자금조달 대책 등을 포함함⁹⁶⁾
 - (손실세액공제 축소) 2024~2027년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을 유예하고 2028년부터 대폭 확대(현행 100만⁹⁷⁾→1,000만유로)하며, 이에 상응하는 무역세법 또한 개정 예정
 - (소득세법 개정) 저가치 자산의 세액공제 기준이 현행 800유로⁹⁸⁾에서 1,000유로⁹⁹⁾로 변경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투자공제 및 특별 감가상각 공제율¹⁰⁰⁾을

9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4호, p. 7

9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Gesetz zur Stärkung von Wachstumschancen, Investitionen und Innovation sowie Steuervereinfachung und Steuerfairness (Wachstumschancengesetz)“, 2023. 7.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3-07-17-Wachstumschancengesetz/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7. 21.

96) Haufe, “Wachstumschancengesetz mit umfangreichen Steueränderungen,” 2023. 7. 18., https://www.haufe.de/steuern/gesetzgebung-politik/wachstumschancengesetz_168_600636.html, 검색일자: 2023. 7. 20.

97) 2023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4억 2,143만원임

98) 2023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13만 7,248원임

99) 2023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42만 1,560원임

100) 투자 직전 연도의 이익 한도가 2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만 적용

현행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

- (부가세법 개정) 2024년부터 전년도 과세액이 2,000유로¹⁰¹⁾(기존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전신고 및 선납 의무 면제
- (기후보호 투자 인센티브¹⁰²⁾)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기업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위한 자산 (후속)취득 또는 생산 비용을 최대 2억유로¹⁰³⁾ 한도 내 15%(최대 3,000만유로¹⁰⁴⁾ 공제
- ▶ 2025년부터 통일된 행정시스템(보고시스템)을 위한 전자 인보이스(거래명세서) 사용의 의무화, 법인격 단체의 과세통지 이의제기 권한범위 변경 및 법인세법 일부 개편 등이 있음
- ▶ 성장기회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23년 11월 예정임

나. 오스트리아·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독일 재무부는 2023년 8월 21일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함¹⁰⁵⁾
- ▶ 독일 재무부는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OECD 기준 반영을 위한 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음¹⁰⁶⁾

101) 2023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84만 3,120원임

102) 기업이 새로운 동산 자산을 취득 또는 생산함으로써 실제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업·임업, 무역,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이중과세협약(DTA) 등에 의해 독일 내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권이 다른 주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103) 2023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841억 2,400만원임

104) 2023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26억 1,860만원임

10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land und die Schweiz unterzeichnen Änderungsprotokoll zum Doppelbesteuerungsabkommen," 2023. 8. 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21-doppelbesteuerungsabkommen-deutschland-schweiz.html?cms_pk_kwd=22,08,2023_Deutschland+und+die+Schweiz+unterzeichnen+%C3%84nderungsprotokoll+zum+Doppelbesteuerungsabkommen&cms_pk_campaign=Newsletter-22,08,2023, 검색일자: 2023. 8. 28.

106) Bloomberg Tax, "Germany to Bring Two Tax Treaties in Line with OECD's Approach,"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F1Q4G0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VhcmNoVzdWx0cy8zZGM4YjkwZDM3MjI3NjI3NWQwZTk4OTA1YmFjNSJdXQ%E2%80%94948b697668b1a130938eeca5ffb2e1543da7a29b83&criteria_id=3dc8b90d372276275d0e92198905bac5&search32=Kq-qHFGDtJZnysNjzuZiFA%3D%3DBG4OWPqR-xQMx5lZL6klWwR_4L15QhMDSls7wpo7kjqN3VKBzGhIGgfPPM9

- ▶ 재무부는 개정안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남용에 대한 조항과 협약이 OECD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주요 목적기준(Principal-Purpose-Test) 관련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였다고 발표함¹⁰⁷⁾
- 독일-오스트리아 개정안은 국경지역 근로자 대상 통근 규정을 공공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국경근로자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 이번 개정 협정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다. 가스·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 조기 종료

[조세동향 23-09호]

- ▣ 독일 정부는 2023년 9월 18일, 가스·열 에너지(난방)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조기 종료할 것을 발표함^{108), 109)}
- ▶ 독일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스·열에너지(난방)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기존 19%에서 7%로 인하한 바 있음¹¹⁰⁾
- ▶ 가스·열에너지 비용이 2022년 대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여 부가가치세 인하 기간을 3개월 조기 종료하여 기존 세율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함

bX-XCjUAlXYlUEFMNvLst_Q78F-0E1iWtbkZ5oxAhpFehpbJzlpE1H9Jyq1NAMxkTk3Kshw5uCAf4Ptm-Kp-7dqsJwD1TDPs8rPitK2h3wNPN008X-2ZHfOkf6IaC4RynTWrtt-Q8BQNUAr4KMviTpJ86WSdCj0mhqWeh3N77llu5o%3D, 검색일자: 2023. 8. 28.

107) EY, "Deutschland unterzeichnet Änderungsprotokolle zu DBAs mit Österreich und der Schweiz," 2023. 8. 24., https://www.ey.com/de_de/steuernachrichten/deutschland-unterzeichnet-aenderungsprotokolle-zu-dbas-mit-oesterreich-und-der-schweiz, 검색일자: 2023. 8. 28.

108) Bundesregierung, "Regierungspressekonferenz vom 18. September 20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gierungspressekonferenz-vom-18-september-2023-2224110>, 검색일자: 2023. 9. 21.

109) Bloomberg Tax Research, "Germany to End Tax Discount on Gas Deliveries Three Months Early," 2023. 9. 18., [110\) Bundesregierung, "Umsatzsteuer auf Gas wird reduziert," 2022. 10.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enkung-gas-2125486>, 검색일자: 2023. 9. 21.](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UHD4T8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 m9kdWN0L3RheC9zZWZyY2gvcmlvZD9eZVVCosXVIRBhfrf8RR5lz3ZbhWnkOcZLDmM9xT7oElvtmMWKWN39B7uJScvPdaBkfdJTT_UDN0V-evDxf-ksEh3FkEOsVZ8AVe5AvkBLzyuRNcculmxE8B_JB Vhlt8TVTCiToZM9YkxjbuD6XeQIwNsger9d_w09VM2IBYwernerP1PbOmUcst5Ekjbd3HYuGqGGgACM8BskytRnqYil6xOnh3D4you7o07Viv1c%3D, 검색일자: 2023. 8. 25.</p>
</div>
<div data-bbox=)

- ▶ 재무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조기 종료로 인한 효과로 공공부문의 세수가 약 21억유로¹¹¹⁾ 확보될 것으로 추정함

라. 제조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

[조세동향 23-09호]

- ▣ 독일 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2023년 11월 9일 향후 5년간 독일 내 일반 제조기업을 포함한 전력소비가 높은 제조기업 대상 전기요금 지원책을 발표함¹¹²⁾
 -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 및 전기세법(Stromsteuergesetz)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전기세를 감면할 예정으로, 내년에만 총 120억유로¹¹³⁾의 구제책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 (전기세 인하) 2024년 상반기 송전망 요금 안정화¹¹⁴⁾ 결정과 함께 제조업 부문의 모든 기업에 대한 전기세가 유럽연합 허용범위의 최소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임
 - 현행 15.37유로/MWh 또는 1.537센트/kWh에서 0.50유로/MWh 또는 0.05센트/kWh로 인하
 - ▶ 이 외에도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기존 전기요금 보전 규정의 연장 등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임

111) 2023년 9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조 9,921억 4,300만원임

112) Bundesregierung, "Strompreispaket für produzierende Unternehmen - Bundesregierung entlastet stromintensive Unternehmen," 2023.11.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rompreispaket-fuer-produzierende-unternehmen-bundesregierung-entlastet-stromintensive-unternehmen-2235602>, 검색일자: 2023. 11. 23.

113) 2023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7조 308억 8,000만원임

114) 주요 대량전력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내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Übertragungsnetzbetreiber 또는 Transmission system operator)는 50Hertz Transmission GmbH, Amprion GmbH, TenneT B.V, TransentBW GmbH로 총 4개의 운영업체로 이루어져 있음

마. 요식업 세율감면 지원책 종료 발표

[조세동향 23-12호]

- ▾ 독일 재무부는 2023년 12월 21일 요식업분야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함¹¹⁵⁾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원책으로 요식업 분야의 부가가치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음
 - ▶ 2023년 12월 21일 발표한 바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하된 7%가 아닌 기존 세율인 19%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새해 첫날 심야시간에 제공되는 음식의 경우 7% 인하세율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Silvester 기간인 1월 1일 당일 심야시간에는 음료를 제외하고 기존의 인하세율인 7%를 적용하고, 심야시간 종료 후에는 다시 일반 부가가치세율 19%가 적용됨

3 프랑스

가. EU Public CbCR 지침 관련 내용 입법

[조세동향 23-07호]

- ▾ 프랑스는 2023년 6월 21일, EU Public CbCR 지침 내용을 입법함¹¹⁶⁾
 - ▶ 프랑스는 EU 지침에 따라 프랑스 다국적기업, 프랑스에서 지점 또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을 수행하는 EU 외의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특정 법인세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

11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slaufen der ermäßigten Besteuerung von Restaurant- und Verpflegungsdienstleistungen gemäß § 12 Absatz 2 Nummer 15 Umsatzsteuergesetz; Einführung einer Nichtbeanstandungsregelung für die Silvesternacht," 2023. 12. 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2023-12-21-auslaufen-der-ermaessigten-besteuerung-von-restaurant-und-verpflegungsdienstleistungen-einfuehrung-einer-nichtbeanstandungsgregelung-fuer-die-silvesternacht.html, 검색일자: 2023. 12. 27.

116) IBFD, "France Transposes Directive on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2023. 6.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3_fr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 이전 연속적인 2개의 회계연도 각각의 총매출이 7억 5,000만유로¹¹⁷⁾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4년 6월 22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 프랑스는 EU 지침 제48c(6)조의 세이프하버를 선택함
 - 세이프하버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기업의 상업적 지위에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보고서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생략의 적절한 이유를 보고서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
 - 생략된 모든 정보는 생략 일자로부터 5년 내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에 보고해야 하며, EU 조세목적상 비협력 관할국 목록의 국가와 관련된 정보는 생략할 수 없음

나. 디지털서비스세 적용 범위 관련 지침 개정

[조세동향 23-07호]

-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3년 6월 21일, 디지털서비스세 적용 범위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한 지침을 발표함¹¹⁸⁾
 - ▶ 개정 지침은 디지털서비스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2022년 3월 31일 결정¹¹⁹⁾을 반영함
 - 사용자 간 거래가 종속적인 경우¹²⁰⁾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과세되지 않음
 -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비과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그 자체의 비과세로 이어지지 않음
 - 그룹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동일한 그룹 내의 기업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에만 적용됨
 - ▶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2019년 도입되어 특정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창출된 총

117) 2023년 7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79억원임

118) IBFD, "Tax Authorities Update Guidelines on Scope of Digital Services Tax," 2023. 6.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6_fr_2.html, 검색일자: 2023. 7. 18.

119) 디지털서비스세(『조세일반법』 제299조)와 관련하여 국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구인(아마존)의 행정지침 중 일부 규정 폐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함(Légifrance, "Conseil d'État, 8ème - 3ème chambres réunies, 31/03/2022, 46 1058, Inédit au recueil Lebon," 2022. 3. 31.,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45462164>, 검색일자: 2023. 7. 26.)

120) 『조세일반법』 제257조의 종속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거래의 요소가 종속적인 경우에는 주된 요소에 따름

매출액에 대하여 3%의 세율로 부과됨¹²¹⁾

- 디지털서비스세는 전 세계 매출액이 연 7억 5,000만 유로¹²²⁾ 이상이고, 프랑스 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이 연 2,500만 유로¹²³⁾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다.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상원 통과

[조세동향 23-09호]

- ▶ 프랑스는 2023년 8월 23일,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일부 세법 규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124), 125)}
 - ▶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세법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과세 방식 및 공제 제도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개선 및 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함
 -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부공동 세율 기본 적용에서 개인별 세율 기본 적용으로 제도 개정, 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혼 관련 지급금액의 과세대상 소득 제외 등임
 - 기존에는 가구(foyer)를 기본 단위로 하여 부부(또는 PACS의 파트너)의 소득을 합산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별 세율 적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선택 가능한 방식이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본적으로 개인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¹²⁶⁾

121) EY, "France issues comprehensive draft guidance on digital services tax,"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ance-issues-comprehensive-draft-guidance-on-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3. 7. 18.

122) 2023년 7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79억원임

123) 2023년 7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5억원 9,900만원임

124) SÉNAT, "Renforcer l'égalité fiscale et successora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https://www.senat.fr/leg/pp122-913.html>, 검색일자: 2023. 9. 19.; SÉNAT,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égalité fiscale et successora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https://www.senat.fr/leg/pp122-913.pdf>, 검색일자: 2023. 9. 19.

125) Bloomberg Tax, "France Senate Considers Bill to Amend Inheritance Tax Provisions," 2023. 8.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C936T5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Ww0cy85YTRmMzMvMjUxYzZjODkwMGE3OGNhNDM5Mjk4Yzc3YiJdXQ--360f5dd28e1402754b0e420104349758d3b5439e&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9a4f330251c7c8900a78ca439298c77b, 검색일자: 2023. 9. 19.

126)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foyer)를 기본 단위로 부과하므로 가구당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기존에는 공동세율 적용이 기본 제도로 되어 있었으며 공동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별 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음. 발의안의 공동과세 방식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며 가구의 78%가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개별 과세 제도를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 25%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Madelin’ 제도의 경우¹²⁷⁾ 부부에게 적용되는 상한을 1만유로¹²⁸⁾에서 1만 8,000유로¹²⁹⁾로 확대함
- 기존에는 협의 이혼에 따른 집행 가능일 또는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2개월 내의 부부 간 지급금액만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12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또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라. 2024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10호]

프랑스 정부는 2023년 9월 27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함^{130), 131)}

- ▶ 녹색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AVE)의 폐지 기한을 연장함
 - 녹색기업 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열 펌프 생산에 대해 이뤄진 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비용의 20~4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¹³²⁾
 - 기업부가가치분담세의 폐지 기한을 기존 예정 기한인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세율을 2024년 0.28%, 2025년 0.19%, 2026년 0.09%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7년 전면 폐지할 예정임¹³³⁾
- ▶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함¹³⁴⁾

기본 제도로 함으로써 여성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127)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Tout savoir sur la réduction d'impôt sur le revenu « Madelin »,”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duction-impot-revenu-investissements-entreprise-pme-madelin>, 검색일자: 2023. 9. 19.

128) 2023년 9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9만원임

129) 2023년 9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54만원임

130)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n°1680,"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116b1680_projet-loi, 검색일자: 2023. 10. 19.

131) IBFD, "Government Presents Finance Bill for 2024, Including Draft Legislation on Pillar Two," 2023. 9.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7_fr_1.html, 검색일자: 2023. 10. 19.

132) 다만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133) 기업부가가치분담세란 프랑스 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역경제분담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인 경우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됨.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것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p. 109)

134) IBFD, "Finance Bill for 2024 Implements Minimum Taxation Directive, Introduces Tax Credit for Green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EU 도입과 관련한 ‘EU 최저한세 지침(2022/2523)’을 국내법으로 입법함
- 다른 EU회원국 내에 설립된 매출액 10만유로¹³⁵⁾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제도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행정협력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EU 부가가치세 수정지침(2020/285)’을 국내법으로 입법함¹³⁶⁾

▾ 개인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 탈세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¹³⁷⁾

- ▶ 개인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이중과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 제외)¹³⁸⁾
- ▶ 역외 탈세 행위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조치로서 이전가격 문서 제출 의무대상 범위 확대, 무형자산 역외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역외 탈세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도입함
 - 다국적기업에 이전가격 문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연매출액 기준을 4억유로¹³⁹⁾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1억 5,000만유로¹⁴⁰⁾로 인하하고, 문서 미제출 벌금 상한을 1만유로¹⁴¹⁾에서 5만유로¹⁴²⁾로 확대함
 - 가치를 판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역외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전 시점 이후의 가치에 기반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역외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¹⁴³⁾을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25만유로¹⁴⁴⁾

Industries,”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2%23tns_2023-09-29_fr_2, 검색일자: 2023. 10. 30.

135)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71만원임

136) IBFD, “Finance Bill for 2024 Transposes New Rules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3%23tns_2023-09-29_fr_3, 검색일자: 2023. 10. 30.

137) IBFD, “Finance Bill for 2024 Introduces New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ax Fraud and Evasion,”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5%23tns_2023-09-29_fr_5, 검색일자: 2023. 10. 30.

138) IBFD, “Finance Bill for 2024 Adjusts Income Tax Brackets, Introduces New Penalty for Aggravated Tax Fraud,”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4%23tns_2023-09-29_fr_4, 검색일자: 2023. 10. 30.

139)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10억 7,600만원임

140)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41억 5,350만원임

141)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7만원임

142)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38만원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만유로¹⁴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이탈리아

가. 은행에 횡재세 도입

[조세동향 23-08호]

- ▣ 이탈리아는 2023년 8월 10일, 적격 은행에 대한 특별세인 횡재세 도입을 관보에 게재하였고 2023년 8월 11일 발효되었음¹⁴⁶⁾
 - ▶ 이탈리아는 2023년 8월 8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긴급조치를 승인하면서 적격 금융중개자에 대한 특별횡재세 도입을 포함하였으나 자산관리 및 중개 회사는 제외되었음¹⁴⁷⁾
 - ▶ 횡재세는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에 40%의 세율로 과세됨
 -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 중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의 최소 5%를 초과한 부분
 - 2024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 중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보다 10% 이상 초과된 부분
 - ▶ 단, 부과되는 횡재세액은 2023년 1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143)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외국 법인과의 계약, 역외 자연인·법인의 개입, 가공의 또는 인위적인 역외 납세 거주지 제공을 말함

144)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695만원임

145)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1,390만원임

146) IBFD, "Italy Introduces Windfall Tax on Banks," 2023. 8.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2023-08-14_it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147) 이탈리아 정부, "Comunicato stampa del Consiglio dei Ministri n. 47," 2023. 8. 8., <https://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stampa-del-consiglio-dei-ministri-n-47/23385>, 검색일자: 2023. 8. 24.

채택 은행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에 보고된 자산 가치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회계연도**는 2024년에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또는 지방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납세자는 현재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째 되는 날(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또는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a, IRAP) 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
 - ▶ 관련한 평가, 벌금, 징수 및 소송 수행에 관하여는 이탈리아 소득세 조항이 적용됨
 - ▶ 해당 세금으로 증가된 수입은 첫 주택 구매에 대한 모기지 자금 조달과 가계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임

나. **최소과세지침 이해를 위한 공개 협의 시작**

[조세동향 23-09호]

-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3년 9월 11일, EU의 최소과세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법안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음^{148), 149)}
 - ▶ 최소과세지침은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000만유로¹⁵⁰⁾인 EU 내 다국적 및 대규모 그룹에 대해 최소 1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임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15일, 서면 절차를 통해 유럽연합 내 대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유효세율을 설정하는 최소과세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¹⁵¹⁾

148) IBFD, "Italy Launches Consultation on Legislative Decree Implementing Global 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3. 9.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2_it_1.html, 검색일자: 2023. 9. 21.

149) MEF, "CONSULTAZIONE PUBBLICA CONCERNENTE LO SCHEMA DI DECRETO LEGISLATIVO DI ATTUAZIONE DELLA DIRETTIVA (UE) 2022/2523 DEL CONSIGLIO DEL 14 DICEMBRE 2022, INTESA A GARANTIRE UN LIVELLO DI IMPOSIZIONE FISCALE MINIMO GLOBALE PER I GRUPPI MULTINAZIONALI DI IMPRESE E I GRUPPI NAZIONALI SU LARGA SCALA NELL'UNIONE," 2023. 9. 11., https://www1.finanze.gov.it/finanze2/servizi/n_consult_newDF/consulta.php?id=9307181&step=0, 검색일자: 2023. 9. 21.

150) 2023년 9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64억 250만원임

151) IBFD, "Council Formally Adopts 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 1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2-16_e2_1%23tns_2022-12-16_e2_1, 검색일자: 2023. 9. 21.

-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임
- ▶ 제외되는 법인은 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공공의료 및 교육제공, 공공 인프라 구축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임
- ▾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2023년 10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 ▶ 사안의 복잡성과 국내 조세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공개 협의로 경제 운영자, 무역협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출이 권장됨

5 스페인

가. 특정 식품에 대한 VAT 인하 연장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 부과

[조세동향 23-07호]

- ▾ 2023년 6월 29일, 기본 식품 및 파스타 제품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27일 실시한 VAT 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¹⁵²⁾
- ▶ 2022년 12월 27일 스페인은 Royal Decree-Law 20/2022에 따라 기본식품 및 파스타 제품 등에 대하여 VAT 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¹⁵³⁾
 - 빵, 우유, 계란, 치즈, 과일, 채소 등 기본식품에 대하여 기존 4%에서 0%로 VAT를 인하하였음
 - 오일 및 파스타 제품에 대하여 기존 10%에서 5%로 VAT를 인하하였음
- ▶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5.5%로 완화될 경우 2023년 5월에 VAT 세율 인하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이 6.6%에 머물면서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음

152) IBFD, "Spain Approves Beneficial Tax Measures for Electric Vehicles, Extends Reduced VAT Rates for Certain Foods," 2023. 6.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30_es_1.html, 검색일자: 2023. 7. 20.

153) IBFD, "Spanish Government Plans to Extend Reduced VAT for Certain Foods Until 31 December 2023," 2023. 6.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6-15_es_1%23tns_2023-06-15_es_1," 검색일자: 2023. 7. 20.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5%가 세액공제됨
 - 공제는 차량이 등록된 과세기간에 적용됨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취득 가격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가격에 대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이 경우 공제는 해당 금액이 지불된 과세기간에 적용됨
 - ▶ 두 경우 모두 공제는 최대 2만유로¹⁵⁴⁾로 제한되며 공제기준은 차량 취득에 내재된 비용과 세금을 포함한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됨

- ▾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지불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됨

 - ▶ 공제는 연간 최대 4,000유로¹⁵⁵⁾이고, 공제기준은 설치를 위해 지불된 금액(법정 입찰에 의한 현금 지불은 제외)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보조금 금액을 뺀 금액임

6 포르투갈

가. 국가별 보고(CbC reporting) 관련 법령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8월 23일, EU Directive 2021/2101에 따른 법령 Decree-Law No.73/2023을 발표하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 보고) 의무를 내국법에도 반영함¹⁵⁶⁾

154) 2023년 7월 20일 원화 환산 시 약 2,853만원임

155) 2023년 7월 20일 원화 환산 시 약 571만원임

156) Diário da República(포르투갈 관보), "DECREE LAW No. 73/2023," <https://diariodarepublica.pt/dr/en/detail/decree-law/73-2023-220219336>, 검색일자: 2023. 9. 21.

- ▶ 당해 및 이전 회계연도의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000만유로¹⁵⁷⁾ 이상인 다국적 그룹 또는 개별 기업의 최종 모기업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연간 소득세 정보를 게시해야 함

 - ▶ 글로벌 거래, 특히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기록된 이익 및 거래 건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직원 수, 활동 내용, 매출액, 법인세 및 사내유보금 등의 정보가 포함됨¹⁵⁸⁾
 - ▶ CbC 보고는 모기업의 웹사이트(모기업이 EU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 자회사나 지점)에 영어 혹은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최소 5년간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어야 함¹⁵⁹⁾
- ▶ 2024년 6월 22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보고서가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게시를 완료해야 함

 - ▶ 본 법안과 관련한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00만¹⁶⁰⁾~3만유로¹⁶¹⁾의 벌금이 부과됨

나.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10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10월 10일 예산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법안으로 제정과 동시에 발효됨
- ▶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자본화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함¹⁶²⁾

 - ▶ 적격 스타트업의 첫 과세 소득 중 5만유로¹⁶³⁾에 대해 12.5%의 감면세율을 적용함
 - ▶ 기업 자본화(capitalisation)¹⁶⁴⁾ 관련 과세기간인 12개월간 EURIBOR¹⁶⁵⁾ 평균 금리를

157)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705억 8,000만원임

158) KPMG, "Portugal: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legislation approved," 2023. 8. 30.,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3/08/tnf-portugal-public-country-by-country-reporting-legislation-approved.html>, 검색일자: 2023. 9. 26.

159) 상동

160)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4만 1,160만원임

161)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82만 3,200만원임

162) IBFD, "Portugal - Budget 2024: CIT Proposals Include Slashing CIT Rate for Start-ups, Reinforcing Incentive for Capitalization of Companie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2, 검색일자: 2023. 10. 23.

163)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시 환산 약 7,120만 6,000만원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공제해 왔으나, 기존 요율에 일반 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2%p를 추가 공제함

- ▶ 임금 인상 관련 세제 혜택은 최고 보수 10% 및 최저 보수 10% 직원의 연간 고정임금을 통해 임금 수준을 계산함
 - 본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임금 범위를 상위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까지 확대함
- ▶ 고용주가 고용인 사용을 위해 할당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고용인의 영구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됨
- ▶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과세되는 지방법인세 요율을 차량 취득 비용에 따라 8.5%, 25.5%, 32.5%(기존 10%, 27.5%, 35%)로 인하함
 -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① 대중교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② 법인의 일상적 활동 과정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③ 개인소득세 과세 목적으로 법인의 경영진 혹은 직원에게 차량 비용을 할당하는 서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방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¹⁶⁴⁾
- ▣ 개인소득세 세율의 소득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세금 면제 혜택의 확대 및 국외 거주자와 관련한 세제 변경사항 등이 포함됨¹⁶⁷⁾
- ▶ 과세표준 금액을 모든 구간 3%씩 인상하였으며, 5번째 소득 구간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14.5~35%에서 13.25~32.75%로 인하함

164) 비용 발생 기간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가치에 비용을 포함시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 방법(Investopedia, "Capitalization: What It Means in Accounting and Financ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apitalization.asp>, 검색일자: 2023. 11. 2.)

165)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내 시중은행 간 금리(Euribor Rates, "Euribor," <https://www.euribor-rates.eu/en>, 검색일자: 2023. 10. 30.)

166) 현재는 62,500유로 이상의 취득 비용에 대해 10%의 지방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167) IBFD, "Portugal - 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표 2-11-1〉 포르투갈의 2024년 예산안 개인소득세 세율표 변경

2023년 ¹⁾			2024년 ²⁾		
과세 표준	세율 (%)	누진공제 (유로)	과세 표준	세율 (%)	누진공제 (유로)
7,479유로 이하	14.5	0	7,703유로 이하	13.25	0
7,480~11,284유로	21	486.14	7,704~11,623유로	18	365.89
11,285~15,992유로	26.5	1,106.73	11,624~16,472유로	23	947.04
15,993~20,700유로	28.5	1,426.65	16,473~21,321유로	26	1,441.14
20,701~26,355유로	35	2,772.14	21,322~27,146유로	32.75	2,880.47
26,356~38,632유로	37	3,299.12	27,147~39,791유로	37	4,034.17
38,633~50,483유로	43.5	5,810.25	39,792~51,997유로	43.5	6,620.43
50,484~78,834유로	45	6,567.33	51,998~81,199유로	45	7,400.21
78,834유로 초과	48	8,932.68	81,199 유로 초과	48	9,836.45

자료: 1) PwC, "Portugal: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3. 10. 30.

2) IBFD, "Portugal - 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 ▶ 18~26세(박사학위 소지자는 30세)의 청년 근로자의 첫 근무 5년간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연차에 따라 25~10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표 2-11-2〉 청년 근로자의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한 초기 5년간 소득공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공제율(%)	100	75	50	50	25
한도액(유로)	20,400	15,300	10,200	10,200	5,100

자료: IBFD, "Portugal - 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 ▶ 이전 5년간 포르투갈에서 조세 목적 거주자로 간주된 적이 없는 개인이 2024~2026년 기간에 조세 목적 거주자로 등록하는 경우,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5년간 최대 25만유로¹⁶⁸⁾까지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됨

168)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610만원임

- ▶ 일부 국외 소득 및 국내 소득에 대해 면세 및 감세가 적용되는 비거주자 세금 혜택 (Non-Habitual Tax Residents, NHR)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 5년간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은 특정 직군의 고용 및 자영업 소득자에게 10년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금우대 제도가 도입됨
 -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세 목적상 포르투갈 거주자가 되거나 해당일까지 유효한 거주 허가를 보유한 개인이 2024년 3월 31일까지 NHR로 등록하는 경우 제도의 적용 기한인 10년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제도를 유효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제도 대상자는 신규 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됨
 - 또한 신규 제도는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국가 과학 및 기술 시스템, 특정 조건에 따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수행하는 연구개발, 특정 법률 조건에 따른 생산적 투자 목적의 계약을 통해 자격을 지니는 직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적용 대상임
 - ▶ 업무 목적상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0.4유로¹⁶⁹⁾/km의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보상 한도는 국내 운행은 62.75유로¹⁷⁰⁾, 국외 운행은 148.91유로¹⁷¹⁾(일반직군)와 167.07유로¹⁷²⁾(임원진)가 적용됨
 - ▶ 요건을 준수한 고용주의 이윤분배(profit-sharing) 금액은 최대 4,100유로¹⁷³⁾까지 세금이 면제됨
 - ▶ 동산으로 발생한 자본 손실에 대한 이월을 5년간 허용함
 - ▶ 특정 도시 임대차법 시행 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는 수익이 연간 4,100유로 미만이거나 임대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60%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이 지속되는 한 소득세가 면제됨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고, 일부 음료 관련한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됨¹⁷⁴⁾
- ▶ 기본 영양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초 식품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됨
 - ▶ 60% 이상의 영구 장애를 지닌 사람의 특정 오락 및 문화행사나 설비 방문을 지원

169)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0원임

170)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9,401원임

171)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만 2,154원임

172)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 8,026원임

173)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4만 163원임

174) IBFD, "Portugal-Budget 2024: Indirect Tax Proposals Include Changes in VAT Exemptions, Increase in Tax on Beverage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6, 검색일자: 2023. 10. 23.

하는 동행인의 티켓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료, 토양 개량제 및 기타 제품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 세무 등록부에 따라 ‘여행사’ 활동을 하는 업체의 경우, 대회,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및 유사 행사의 진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 맥주, 증류주 및 발효주, 무알코올 가당 음료, 일반 및 탄산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기존 세율 대비 10%씩 인상함
- ▣ 재산 취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5%씩 인상되며, 취득세 혹은 보유세 면제 한도 및 요건 등이 변경됨¹⁷⁵⁾
- ▶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도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5%씩 인상됨
 - ▶ 영구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도시 부동산 취득의 면세 한도가 기존 97,064유로¹⁷⁶⁾에서 101,917유로¹⁷⁷⁾로 인상됨
 - ▶ 거주 목적으로 임대 시 건축, 증축, 개량 또는 유상 취득된 도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의 면제는 임대가 임차인의 영구 거주를 위한 것인 경우에만 허용됨
 - ▶ 특정 도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거주 목적으로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연간 4,100유로¹⁷⁸⁾ 미만이거나 임대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60%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역시 면제됨

175) IBFD, “Budget 2024: Property Tax Proposals Include Increase in Property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pt_5.html, 검색일자: 2023. 10. 23.

176)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27만원임

177)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517만원임

178)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4만 163원임

다. 사회지원지수 인상 및 연금 지급 연령 연장

[조세동향 23-12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12월 7일 노령연금 지급 연령을 연장하고, 이어서 11일에는 세계 관련 혜택 적용의 기준이 되는 사회지원지수를 인상함
 - ▶ 포르투갈 재무부 및 노동연대사회보장부는 2024년 사회지원지수(indexante dos apoios sociais)를 기존 480.43유로¹⁷⁹⁾에서 509.26유로¹⁸⁰⁾로 6% 인상함¹⁸¹⁾
 - 사회지원지수는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최소 기준치나 개인소득세 공제를 위한 최대 기준치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기여금의 감면 대상 소득 기준액이나 가족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액 등이 함께 인상됨
 - ▶ 2025년 적용되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기대수명 지표를 반영하여 2024년 66세 4개월에서 66세 7개월로 상향함^{182), 183)}

7 아일랜드

가. 지식개발박스(KDB) 세율 10%로 인상 발표

[조세동향 23-09호]

- ▣ 아일랜드는 2023년 9월 5일,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KDB) 제도의 적용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10%로 상향조정할 것을 발표함^{184), 185), 186)}

179) 2024년 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만 2천원임

180) 2024년 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만 3천원임

181) IBFD, "Portugal Raises Social Support Index," 2023. 1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2-14_pt_1, 검색일자: 2023. 12. 26.

182) IBFD, "Portugal Raises Retirement Age for Old-Age Pension," 2023. 1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2-08_pt_1, 검색일자: 2023. 12. 26.

183) Trabalho, "Solidariedade e Segurança Social, Portaria n.º 414/202 (노동연대사회보장부 조례)," <https://files.diariodarepublica.pt/1s/2023/12/23600/0008900090.pdf>, 검색일자: 2023. 12. 26.

184) IBFD, "Ireland - Ireland Increases Knowledge Development Box Tax Rate to 10%," 2023. 9.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8_ie_1.html, 검색일자: 2023. 9. 19.

- ▶ 지식개발박스 제도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와 유사하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아일랜드에서 2016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음
 - 아일랜드 내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의해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아일랜드 법인에 상업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로열티 및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2.5%)을 50% 감면하여 6.2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였음¹⁸⁷⁾
- ▶ 금번 세율 인상 조치는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도입에 따른 것으로, 기존 KDB에서 적용되는 세율인 6.25%가 STTR에서 규정하는 9% 세율 미만에 해당하므로 KDB 세율을 10%로 상향조정된 것임
 - STTR은 이자, 로열티, 그룹내 서비스(intragroup service) 비용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임
- ▶ 동 조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나. 관광 및 환대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조세동향 23-09호]

- ▣ 아일랜드는 2023년 9월 1일, 관광 및 환대(hospitality) 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종료하여 9%의 경감세율에서 13.5% 표준세율로 인상함¹⁸⁸⁾
- ▶ 아일랜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정된 기간 동안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한 바 있음

185)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McGrath signs Commencement Order to implement Finance Act 2022 amendments to the Knowledge Development Box from 1/10/23," 2023. 9.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23cd6-minister-mcgrath-signs-commencement-order-to-implement-finance-act-2022-amendments-to-the-knowledge-development-box/>, 검색일자: 2023. 9. 19.

186) Stephanie Soong, "Ireland Amends Patent Box In Response to Pillar 2 Rule,"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1, September 11, 2023, p. 1470

187) 아일랜드 국세청, "Knowledge Development Box (KDB)," 2023. 5. 29.,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reliefs-and-exemptions/knowledge-development-box-kdb/index.aspx>, 검색일자: 2023. 9. 19.

188) IBFD, "Ireland - Ireland Raises VAT to 13.5% for Specified Food Items Supplied by Wholesalers, Retailers," 2023.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6_ie_1.html, 검색일자: 2023. 9. 19.

-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는 몇 차례 연장되었으나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됨
- ▶ 아래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9%에서 13.5%로 인상함
 -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및 기타 케이터링 시설에서 특정 음식 및 음료의 공급
 - 영화관, 박물관 및 전시회를 포함한 특정 명소 입장권의 공급
 - 호텔, 게스트하우스 및 숙박시설의 공급
 - 미용 서비스 공급
- ▶ 인상된 세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다. 2024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10호]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23년 10월 10일,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⁸⁹⁾
 -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상향조정, Help-to-buy 세제혜택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법인세) 필라2 이행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필라2에 따른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발표함
 - ▶ 연구개발세액공제(R&D Tax Credit Regime)와 관련하여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함
 - ▶ 고용 및 투자 인센티브(Employment and Investment Incentive, EII)의 투자 기간을 모든 투자에 대해 4년으로 표준화하고 연간 투자공제 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여 50만유로¹⁹⁰⁾로 증가시킴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유로¹⁹¹⁾에서 4만 2,000유로¹⁹²⁾로 인상함

189) IBFD, "Ireland - Budget 2024: Government Announces Budget for 2024," 2023.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1_ie_1.html, 검색일자: 2023. 10. 18.

190)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1,612만원임

191)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29만원임

19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15만원임

- ▶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775유로¹⁹³⁾에서 1,875유로¹⁹⁴⁾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환급한도를 1,775유로에서 1,875유로로 인상함
- ▶ 또한 가정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를 1,700유로¹⁹⁵⁾에서 1,800유로¹⁹⁶⁾로 인상함

▣ (기타)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혁신적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양도소득세 경감(relief)을 발표함
 - 적격 투자금에 대해 기존 투자금의 최대 두 배까지 양도소득세 경감을 제공함
 - 투자자는 최소 3년간 투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평생 한도액은 300만유로¹⁹⁷⁾임
- ▶ 가스 및 전기 공급품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9% 경감세율을 추가적으로 12개월 연장함
- ▶ 유류세(fuel excise) 인상이 2023년 10월 3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4년으로 연기함
- ▶ Help to Buy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함
 - Help to Buy 제도는 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매한 부동산 가액의 10%, 최대 3만유로¹⁹⁸⁾까지 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는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의 두 가지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힘
 - 아일랜드가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현재 아일랜드가 세계 최저 수준인 1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 유치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내년부터는 OECD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인 15%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

19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4만원임
 19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만원임
 19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3만원임
 19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8만원임
 197)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억원임
 198)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0만원임

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조세동향 23-11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3년 11월 15일, 암호화폐의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힘¹⁹⁹⁾, ²⁰⁰⁾
- ▶ 공동성명의 참여국은 2027년까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가 발표한 DAC 8 지침을 통해 CARF를 이행해야 함 - EU 재무장관이사회(ECOFIN)는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DAC 8(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 지침을 승인한 바 있음²⁰¹⁾

8 스웨덴

가. 스웨덴에 위치한 콜오프(Call-Off) 창고로 상품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고정사업장 규정 명확화

[조세동향 23-07호]

- ▣ 스웨덴 국세청은 2023년 6월 19일, 스웨덴의 콜오프 창고²⁰²⁾로 상품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고정사업장(PE)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공식 성명서(No. 8-2418494)를 발표함²⁰³⁾

199) IBFD, "Ireland - Ireland Confirms Commitment to Imple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by 2027," 2023. 1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5_ie_1.html, 검색일자: 2023. 11. 16.

200) 아일랜드 정부, "Collective engagement to implement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2023. 11. 10., <https://www.gov.ie/en/publication/9a551-collective-engagement-to-implement-th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carf/>, 검색일자: 2023. 11. 23.

2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6호, p. 16

202) 콜오프 창고는 콜오프 계약(선 생산 후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는 계약으로서, 외국에 있는 공급업체가 상품을 구매자의 국가로 보내는 시점에는 해당 상품이 재고로 인식되었다가, 이후에 고객에게 실제로 상품이 이전될 때 해당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을 말함)에 따른 대기 창고를 의미함

203) Bloomberg Tax, "Sweden Tax Agency Clarifies PE Rules for Transferring Goods to Call-Off Wareho

- ▶ 판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직접 고용한 직원이나 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콜오프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콜오프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 성명서에는 콜오프 계약에 대한 업데이트된 간소화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자의 EU 상품 이전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소화 규칙이 적용됨
- ▶ 해당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나.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소유주의 주식 과세 명확화

[조세동향 23-07호]

- ▣ 스웨덴 국세청은 2023년 6월 26일,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에 대한 소유주의 주식 과세를 명확히 하는 공식 성명서 (No. 8-2395093)를 발표함²⁰⁴⁾
 - ▶ 성명서에서 저세율국 법인에 대한 주식에 i 57 kap. IL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 성명서의 발표 배경은 스웨덴 명목법인세율의 55% 이하의 실효세율로 과세되어 CFC 규정이 적용되는 저세율국 법인에 대한 주식에, 스웨덴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배당금 및 자본 이득과 유사하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함임²⁰⁵⁾
 - ▶ CFC가 스웨덴 법률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면 i 57 kap. IL의 규정이 적용

uses Located in Sweden,” 2023. 6. 2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AFG0UU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82N2RjYTg3MDhkMGUxZTZjM2I2NGZkMWMwZTQ5ZW44NSJdXQ--c1b3fe53b6effcbc31ca424893e25118617a012d&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67dca8708d0e1e6c3b64fd1c0e49ec85, 검색일자: 2023. 7. 6.

204) Bloomberg Tax, “Sweden Tax Agency Clarifies Taxation of Shares i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2023. 6. 2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BP695S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9lOTFjNzYyMjE1ZjkzMmU0YzU5NTZmNDI0NWZmOTQzYiJdXQ-44d5cfef5dbc99bfc433e1836c24f29ab02ee04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e91c762215f932e4c5956f4245ff943b, 검색일자: 2023. 7. 5.

205) 스웨덴 국세청, “Andelar i CFC-bolag kan omfattas av bestämmelserna i 57 kap. IL om utdelning och kapitalvinst på andelar i fåmansföretag,”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6153.html>, 검색일자: 2023. 7. 10.

되어, CFC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자본이득은 경우에 따라 서비스 소득(inkomstslaget tjänst)²⁰⁶⁾의 범주에서 과세될 수 있음

- 기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스웨덴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자본이득은 경우에 따라 서비스 소득의 범주에서 과세될 수 있음
- ▶ 추가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CFC 소득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을 발표함
 - 이미 CFC 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산입되지 않음²⁰⁷⁾
 - CFC가 스웨덴에서 유한책임회사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국에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필요는 없음

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11호]

- ▣ 스웨덴 정부는 2023년 10월 26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을 이행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⁰⁸⁾
 - ▶ 과거 연속적인 2개 회계연도의 총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그룹 내 기업은 추가세액으로 인해 1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법안은 고율과세 관할국에서 저율과세 관할국으로 이익을 이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감소시킴
- ▣ 수정안은 9월에 발표된 법안 초안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세금신고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 ▶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스웨덴 국세청에 추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는 그룹이 최저한세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평가를 위한 기초 역할을 할 것임

206) 스웨덴에서 유한책임회사로부터의 배당 등 소득에 대해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전 5년간 회사에서 유의한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 중 특정 금액(이전연도 과세표준의 일정 배수 또는 주식 취득가액의 일정비율과 급여기준의 일정 금액의 합계)의 3분의 2는 자본소득으로 보아 30%의 세율로 과세하고 3분의 1은 비과세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함(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se_s_001.html)

207) 스웨덴 『소득세법』 42 kap. 22 § första stycket IL.

208) News IBFD, "Sweden Presents Revised Bill on Pillar Two Implementation to Parliament," 2023. 1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4_s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 ▶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연체료 및 추가세금(tax surcharges)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규모 다국적 및 그룹기업 내 약 1만 3천개의 스웨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24개 기업은 스웨덴에 모회사를 두고 있음
- ▶ 수정안에는 영구적인 세이프하버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행은 후속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라. PSP 업체의 부가가치세 기록 보고 의무에 관한 법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23-11호]

- ▾ 스웨덴은 2023년 11월 9일,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2020/284)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PSP)에 대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절차법 개정법률(No. SFS 2023:638)을 공포함²⁰⁹⁾
- ▶ 새로 도입된 요건에 따라 스웨덴에 소재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급인 또는 수취인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 분기 동안 동일한 수취인에 대한 국경 간 결제 건수가 25건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 수취인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이 회사 식별 코드에 따라 EU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지급인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 서비스 제공업체는 결제가 이루어진 회계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의무가 존재함
 - 보고 정보에는 수취인의 이름, 부가가치세 번호, IBAN 번호,²¹⁰⁾ 결제 날짜, 금액 및 통화가 포함되어야 함

209) News IBFD, "Sweden Gazettes Bill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2023.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7_s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210) 국제은행 계좌번호를 뜻함

-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SEK²¹¹⁾을 한도로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 또한, 이러한 결제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할 경우, 최대 100만SEK²¹²⁾을 한도로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마. 전문가 세금감면 기간 연장

[조세동향 23-12호]

- ▾ 스웨덴은 2023년 12월 5일, 전문가의 조세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소득세법(1999:1229)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²¹³⁾
 - ▶ 소득세법 제11장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연구원 또는 기타 핵심 인력의 법정 요건을 갖춘 업무에 대한 급여,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보수 또는 혜택 등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국내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거나 역량 수준이 높은 전문 업무 또는 국내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역량 수준이 높은 자격을 갖춘 연구 또는 개발 과제, 또는 관리직 또는 회사의 주요 직책과 관련된 기타 업무가 이에 해당됨
 - ▶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스웨덴에 최초로 체류하는 경우 2023년 3월 31일 이후 자격을 갖춘 전문가, 연구원 및 기타 핵심 인력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임

바. 비닐봉지 세금 폐지

[조세동향 23-12호]

- ▾ 스웨덴은 2023년 12월 6일,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규정(2020:33)을 관보에

211)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233만원임

212)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81만원임

213) IBFD, "Sweden Extends 'Expert' Tax Time Limit," 2023. 12.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5_se_2.html, 검색일자: 2023. 12. 19.

계재함²¹⁴⁾

- ▶ 스웨덴 정부는 EU의 비닐봉지 소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비닐봉지 세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 스웨덴의 1인당 연간 경량 비닐봉지 소비량은 EU의 소비 목표인 40개에 한참 미달하는 연간 20개 미만에 그침
 - 비닐봉지 세금은 소비세의 일종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순수 폐기물에 대해 무게(kg)당 0.8유로²¹⁵⁾가량의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²¹⁶⁾
- ▶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EU의 소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지된 규정은 발효 전 기간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됨

사. 자연인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제안

[조세동향 23-12호]

- ▣ 스웨덴 재무부는 2023년 12월 18일, 투자 저축 계좌를 보유한 자연인의 저축에 대해 30만 크로나²¹⁷⁾의 비과세 한도를 도입하는 제안을 발표함²¹⁸⁾
 - ▶ 제안에 따르면 투자 저축 계좌, 양로보험 및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an-European Personal Pension, PEPP)의 저축 계약을 보유한 자연인은 처음 저축한 30만 크로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 또한 제안에는 PEPP 상품을 제공하는 스웨덴 보험회사가 양로보험 보유 및 PEPP 상품 저축 계약에 대한 관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²¹⁹⁾

214) IBFD, “Government Abolishes Tax on Plastic Bags,” 2023. 1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08_se_1.html, 검색일자: 2023. 12. 19.

215) 2024년 1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54원임

216) Kotra, “스웨덴 플라스틱 정책으로 알아보는 대체 시장 트렌드,” 2023. 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3553, 검색일자: 2024. 1. 12.

217) 2024년 1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59만원임

218) IBFD, “Sweden Proposes Tax-Free Threshold for Savings of Natural Persons,” 2023.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9_se_1.html, 검색일자: 2023. 12. 20.

219) 스웨덴 정부, “En skattefri grundnivå för sparande på investeringssparkonto och i kapitalförsäkring,” 2023. 12. 18.,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

- ▶ 투자 저축 계좌, 양로보험 및 PEPP 상품 저축 계약 보유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함께 제안됨
- ▶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제안됨

9 오스트리아

가. 2024년 개인소득세 면세 한도액 인상

[조세동향 23-09호]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3년 8월 8일,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개인 소득세 면세 한도금액 인상 계획을 발표함²²⁰⁾
 - ▶ 2024년 개인소득세 면세 한도액을 기존 11,693유로²²¹⁾에서 12,500유로²²²⁾로 인상할 예정임
 -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세율이 상이함
 - 2023년 기준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는 연소득의 11,693유로까지는 면세, 11,693~19,134유로²²³⁾는 20% 세율, 19,134~32,075유로²²⁴⁾는 30%세율로 구간별 세율이 증가하며 100만유로²²⁵⁾ 이상은 최대 세율 50%를 부과함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소득세 면세 한도액을 인상함으로써 2024년 총 36억 5,000만 유로²²⁶⁾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2023/12/en-skattefri-grundniva-for-sparande-pa-investeringssparkonto-och-i-kapitalforsakring/, 검색일자: 2023. 12. 20.

220) Bundesministerium Finanzen(Österreich), "Brunner: Steuerzahler sparen sich kommendes Jahr 3,65 Milliarden Euro Steuern," 2023. 8. 8.,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3/august/brunner-pr%C3%A4sentation-progressionsbericht.html>, 검색일자: 2023. 8. 30.

221)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682만 3,888.4원임

222)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798만 5,000원임

223)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734만 2,294원임

224)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583만 4,854원임

225)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4억 2,899만원임

226)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5조 2,531억 5,300만원임

나. 스타트업 기업 진흥법 최종 승인

[조세동향 23-12호]

- ▾ 2023년 12월 20일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스타트업 기업의 촉진과 진흥을 목적으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부담 경감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인 ‘스타트업 진흥법 (Start-Up Förderungsgesetz)’을 최종 승인함^{227), 228)}

 - ▶ 2023년 5월 26일 법안 초안을 최초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기업 형태인 ‘유연한’ 기업(FlexCo)의 도입으로 스타트업 기업 내 직원 참여 기회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본금 인하) 유한책임회사(GmbH)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000유로로 인하
 - (우리사주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직원이 취득한 주식을 실제 매도할 때까지 주식 자본에 대한 평가 연기
 -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자본이득의 75%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 나머지 25%는 일반 소득세율 적용 등
 - ▶ 승인된 스타트업 진흥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0 노르웨이

가. 2024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10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함²²⁹⁾

 -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227) Parlament Österreich, “Start-Up-Förderungsgesetz (2321 d.B.),” <https://www.parlament.gv.at/gegenstand/XXVII/1/2321?selectedStage=105>, 검색일자: 2023. 12. 27.
 228) BMF, “Start-Up-Förderungsgesetz,” 2023. 5. 26., <https://www.bmf.gv.at/rechtsnews/steuern-rechtsnews/neue-gesetze/2023/Start-Up-F%C3%B6rd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1. 16.
 229) News IBFD, “Budget Bill for 2024 Promises Moderate Modifications With Redistributive Effect,”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3, 검색일자: 2023. 10. 24.

안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조세 전반에 걸친 개정안의 내용을 담음

- ▶ (직접세)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한 고액기여금(High-Price Contribution)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부유세에 관한 변화는 없을 예정임²³⁰⁾
 - ▶ 고액기여금 형태의 한시적 세금은 2022년과 2023년 노르웨이의 전력 부문 수입이 급증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나,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함
 - ▶ 종업원 1인당 총급여가 75만NOK²³¹⁾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일시적으로 5%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함
 - 현행법상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한도는 50만NOK²³²⁾이며, 예산안에 따라 부과대상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되면, 75만NOK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상된 요율이 적용될 예정임
 - 2024년에는 고용주 추가 국민보험료 부담금 한도를 85만NOK²³³⁾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차등 고용주 국민보험료 부담금 제도에 따른 비과세 수당을 기존 50만NOK²³⁴⁾에서 85만NOK²³⁵⁾로 35만NOK²³⁶⁾ 인상함
 - ▶ 부유세 기준금액 및 한도는 명목상으로 변경되지 않음
 - ▶ 오슬로, 베르겐, 트론헤임, 스타방에르 등 주요 도시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 평가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 할인율을 1%p 인상함
 - 농촌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계산 모델의 지역적 차이를 완화하고자 함
 - ▶ 비과세 관행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명문화함
 - 명문화된 사례는 UCITS 펀드(국가 간 교차판매 펀드)인 투자 펀드의 국경 간 합병, 하

230) News IBFD, "Budget Bill for 2024 Proposes to Abolish High-Price Contribution for Wind Power, Hydropower; No Change to Wealth Tax,"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2, 검색일자: 2023. 10. 23.

231)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60만원임

232) 2023년 1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69만원임

23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1만원임

23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07만원임

23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2만원임

23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75만원임

나 이상의 저축은행 재단이 설립된 저축은행의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청구의 전환임

-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재무부에 비과세를 신청해야 했으나, 비과세 사례가 명문화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의 조세 불확실성이 제거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

- ▶ 순록 사육에 사용되는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신문 및 전자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로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전자신문을 포함하도록 제안됨
- ▶ 수소 기반 전기자동차의 판매 및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함
- ▶ 사전 등록된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리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 (소비세) CO2 세금 등 소비세에 관한 사항이 개정될 예정임

- ▶ 온실산업용 천연가스 및 LPG에 대한 CO2 세금을 일반수준의 8%에서 15%로 7%p 인상함
- ▶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운송에 대한 CO2 조세감면이 도입됨
- ▶ 노르웨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ETS 대상 광유 사용에 대한 CO2 조세감면액을 인상함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세 관련 조세 혜택을 폐지함
- ▶ 해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휘발유에 대한 도로사용세 면제를 폐지함
- ▶ 노르웨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전기세 감면율이 인상됨

나. 2024년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자원임대세 법안 검토

[조세동향 23-12호]

- ▾ 노르웨이 재정경제상임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자원임대세와 관련하여 정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함²³⁷⁾

- ▾ 권고안에는 정부의 조정안과 비교하여 육상풍력발전소에 유리한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 실효세율은 이전에 계획된 조정안인 35%보다 10%p 낮아진 25%가 될 것임
 - ▶ 과세상 지위가 양(+)이 아닌 신규 발전소는 과세연도 다음해에 음(-)의 자원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가치를 환급받게 될 예정임
 - 납부할 때까지 음(-)의 자원임대소득은 이자 보전과 함께 이월됨
 - 이러한 변경사항은 EEA 협정의 일반적인 국가 원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ESA의 승인이 필요함
 - 이는 조정된 법안에서 음(-)의 자원임대세에 대해 이자 보전을 통한 이월만 허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임
 - ▶ 기존 발전소의 운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투입 가치(input value)에 40%의 가산율이 적용됨
 - 가산율이 적용된 총 감가상각 기준금액은 과거 투자 비용인 취득원가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입 가치는 5년에 걸쳐 정액으로 상각됨
 - 이는 과거 투자가 체감 잔액 기준(일반적으로 4%의 비율)으로 감가상각되도록 하는 조정안과는 대조적임

- ▾ 국회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논의하고 2023년 12월 19일에 표결에 부칠 예정임

11 벨기에

가. 세법 일부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10월 11일, 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병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 입법, 조세피난처의 거주자 등에 대한 지급액 보고

237) IBFD, "Parliament to Review Resource Rent Tax on Onshore Wind Power Bill for 2024," 2023. 12.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8_no_1.html, 검색일자: 2023. 12. 19.

의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 도입²³⁸⁾

- ▶ EU 지침(2019/2121)에 따라²³⁹⁾ 합병 및 분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합병 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관련 모든 회사의 모든 주식 및 의결권을 각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는 경우 신주에 대해 과세 면제함
 - 규정은 EU 지침 실행에 따라 2023년 7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됨
- ▶ 납세자는 조세피난처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급액이 10만유로²⁴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액을 보고해야 함
- ▶ 비영리단체, 민간재단 및 국제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²⁴¹⁾에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면제 대상금액을 기존 2만 5천유로²⁴²⁾에서 5만유로²⁴³⁾로 인상함
 -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함

〈표 2-11-3〉 벨기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

(단위: 유로, %)

자산가치	세율
50,000 이하	0
50,001~250,000	0.15
250,001~500,000	0.30
500,000 이상	0.45

자료: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Update Merger Definitions, Expand Reporting Obligations for Payments to Tax Havens, Make Compensatory Inheritance Tax Progressive," 2023.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25_b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238) Dekamer,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fiscales diverses," <https://www.dekamer.be/FLWB/PDF/55/3607/55K3607001.pdf>, 검색일자: 2023. 11. 21.;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Update Merger Definitions, Expand Reporting Obligations for Payments to Tax Havens, Make Compensatory Inheritance Tax Progressive," 2023.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25_b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239) EUR-Lex, "DIRECTIVE (EU) 2019/21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s://eur-lex.europa.eu/eli/dir/2019/2121/oj>, 검색일자: 2023. 11. 21.

240)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181만원임

241) 법인은 그 성질상 상속세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로 유산세(Patrimony Tax)라고도 함

242)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45만원임

243)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90만원임

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의회 통과

[조세동향 23-12호]

- ▶ 벨기에 의회는 2023년 12월 14일,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2022/2523)”을 이행하기 위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
 - ▶ 법안은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의 기반이 되는 OECD 모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GloBE 규칙의 내용을 기초로 함²⁴⁴⁾
 - ▶ 특히 벨기에 필라2 법안은 기존의 R&D 세액공제 제도를 수정하여 GloBE 규칙의 “적격환급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²⁴⁵⁾
 - R&D 세액공제의 환급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
 - 자동 상쇄 체계 대신 R&D 세액공제를 상쇄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도입하여 외국 조세제도와외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함

12 룩셈부르크

가. 필라2 이행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룩셈부르크는 2023년 7월 28일, 필라2와 관련한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2022/2523)을 이행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²⁴⁶⁾
 - ▶ 법안 초안은 대체로 EU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소득산입규칙(IncomeInclusion

244) IBFD, “Parliament Adopts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Bill,” 2023. 12.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5_be_1.html, 검색일자: 2023. 12. 21.

245) EY, “Belgian parliament approves draft bill on Pillar Two,” 2023. 12. 19., https://www.ey.com/en_gl/tax-alerts/belgian-parliament-approves-draft-bill-on-pillar-two, 검색일자: 2023. 12. 21.

246) Ministère des Finances, “Projet de loi pour la mise en oeuvre du Pilier Deux de la réforme fiscale internationale de l'OC DE dans l'UE approuvé par le Conseil de Gouvernement,” https://mfin.gouvernement.lu/fr/actualites.gouvernement%2Bfr%2Bactualites%2Btoutes_actualites%2Bcommuniqués%2B2023%2B07-juillet%2B28-backes-pilier-deux-ocde.html, 검색일자: 2023. 9. 7.

Rule, 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을 도입함

- ▶ 적격 소재국 추가세(qualifying domestic top-up tax) 및 경과 세이프하버(transitional safe harbour)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 그룹이 초과이익에 대하여 부담세액을 최저한세율로 증가시키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를 부담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경과 세이프하버는 경과기간²⁴⁷⁾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에 기초하여 최소기준(de minimis test),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simplified tax rate test), 정상이익 기준(routine profits test)을 충족하면 해당 회계연도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함²⁴⁸⁾
-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15일, EU 내 다국적기업 그룹과 대규모 내국 그룹에 대하여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지침에 합의하였음
 - ▶ 지침은 2023년 말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할 것을 정하고 있음
 - ▶ 지침은 IIR 및 UTPR을 도입하고 각 회원국에 적격 소재국 추가세에 대한 도입 선택권을 부여함²⁴⁹⁾

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조세동향 23-11호]

- ▣ 룩셈부르크는 2023년 11월 3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함²⁵⁰⁾

247) 경과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개시된 회계연도로, 2028년 6월 30일 이후의 회계연도는 제외함

248) 경과 세이프하버는 2022년 12월 OECD가 발간한 세이프하버 관련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249) European Council, "International taxation: Council reaches agreement on a minimum level of taxation for largest corporat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2/international-taxation-council-reaches-agreement-on-a-minimum-level-of-taxation-for-largest-corporations/>, 검색일자: 2023. 8. 24.

250)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Projet de loi modifiant la loi modifiée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3/041/286412.pdf>, 검색일자: 2023. 11. 21.; IBFD, "Luxembourg Proposes to Extend Reverse Charge Mechanism," 2023.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6_lu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 ▶ 매입자는 일정한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허가된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개조되고 특정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장치로서 다른 용도 여부를 불문하는 휴대전화의 공급
 - 최종 소비 상품에 결합되기 전 상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중앙처리 장치와 같은 집적회로장치의 공급
 - 게임 콘솔, 태블릿 PC 및 노트북의 공급
 -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에 대한 특별제도 또는 금(gold) 투자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²⁵¹⁾ 귀금속을 포함한 원료 및 반제품 금속의 공급
-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금액이 1만유로²⁵²⁾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의회 통과

[조세동향 23-12호]

- ▣ 룩셈부르크 의회는 2023년 12월 19일, 투자세액공제(bonification d'impôt pour investissement)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²⁵³⁾
 - ▶ 중요한 기술 및 혁신 절차, 조직 혁신 비용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8%에서 12%로 인상함²⁵⁴⁾
 - ▶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디지털전환 및 생태·에너지전환 프로젝트 투자로 확대하였으며 공제율은 18%임
 -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구현 및 응용을 통해 절차의 혁신 또는 조직의 혁신을 실현하는 것임

251)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에 대한 특별제도 금 투자제도는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LOI modifiée DU 12 FE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Art. 56ter~56ter-3 및 56quater)

252)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7만원임

253) Chambre des Députés, "PROJET DE LOI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1/023/282239.pdf>, 검색일자: 2023. 12. 21.; IBFD, "Parliament Adopts Draft Bill to Increase Investment Tax Credit," 2023. 12.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0_lu_1.html, 검색일자: 2023. 12. 21.

254) IBFD, "Luxembourg Announces Increase in Investment Tax Credit," 2023. 7.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7-13_lu_1%23tns_2023-07-13_lu_1, 검색일자: 2023. 12. 21.

- 생태·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생산·소비 또는 자원 사용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모든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물질적으로 중요해야 함
- ▶ 투자세액공제는 룩셈부르크 및 EU 회원국 내에서 이뤄진 투자에 대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²⁵⁵⁾
- 1년 동안의 취득원가 또는 투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액공제액은 한 과세연도 내에 최대 25만유로²⁵⁶⁾로 제한됨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비용은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자산, 자동차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임

13 그리스

가.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

[조세동향 23-08호]

- ▶ 그리스는 2023년 8월 1일, 그리스 국채에서 파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음^{257), 258)}
- ▶ 그리스 소득세법(법률 4172/2013, A167) 제47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그리스 국채 및 이자부 약속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가 법인에도 적용되게 되었음
 - 현재 국채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채 이자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리스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나 비거주 법

255) IBFD, "Government Submits Draft Bill on Increased Investment Tax Credit, Eligible Expenditure to Parliament," 2023.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7-14_lu_1%23tns_2023-07-14_lu_1, 검색일자: 2023. 12. 21.

256) 2024년 1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890만원임

257) IBFD, "Greece Extends Interest Exemption for Greek Government Bonds, Treasury Bills to Companies," 2023. 8.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1_gr_2.html, 검색일자: 2023. 8. 24.

258) 그리스 재무부, " ", 2023. 7. 29., http://www.opengov.gr/minfin/wp-content/uploads/downloads/2023/07/sxedio_nomou.pdf, 검색일자: 2023. 8. 24.

인이 수취한 그리스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면제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었음

나. 2024년도 예산안 승인

[조세동향 23-12호]

- ▣ 그리스 정부는 2023년 10월 2일 의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된 예산 초안을 2023년 12월 17일자로 승인함²⁵⁹⁾
 - ▶ 증권거래세 감면 등 세법 개정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연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된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연간 납부 의무가 있는 통합 부동산 재산세(Unified property tax for houses) 10% 감면
 - 자본 채권에 대한 세금(Tax on capital bonds) 폐지
 - 주식 양도 시 양도 가액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Stock exchange transaction tax) 세율을 50% 감면하여 0.20%에서 0.10%로 인하
 -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본 축적 거래에 대한 자본 축적 세율(the capital accumulation tax rate)을 0.5%에서 0.2%로 인하
- ▣ 3개 이상 임대 목적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장의 단기 부동산 임대에 대한 13% 숙박 관련 부가가치세(Accommodation Tax) 도입
 - ▶ 개인의 단기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에도 숙박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3개 이상의 임대 목적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은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 또한, '단기 임대'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소득 신고 통제가 강화될 예정임

259) IBFD, "Greece Approves 2024 Draft Budget," 2023.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9_gr_1.html, 검색일자: 2023. 12. 27.

14 네덜란드

가. 2024년 부동산 주식 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제안 수정

[조세동향 23-07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6월 23일, 부동산 주식 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발표함²⁶⁰⁾

 - ▶ 개정안은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를 통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함
 - 현행법상 신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 시에는 소유권 이전세(property transfer tax)가 부과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기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10.4%의 소유권 이전세가 부과되며, 신규 부동산을 직접 인도하는 대신 지분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또는 소유권 이전세가 부과되지 않음
 - ▶ 법안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최대 소유권 이전세는 4%로, 총 세금 부담은 신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 이 법안은 취득 후 2년 동안 90% 이상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활동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나. 국제 조세 판결에 관한 법령 개정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네덜란드는 2023년 7월 6일, 국제적 성격의 판결에 대한 사전협의 회의(vooroverleg)를

260) IBFD, "Netherlands Amends Proposal to Abolish Tax-Exempt Treatment of Real Estate Share Transactions in 2024," 2023. 6.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6_nl_1.html, 검색 일자: 2023. 7. 18.

다루는 2019년 법령을 수정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함²⁶¹⁾

- ▶ 사전협의를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특정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관과 협의를 갖는 과정으로, 세무조사관은 제시된 사건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취함

▣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사전협의 적용 가능 요건, 사전협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정상가격에 관한 내용임

- ▶ (사전협의 적용 가능 요건) 사전협의 회의는 ① 단기간이지만 현실적인 기간 내에 조세회피 협정(tax-avoiding arrangement)이 완전히 해지되거나, ② 과세당국이 조세회피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세원잠식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조세회피 협정(tax-avoiding arrangement) 해지로 인해 네덜란드에서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성이 발생하는 다른 곳에서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① 또는 ②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지정된 저세율국 또는 조세 비협조국에 위치한 관계 회사와 세금 목적으로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① 또는 ②의 상황이 발생한 후, 국제적 성격의 판결 형태로 사전에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이가 가능한 상황일 것
- ▶ (사전협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저세율국 또는 조세 비협조국에 설립된 법인과 거래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특허박스(innovation box) 및 톤세 제도와 관련된 제3자 거래 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체결을 위한 제3자 거래의 세금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정상가격 관련) 아래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관할국이 동의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AP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이전가격 조정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 협정에 “중요 가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네덜란드 납세자가 서로 다른 주에 있는 관련 법인과 입출금(관련) 거래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상호합의에 따라 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네덜란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더 이상 법인세법 8b조에 따라 “정상”에 있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네덜란드 이해관계자가 제한된 이익이 할당되는 “최소 복합 법인(least complex entity)”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261) IBFD, “Netherlands Publishes Draft Decree to Modify Decree on International Tax Rulings,” 2023. 7.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10_nl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이행 법안 제정

[조세동향 23-08호]

- ▾ 네덜란드는 2023년 8월 14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EU)을 개정하는 2020년 2월 18일의 유럽연합 지침(Council Directive 2020/285/EU)을 이행하는 법안을 제정함²⁶²⁾

 - ▶ 해당 법안은 소규모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중요한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기타 일반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 네덜란드에 설립되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소규모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매출액 기준을 기존 연간 20,000유로²⁶³⁾에서 25,000유로²⁶⁴⁾로 완화하였으며, 면제신청은 2024년 12월 3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 ▶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도 유럽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²⁶⁵⁾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면제 적용불가 사항이 존재함
 - 판매자나 구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나 고객의 계정을 위해 구매하고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새로운 운송 수단 및 과세대상자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 네덜란드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은 EU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면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년의 최소 면제 적용기간을 폐지함
 - ▶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거나 기존 면제 혜택을 종료하려는 기업은 늦어도 2024년 12월 3일까지 세무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262) IBFD, "Netherlands Enacts Bill Implementing Directive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23. 8.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14_nl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263)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88만원임

264)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11만원임

265)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366만원임

라. 세금부담 없는 전환에 관한 법령 업데이트

[조세동향 23-08호]

네덜란드는 2023년 7월 17일, 2023년 7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공개 유한회사(Naamloze Vennootschap, NV) 또는 비공개 유한회사(Besloten Vennootschap, BV)의 소득세 부과 단체(income tax entity)로의 '세금부담 없는 전환(geruisloze terugkeer)'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을 발표함²⁶⁶⁾

- ▶ 업데이트된 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은 손실계수의 변경이며, 이전 계속 주주가 사용할 수 있는 손실계수를 기존 15/42에서 19/44로 변경함
- ▶ 네덜란드 법인세법(Wet op de vennootschapsbelasting 1969, CITA) 제14c조에 따라 BV 또는 NV의 해산 시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이연이 허용되는데, 세금부담 없는 전환으로 인하여 자연인만을 주주로 하는 단체에 대해 적용되며, 전환 시 반영되어야 하는 손실계수를 세율 변화에 따라 조정한 것임
 - NV 또는 BV의 세금부담 없는 전환이란 표준 조건에 따라 계속 주주가 비법인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뜻함
 - 손실계수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회사가 소득세 부과 단체로 전환될 때 법인세법상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득세법상 손실의 일부로 결정할 때 곱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함
 - 손실계수의 변경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기존 15%에서 19%로 인상되고, 개인 소득세 공제율이 40%에서 36.92%로 인하된 것을 반영한 것임

마.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3-09호]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9월 20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²⁶⁷⁾

- ▶ 펀드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과세 조항 변경, 배당금 삭감 규칙 강화, Box 3 소득

266) IBFD, "Netherlands Updates Decree on Reconversion Without Tax Consequences," 2023. 7.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18_nl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267) News IBFD, "Higher 'Box 3' Taxation, Taxation of Real Estate and Funds Headline 2024 Tax Plan," 2022. 9.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9_nl_1.html, 검색일자: 2023. 9. 20.

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익면제 공제율 인하, 배당금 삭감 규칙 강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칙 삭제 등이 있음
 - ▶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함²⁶⁸⁾
 - ▶ 중소기업(SME) 이익면제(MKB-winstvrijstelling)의 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2.7%로 1.3%p 인하함²⁶⁹⁾
 - ▶ 배당금 관련 등록일자 설정을 의무화하고 세무조사관의 입증 책임을 개선하는 등 배당금 삭감 규칙(Dividend stripping rules)을 강화함
 - 배당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삭감 및 분할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
 - ▶ 뮤추얼 펀드(fondsen voor gemene rekening)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2025년부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모든 자산은 해당 날짜 이전에 공정 시장가치로 참가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됨
 - ▶ 은행과 보험회사의 최소자본 요건이 기존 9%에서 10.6%로 1.6%p 증가하여, 부채자본이 자산 총계의 89.4%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됨
 - ▶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칙을 삭제하는 등 EBITDA 기준 이자공제 한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EBITDA의 2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공제가 불가능하게 됨
 - 기존의 임계값 기준으로 인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 법인의 회사분할 유인을 막고자 함
 - ▶ 뮤추얼 펀드(fondsen voor gemene rekening), 재정투자기관(iscal beleggingsinstellingen) 및 면세 투자기관(vrijgestelde beleggingsinstellingen)에 관한 조항이 개정될 예정임
 - ▶ 네덜란드 법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외국 법인의 납세자 지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역혼성단체를 제외한 모든 합자회사(Commanditaire Venootschap, CV)는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될 예정임²⁷⁰⁾
 - 현재 개방형 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268) 2023년 기준 최하위 법인세율은 19%, 최상위 법인세율은 25.8%, 최하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은 20만유로임

269) 중소기업 이익 면제는 과세대상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270) 현재 개방형 합자회사(open CVs)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 ▣ (개인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Box 1 세율 인상 및 Box 3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있음

 - ▶ Box 1²⁷¹⁾에 적용되는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6.93%에서 36.97%로 0.04%p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을 기존 73,031유로²⁷²⁾에서 75,624유로²⁷³⁾로 인상함
 - ▶ 최대 고용공제액을 기존 5,052유로²⁷⁴⁾에서 5,553²⁷⁵⁾유로로 501유로 인상함
 - ▶ 면세통근 수당을 기존 km당 0.21유로²⁷⁶⁾에서 0.23유로²⁷⁷⁾로 0.02유로 인상함
 - ▶ 현재 32%인 Box 3²⁷⁸⁾ 소득세율을 34%로 2%p 인상하고, 면세 대상 소득기준 (Belastingvrije vermogen)은 5만 7,000유로²⁷⁹⁾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 사업승계 제도를 단순화하여 보다 실용적이며 잠재적인 남용 가능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 ▣ (기타 조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탄소세 관련 조항 개정 등이 있음

 - ▶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임
 - ▶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해당 부문에 혜택을 주는 에너지 세율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 ▶ 2024년부터 산업 및 전력 부문의 최소 탄소 가격이 인상됨

271) Box 1 소득은 근로자 임금, 자영업자 소득, 사회보장 수입, 연금, 보유자 거주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의제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272)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76만원임

273)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45만원임

274)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8만원임

275)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9만원임

276)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8원임

277)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원임

278)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소유 자산(Vermogen)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함

279)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99만원임

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10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16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을 이행하는 법안의 첫 번째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⁸⁰⁾

 - ▶ EU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적격 내국 추가세 적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QDMTT 적용을 선택하였으며 실질기반 소득제의 금액 결정 등 일반 사항은 EU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
 -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적격 내국 추가세(QDMTT)에 대한 적격 세이프하버 규정 및 과세미달 이익에 대한 추가세액에 대한 임시 세이프하버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실질기반 소득제의 금액 결정 시 적용되는 비율을 종업원 인건비의 경우 9.8%, 유형자산의 경우 7.8%로 결정함
 - 행사기간까지 미행사 옵션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된 이전 연도의 비용은 옵션이 만료되는 연도의 그룹 기업의 적격 이익 또는 손실에 추가됨
 - 과세이연을 대체 손실보상이연으로 인정하는 일반 행정조치가 도입됨

사.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안 개정

[조세동향 23-10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16일, 1968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외에 관한 법령(Besluit uitsluiting aftrek omzetbelasting 1968) 개정안을 발표함²⁸¹⁾

 - ▶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상 혜택, 업무상 선물(relatiegeschenken) 또는 기타 선물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더 이상 부가 혜택 및 업무상 선물에 적용되는 227유로²⁸²⁾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280) News IBF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Submits Amendment to Bill Implementing Minimum Taxation Directive to Parliament,"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4.html, 검색일자: 2023. 10. 23.

281) News IBFD, "Netherlands Amends Decree on Non-Deductible VAT,"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3.html, 검색일자: 2023. 10. 23.

28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 과세대상자는 종업원에게 주택, 스포츠, 휴식 또는 개인 교통수단 제공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종업원이 과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종업원에 대한 혜택에 해당함
- ▶ 과세대상자는 총혜택이 종업원 1인당 연간 227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혜택에 부과된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 혜택이 기준 금액보다 더 큰 경우의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혜택에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함

아. 2024년 세금 계획안 승인

[조세동향 23-12호]

- ▾ 네덜란드 국회 상원은 2023년 12월 19일, 재무부 장관이 국회 하원에 제출한 2024년 세금 계획안을 승인함²⁸³⁾
 - ▶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고용소득공제액, Box3 소득²⁸⁴⁾ 계산에 사용되는 잠정 간주 수익률, 자가 거주 주택의 귀속 소득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²⁸⁵⁾
- ▾ (고용소득공제) 2024년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고용소득공제(arbeidskorting)를 결정함

〈표 2-11-4〉 네덜란드 고용소득공제액

고용소득	소득공제액
~ 11,490유로 이하	근로소득의 8.425%(최대 968유로)
11,490유로 초과~24,820유로 이하	968 + 11,490유로 초과 근로소득의 31.433%(최대 5,158유로)
24,820유로 초과~39,957유로 이하	5,158 + 24,820유로 초과 근로소득의 2.471%(최대 5,532유로)
39,957유로 초과	5,532-39,957유로 초과 근로소득의 6.510%

자료: News IBFD, "Government Publishes 2024 Employment Credit, Deemed Box 3 Returns," 2023.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2_nl_1.html, 검색일자: 2023. 12. 19.

283) IBFD, "Upp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s 2024 Tax Plan: Higher Taxation of Box 3, Amendments to Tax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Funds, Restriction of Expat Regime," 2023.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9_nl_1.html, 검색일자: 2023. 12. 20.

284)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함

285) News IBFD, "Government Publishes 2024 Employment Credit, Deemed Box 3 Returns," 2023.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2_nl_1.html, 검색일자: 2023. 12. 19.

- ▶ (Box3 - 간주 수익률) 2024년에 세 가지 자산 범주(저축, 부채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간주 수익률은 다음과 같음

〈표 2-11-5〉 네덜란드 Box 3 소득 간주 수익률

(단위: %)

자산	간주 수익률
저축	1.03
부채	2.47
기타 자산	6.04

자료: News IBFD, "Government Publishes 2024 Employment Credit, Deemed Box 3 Returns," 2023.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2_nl_1.html, 검색일자: 2023. 12. 19.

- ▶ 발표된 수익률은 2024년에 대한 잠정 평가를 발표할 때 적용되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최종 2024년 간주 수익률은 2025년 초에 확정될 예정임
- ▣ (자가 거주 주택의 귀속 소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귀속 소득은 WOZ value²⁸⁶⁾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2024년의 경우 이 비율은 최대 1,200,000유로²⁸⁷⁾(2023년과 동일)의 WOZ 가치를 가진 주택에 대해 0.35%임

15 덴마크

가. 필라2 규정 도입에 대한 공공협의 개시

[조세동향 23-07호]

-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6월 26일, 'Pillar Two Directive(Minimum Taxation Directive(2022/2523))'를 덴마크 법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시작함²⁸⁸⁾

286) WOZ value는 부동산가치평가법(Wet Waardering Onroerende Zaken, WOZ)에 따라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의미함

28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억 569만원임

288) IBFD, "Denmark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Pillar Two," 2023. 6. 27., <https://research.ibfd.org>

- ▶ 필라2 지침은 유럽연합 내 다국적기업 그룹이 모든 관할권에서 최소한의 과세수준 (15%의 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내법으로의 전환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임
- ▶ 덴마크 법안 초안은 지침 및 GloBE 모델 규칙과 일치하며, ‘적격 내국 최저한세’ 형태의 내국 추가세 도입과 ‘소득산업 규칙(IIR)’ 및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을 규정하고 있음
- ▶ 이 법안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 (약 56억덴마크크로네)²⁸⁹⁾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원인 구성기업에 적용됨
- ▣ 법안 초안에 따르면 덴마크의 최종 모회사는 소속 법인 그룹을 대신하여 정보를 제출하고 ‘GloBE 정보신고서(GIR)’로 알려진 확대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법안이 시행되면 각 회사는 추가적인 관리 책임이 부과됨
- ▣ 세이프하버 조항과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아직 진행 중인 OECD의 작업을 언급하며, 덴마크는 이 규칙이 확정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 법안 초안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됨

나. 사기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조세동향 23-07호]

- ▣ 덴마크는 2023년 6월 13일,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특정 결제정보 보고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VAT 사기(fraud)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EU 규칙을 구현하는 개정안을 공표함²⁹⁰⁾
 - ▶ 새로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특정 등록 및 보고의무를 도입함

²⁸⁹⁾ [#/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7_dk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²⁸⁹⁾ 2023년 8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43억원임

²⁹⁰⁾ IBFD, “Denmark Changes VAT Legislation to Combat Fraud,” 2023. 6.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8_dk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 ▶ 법안에 의하면 덴마크에서 설립되었거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특정 국경 간 지불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그 정보를 덴마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 이 법안은 또한, 회전목마형 사기거래²⁹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부과 방식(reverse charge)을 도입함
 - ▶ 부가가치세 정산 의무가 국내 서비스 구매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통신 서비스 판매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 (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 공제 및 유보 규칙(set-aside rule) 조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 모든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는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예정 부분 공제율의 금액과 공제율을 계산한 회계연도를 명시하여야 함
- ▾ (통지 시스템 관련) 책임 규정이 개정되고 세금 통지 시스템이 도입됨
 - ▶ 통지 시스템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재화를 선의로 양도, 취득, 전용 또는 사용한 회사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 이러한 통지는 회사가 향후 거래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품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도록 거래 또는 관련 다른 회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하도록 안내함

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조세동향 23-10호]

- ▾ 덴마크 의회는 2023년 10월 10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률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²⁹²⁾

291)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는 폭탄업체(missing traderr)가 개입하여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과세거래로 전환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유형의 거래이다.

292) News IBFD, "Danish Parliament Completes First Reading of Pillar Two Legislative Proposal," 2023. 10. 12.,

- ▶ 법안은 지침 및 OECD 모델 규정을 준수하여 소득산입규칙(IIR), 비용공제부인규칙(UTPR), 적격 내국 추가세(QDMTT)를 도입함
- ▶ 이러한 조항을 통해 외국 그룹의 덴마크 그룹 기업은 실효세율이 15%가 적용되지 않는 덴마크 내 수익에 대해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세액을 부과받게 됨
- ▶ 덴마크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2억 5,500만유로²⁹³⁾(19억덴마크크로네)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덴마크 의회는 연말까지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됨

라. 개인소득세 개혁 계획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덴마크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개혁 계획을 발표함²⁹⁴⁾
 -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덴마크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개혁을 통해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금 부담을 67억 5천만DKK²⁹⁵⁾까지 낮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 조치는 현재 일하고 있는 330만명의 덴마크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이번 개혁은 일반 고용수당 공제, 추가 고용수당 공제, 소득구간의 조정 등 총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 ▶ 일반 고용수당 공제율을 기존 10.65%에서 12.75%로 2.1%p 인상함
 - 이에 따라, 최대 공제액이 4만 4,800DKK²⁹⁶⁾에서 5만 6,200DKK²⁹⁷⁾로 1만 1,400DKK²⁹⁸⁾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dk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29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51억원임

294) News IBFD, "Danish Government Presents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2023. 1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9_dk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29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2,820억원임

296)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1만원임

29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68만원임

298)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7만원임

증가할 것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5,700DKK,²⁹⁹⁾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900DKK³⁰⁰⁾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한부모의 추가 고용수당 공제율을 기존 6.25%에서 11.5%로 5.25%p 인상함
 - 이로 인하여, 최대 공제액이 2만 4,400DKK³⁰¹⁾에서 4만 4,900DKK³⁰²⁾로 2만 500DKK³⁰³⁾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최대 5,100DKK³⁰⁴⁾의 추가 세금 혜택을 의미함
 - ▶ 618,400³⁰⁵⁾~750,000³⁰⁶⁾ DKK 구간의 소득에 대해 7.5%의 새로운 중간 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가구 내 한 사람의 소득이 75만DKK 이상인 경우 최대 9,100DKK,³⁰⁷⁾ 가구 내 두 소득자의 소득이 모두 75만DKK 이상인 경우 최대 1만 8,200DKK³⁰⁸⁾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최대 세율을 적용받는 250만DKK³⁰⁹⁾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약 9,000명의 덴마크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덴마크 정부는 2025년부터 해당 조치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임
- ▶ 이러한 계획의 직접적인 효과는 개인소득세가 2025년에 50억DKK 감소³¹⁰⁾하고, 2026년부터는 100억DKK³¹¹⁾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계획으로 5,15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299)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8만원임
 300)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만원임
 301)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4만원임
 302)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3만원임
 303)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9만원임
 304)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7만원임
 30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743만원임
 306)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42만원임
 30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3만원임
 308)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6만원임
 309)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7,465만원임
 310)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496억원임
 311)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993억원임

마. 2025년부터 승객세 도입 계획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11월 9일, 2025년 1월 1일부터 항공편에 대한 새로운 승객세 (passagerafgift)를 도입하여 국가의 항공 부문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함³¹²⁾

 - ▶ 새로 도입되는 승객세액은 비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유럽 내 여행의 경우 60DKK,³¹³⁾ 중거리 항공편(예: 뉴욕행)의 경우 240DKK,³¹⁴⁾ 장거리 항공편(예: 방콕행)의 경우 390DKK³¹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정부는 승객세로 인해 2025년에 9억DKK³¹⁶⁾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12억DKK³¹⁷⁾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7년에 세금의 영향에 대한 중간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승객세의 최종 설계가 달라질 예정임
 - ▶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승객세 수입 중 10억DKK³¹⁸⁾가 항공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정될 예정임

16 핀란드

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10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3년 10월 9일, 2024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함³¹⁹⁾

312) News IBFD, "Danish Government to Introduce Passenger Tax as of 2025," 2023. 1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9_dk_2.html, 검색일자: 2023. 11. 24.

313)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423원임

314)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5,693원임

31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252원임

316)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13억 5,100만원임

31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84억 6,800만원임

318)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03억 9,000만원임

- ▶ 핀란드 재무부는 2023년 8월 28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음
- ▾ 세법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 인상안의 세부사항 등을 발표함
 -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기준액을 2.8~3% 인상하고,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신설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 세율이 추가 적용됨

나. 양도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10호]

- ▾ 핀란드 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양도세 감면 법안(HE 64/2023)을 의회에 제출함³²⁰⁾
 - ▶ 법안 개정을 통해 양도세가 이사 성향(muuttoalttiutta)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세율 차이와 주택 형태별 세제 차이로 인한 비중립성을 줄이고자 함³²¹⁾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비과세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2023년 10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인화된 세율이 소급 적용됨
- ▾ 양도세율 변경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비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음
 - ▶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1%p 인하함
 - ▶ 부동산 증권 양도세율을 기존 2%에서 1.5%로 0.5%p 인하함
 - 핀란드 주택 및 부동산 회사 또는 실제로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회사(예: 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함

319)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2024 Budget to Parliament,"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fi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320) News IBFD, "Government Proposes Reducing Transfer Tax, Abolishing Exemption for First-Time Home Buyers,"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fi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321) 핀란드 의회 보고서, "HE 64/2023," <https://finlex.fi/esitykset/he/2023/20230064#idm46494958815904>, 검색일자: 2023. 10. 23.

- ▶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이외의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1.6%에서 1.5%로 0.1%p 인하함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표 2-11-6〉 핀란드 2024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종류	2023년	2024년	변화
1	과세소득	0~19,900	0~20,500	3%
	세율	12.64	12.64%	-
2	소득기준	19,900~29,700	20,500~30,500	2.7%
	세율	19	19%	-
3	소득기준	29,700~49,000	20,500~50,400	2.86%
	세율	30.25	30.25%	-
4	소득기준	49,000~85,800	50,400~88,200	2.8%
	세율	34	34	-
5	소득기준	85,800 초과	88,200~150,000	2.8%
	세율	44	42	42%구간 신설
6	소득기준	-	150,000 초과	신설
	세율	-	44	-

자료: Finland-Individual Taxation-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3 October 2023) - 1.9.1. Income and capital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3.2.%23gthb_fi_s_1.9., 검색일자: 2023. 11. 21.

- ▶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 최대금액을 기존 2,030유로³²²⁾에서 2,140유로³²³⁾로 110유로³²⁴⁾ 인상함
 - 다만, 순 근로소득이 약 16만 8,400유로³²⁵⁾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노인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에 대한 추가 인상안이 수정되어, 60~64세의 경우 인상안이 폐지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1,200유로³²⁶⁾로 두 배 인상됨
- ▶ 통근비용의 공제 하한액을 기존 700유로³²⁷⁾에서 900유로³²⁸⁾로 200유로³²⁹⁾ 인상

32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1만원임

32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6만원임

32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32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4,094만원임

32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2만원임

327)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만원임

328)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9만원임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일본 국세청은 6월 21일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국내 지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³²⁹⁾
 - ▶ 해당 지침은 ① 일본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비거주자에 의한 판매 및 임대, ② 국내 또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비거주자가 일본 내 사업체에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지급, ③ 특허 및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배당금, 급여 및 기타 보수와 로열티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단, 일본과 비거주자의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고 명시함
- ▾ 해당 지침의 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방에서 법인세가 도입된 것을 이유로 개정됨

329)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원임

330) Bloomberg Tax, "Japan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Income Tax Withholding on Payments to Nonresidents, Foreign Corporations," 2023. 6. 2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1CR6RV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YyZgvcvVzdWx0cy8yNGRhYzM4ZjY5MzQ5OGU3ZGY0N2EwMTU4OThiMTNkNSJdXQ-f5e41b6a65b26858bb10815e5c0a0cda8dcfc2ce&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24dac38f693498e7df47a015898b13d5, 검색일자: 2023. 7. 11.

나.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에 관련한 장관급 규정 확정

[조세동향 23-09호]

- ▾ 일본 재무성은 8월 10일 BEPS Pillar2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강을 발표함^{331), 332)}

 - ▶ 해당 대강은 2023년 3월 28일, 국회에서 승인된 2023년 세제개혁법과 2023년 6월 16일, 내각이 발표한 정부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에 발표된 장관 규정과 관련된 내용임
- ▾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2장 「각 대상 회계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액에 대한 법인세 장」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제60조의 2까지 관련 내용으로 개정됨
- ▾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세율 관할권에 자회사가 있는 일본 모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과세범위, 특정 다국적기업 그룹 등의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함

다.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관련 규정 해석 지침 발행

[조세동향 23-09호]

- ▾ 일본 국세청은 9월 21일 BEPS Pillar2에서 규정하는 국제 최저한세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 지침을 발행함^{333), 334)}

 - ▶ 해당 해석 지침은 2023년 8월 10일 확정된 장관급 규정에 대한 내용임

331) 財務省, 「令和5年度税制改正の大綱(8/10)」, 2023. 8. 10.,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 orm/outline/fy2023/05taikou_08.htm, 검색일자: 2023. 9. 18.

332) IBFD, “Japan Finalizes Ministerial Regulations on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2023. 8.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25_jp_1.html, 검색일자: 2023. 9. 18.

333) IBFD, “Japan Publishes Interpretive Guidance on Global Minimum Tax Laws and Regulations,” 2023.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6_jp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334) 国税庁, 「法人税基本通達の主要改正項目について」,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hojin /kaisei/2309xx/index.htm>, 검색일자: 2023. 10. 23.

- ▾ 해석 지침은 OECD 발간 출판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일본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와 관련 규정의 견해를 설명함
 - ▶ 예컨대 「법인세법」 기본통달 18-1-14는 법령상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동지배회사 등의 판정에 있어 지분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판정은 최종 모회사 재무회계기준에 따라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 지침을 통해 최종 모회사 재무회계기준에서 ‘지분법에 관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 지분법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시로 제시함
 - ▶ 그 밖에 기본통달 18-1-66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목을, 기본통달 18-1-76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외국 회사법에 따라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를 외국 자회사에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함

라. 2024년 세제 개정 대강 발표

[조세동향 23-12호]

- ▾ 2023년 12월 14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4년 세제 개정 대강을 발표함^{335), 336)}
 - ▶ 해당 개정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골자로 하여 각종 투자촉진 및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구성됨
- ▾ 법인과 관련 주요 세제 변화는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의 도입 및 임금 인상 세제 강화, 가상 자산 평가손익 방법에 대한 변경 등이 있음
 - ▶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의 경우 중요물자에 대한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축전지, 반도체,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그린 스틸’, 식물 등에서 제조한 화학 제품인 ‘그린 케미컬’, 재생 항공 연료(SAF) 등 5개 항목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함
 - 공제 한도는 분야에 따라 당기 법인세액의 20~40%를 한도액으로 하며, 공제 한도 초과액은 3~4년간 이월이 가능함
 - ▶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감세 제도의 확충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이라면 임금 인상분의

335) 財務省,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23. 12. 14.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index.html, 검색일자: 2023. 12. 20.

336) 日本經濟新聞, “2024年度与党税制改正大綱 全文と要旨,” 2023. 12. 1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L138ZM0T11C23A2000000/>, 검색일자: 2023. 12. 20.

최대 35%를, 중소기업이라면 45%를 각각 공제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해당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음

- ▶ 법인이 보유한 양도 제한이 붙은 암호자산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어 암호자산 교환 업자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고 있는 경우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즉 개정 전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기말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만이 허용되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지만, 해당 개정으로 인해 원가법을 선택하여 처분손익만을 인식할 수 있게 됨
 - 해당 개정사항에서의 ‘양도 제한이 붙은 암호자산’이란 ①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등 그 양도에 일정한 제한이 붙어 있는 것 또는 ② 상기 ①의 제한이 붙어 있음을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서 공표하게 하기 위해 그 암호자산의 보유자 등이 ①의 제한이 있다는 통지를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세제 변경 사항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 및 부양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저출산 대책 확충의 일환으로 육아 가구의 주택용자 감세³³⁷⁾에 대한 차입 한도액의 상한을 유지함

- ▶ 소득세에 대해서는 가계지원책의 일환으로 2024년 6월에 1인당 소득세 3만엔,³³⁸⁾ 주민세 1만엔³³⁹⁾을 감세하며, 어린이 1명당 소득세 공제는 현행 38만엔³⁴⁰⁾에서 25만엔³⁴¹⁾으로, 주민세 공제는 33만엔³⁴²⁾에서 12만엔³⁴³⁾으로 각각 인하함
 - 해당 소득세 공제 축소 조치는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른 이중 혜택을 완화하기 위함임

▣ 소비세와 관련하여서는 플랫폼 과세를 도입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기통신 이용 의무 등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소비세를 대리 징수함

- ▶ 국외사업자의 소비세를 징수, 납부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 이용 의무의 제공과 관련된 대가의 합계액이 50억엔³⁴⁴⁾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함

337) 주택용자 감세란 주택 용자를 빌려 주택의 신축·취득 또는 증개축 등을 한 경우, 연말의 용자 잔고의 0.7%를 소득세에서 최대 13년간 공제하는 제도임

338)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만 5,988원임

339)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만 2,011원임

340)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9만 7,216원임

341)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0만 800원임

342)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3만 7,056원임

343)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만 4,084원임

- 해당 소비세 개정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으로 예정됨

▣ 해당 세제 개정 대강에는 상기한 개정사항 외에도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승계세제 연장,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 창설 등이 포함됨

2 중국

가. 중국 재무부는 신에너지 승용차에 대한 차량구매세(Vehicle Purchase Tax) 면제 정책 연장을 발표함

[조세동향 23-07호]

- ▣ 중국 재무부는 2023년 6월 19일,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을 발표함³⁴⁵⁾
 - ▶ 신에너지 관련 차량을 구입한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최대 3만위안,³⁴⁶⁾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인 경우 최대 1만 5,000위안³⁴⁷⁾까지 차량 구매세를 면제할 것을 공고함
 - 해당 감면정책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국세청은 ‘자동차 구매세 감면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을 별도로 발표함³⁴⁸⁾
 - ▶ 차량구매세(Vehicle Purchase Tax)는 과세 대상 가격의 10% 비율로 부과되는 일회성 세금으로, 면제 대상 차량은 순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포함함

344) 2024년 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0억 350만원임

345) IBFD, “China Extends Vehicle Purchase Tax Exemption for New-Energy Passenger Vehicles,” 2023. 6.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23_cn_1.html, 검색일자: 2023. 7. 19.

346) 2023년 7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529만 3,800원

347) 2023년 7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64만 6,900원

348)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于延续和优化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减免政策的公告,” 2023. 6. 19.,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306/t20230620_3891500.htm, 검색일자: 2023. 7. 19.

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관련 조세 완화 정책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중국 재무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 완화 및 지원을 위해 소액대출 이자소득 부가가치세(VAT) 및 인지세 면제 정책을 공고함³⁴⁹⁾

 - ▶ 2023년 8월 3일 중국 재무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고액 자금조달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소기업, 영세기업의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간 대출 계약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발표함³⁵⁰⁾
 - 조세정책 적용 대상인 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중소기업 분류 표준 조례’의 대출 실행 당시 총자산 및 종업원 지표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지원 대상이 되는 소액대출이란 단일 대출액 원금을 포함하여 100만원³⁵¹⁾ 미만인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뜻하며 해당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 금융기관은 관련 면세 증명자료 보관 의무가 있으며 면세 조건 충족 소액대출 이자소득은 별도 계산 및 세무신고서 제출 필요

다. 중국 정부는 R&D기관의 국내 장비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함

[조세동향 23-09호]

- ▣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 28일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해외 투자 R&D센터가 구입한 국내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조치의 연장을 공고함³⁵²⁾

 - ▶ 연구개발(R&D) 기관이 국내에서 제조한 장비를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해당 기관이 받은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함

349)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关于支持小微企业融资有关税收政策的公告,” 2023. 8. 13.,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308/t20230802_3899765.htm, 검색일자: 2023. 8. 16

350) IBFD, “China Extends Tax Reliefs for Loans to Small Businesses to 2027,” 2023.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3_cn_2.html, 검색일자: 2023. 8. 16.

351) 2023년 8월 16일 환율 기준 원화 환산 시 1억 8,294만원임

352) 国家税务总局黑龙江省税务局, “财政部 商务部 税务总局关于研发机构采购设备增值税政策的公告,” 2023. 8. 28., http://heilongjiang.chinatax.gov.cn/art/2023/8/28/art_4912_481907.html, 검색일자: 2023. 9. 19.

-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R&D 기관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적격 식별 지침 및 적격 장비 목록이 공고에 첨부되어 있음³⁵³⁾
- 국내 국가연구개발 기관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등 정부가 승인한 국가공정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등을 뜻함
- ▶ 외국인 투자 R&D센터의 경우 승인 요건이 추가되며 투자금액 800만달러³⁵⁴⁾ 초과, 연구 및 기술직원 80명 이상, 기관 설립 이후 구입장비의 본래 가치 2,000만위안³⁵⁵⁾ 이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를 받은 R&D센터의 경우 독립법인 또는 내부부서 또는 지점 등 법인에 속해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의미함
- R&D센터의 환급자격 신청 자료는 외국인투자정보신고 접수증, 기업승인증명서, 설립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이 있음

라. 가격통제형 사회주택 취득·건설 관련 세금 면제·감면 규정 발표

[조세동향 23-10호]

- ▾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28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저·중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건설·취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공고함³⁵⁶⁾
- ▶ 가격통제형 사회주택(Price-Controlled Social Residential Properties, PCSRPs)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세 면제,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 면제, 상업용 주택이나 기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저가 주택 건설 시에도 건축면적 비율 조건에 따른 도시 토지사용세 및 인지세 면제 등 건설업 및 관련자와 구매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³⁵⁷⁾

353) IBFD, “China Extends Full VAT Refund for Domestic Equipment Purchases by R&D Institutions to 31 December 2027,” 2023. 9.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1_cn_2.html, 검색일자: 2023. 9. 19.

354) 2023년 9월 18일 환율 기준 원화 환산 시 106억 2,240만원임

355) 2023년 9월 18일 환율 기준 원화 환산 시 36억 4,880만원임

356) IBFD, “China Grants Reliefs for Affordable Housing,” 2023.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2_cn_3.html, 검색일자: 2023. 10. 16.

357) 国家税务总局北京市税务局,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和城乡建设部关于保障性住房有关税费政策的公告,” 2023. 10. 13., <http://beijing.chinatax.gov.cn/bjswj/c104646/202310/1885a6387e93441c9eae7270de97c4ef.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 ▶ 세금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저가형 주택 프로젝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주택 관리 단위 등의 기타 정보를 각 재정·세무 부서에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함
 - 정해진 규정·서식에 맞는 세금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마. 사업구조 변경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 면제 법안 연장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22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변경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 면제 법안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함³⁵⁸⁾
- ▶ 기업의 이전,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 발표되었으며 열거된 사업구조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면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 개편방법으로는 비법인 기업을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형식을 전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회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합병 및 분할 등 법적 형태가 변경되거나 전체적인 구조조정 상황을 거친 기업의 경우 기업 전환 시 부동산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투자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 해당 면제 법안은 2021년도에 2023년도 말까지 연장된 이후 추가 연장되었으며 부동산 개발 기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58) Guangdong Provincial Tax Service of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财政部 税务总局关于继续实施企业改制重组有关土地增值税政策的公告,” 2023. 9. 22., https://guangdong.chinatax.gov.cn/gdsw/dgsw_gkwj/2023-10/10/content_723ff2583cc8478ab9153ea6ceaa798f.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3 인도

가. 새로운 세금 제도와 관련된 사안 개정

[조세동향 23-07호]

- ▶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CBDT)는 새로운 세금 제도와 관련된 공제 등의 변경이 포함된 개정사안을 발표함³⁵⁹⁾
- ▶ 해당 개정사안에는, 신제도(New Tax Regime)를 선택할 경우 구제도하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각종 감가상각과 관련된 혜택의 배제 및 신제도 또는 구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함
 - ▶ 신제도에서 배제되는 구제도하에서의 감가상각 혜택은 ① 감가상각 대상 자산 블록(Block of assets)에 대한 최대 40%의 추가 감가상각 배제, ② 정률법상 감가상각 계산 시 이월 미상각잔액의 감가상각 대상 가액에서의 배제
 - ▶ 또한 개정 발표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전문 직업의 소득자는 양식 10-IEA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신제도 또는 구제도를 적용하는 옵션을 행사해야 함

나. 온라인 게임회사 과세를 위한 CGST 개정안 제정

[조세동향 23-09호]

- ▶ 인도 정부는 2023년 8월 19일, 온라인 게임회사와 관련한 CGST(중앙 상품 및 서비스세)법의 개정을 관보에 공지함³⁶⁰⁾
 - 해당 개정을 통해 CGST법상 ‘온라인 게임’, ‘온라인 머니 게임’, ‘특정된 실행 가능한 청구권’ 및 ‘가상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도입됨
- ▶ 특히 온라인 머니 게임의 경우 기술 또는 기회(skill and/or chance)에 기초한 게임

359) IBFD, “India Introduces Enabling Provisions Under New Tax Regime for Deductions, Opting In and Out of Regime,” 2023. 6.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30_in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360) IBFD, “Government Enacts GST Amendments for Taxation of Online Gaming Companies,” 2023. 8.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29_in_1.html, 검색일자: 2023. 9. 18.

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됨

- ▶ 게임 사업자/플랫폼을 CGST법상 공급자로 간주하기 위해 ‘공급자’의 정의를 개정함
- ▶ 또한 해당 개정을 통해 인도에서 온라인 머니 게임을 제공하는 역외 게임 사업자는 CGST법에 따라 등록해야 함

다. 석유 제품 관련 횡재세 개정

[조세동향 23-07호]

- ▣ 2023년 9월 15일, 원유 생산에 대한 횡재세를 인상하고 디젤 수출에 대한 세금을 소폭 인하함³⁶¹⁾
 - ▶ 원유 생산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SAED), 즉 횡재세를 톤당 6,700INR³⁶²⁾에서 톤당 1만INR³⁶³⁾로 인상함
 - ▶ 항공 터빈 연료(ATF) 수출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리터당 3.50INR³⁶⁴⁾(인하 전 4INR)로, 디젤 수출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리터당 5.50INR³⁶⁵⁾(인하 전 6INR)로 인하함
- ▣ 해당 개정은 2023년 9월 16일부터 발효됨

라. 운송, 광고,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GST 공급장소 규칙 명확화

[조세동향 23-11호]

- ▣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는 10월 27일 GST 위원회가 제안한 권장 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운송, 광고,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세(GST)에 따른 공급장소 규칙을 명확히 하는 회보를 발행함³⁶⁶⁾

361) IBFD, “India Increases Windfall Tax on Crude Oil Production, Marginally Reduces Tax on Diesel Export,” 2023.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1_in_2.html, 검색일자: 2023. 10. 23.

362)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만 8,674원임

363)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2,200원임

364)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77원임

365)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21원임

366) IBFD, “India Clarifies Place of Supply Rules in GST for Transport, Advertising, Co-location Services,”

- ▣ 물품 운송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알려진 경우 그곳이 공급장소가 되며,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수령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장소는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임

 - ▶ 해당 규정은 표준 운송 서비스와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모두에 적용됨

- ▣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광고 서비스는 광고회사에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에 따라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 또는 광고회사의 소재지 등이 광고용역의 공급지가 됨

 - ▶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판/구조물의 제공이 있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IGST 법 Section 12(3)(a)³⁶⁷⁾에 따라 그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에 의해 광고 서비스의 공급지가 결정됨
 - ▶ 광고회사가 광고장소 제공업자가 제공한 구조물에 자신의 광고를 표시하려고 하고, 그 광고회사에 광고 공간에 대한 매각이나 동산사용권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광고회사에 의한 광고 공간의 판매 또는 동산 사용권한 부여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광고장소 제공업자가 광고회사에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
 - 이러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지는 IGST 법 Section 12(2)에 따라 광고회사가 등록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소재지,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경우(회사 등) 기록상 주소가 존재하는 수취인의 소재지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소재지로 결정됨

- ▣ 코로케이션 서비스³⁶⁸⁾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수령인의 위치 또는 부동산의 위치가 공급장소가 됨

 - ▶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공급자가 충분한 호스팅 및 IT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IGST 법 Section 12(2)에 따라 서비스 수령인의 위치 등에 의해 공급지가 결정됨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1_in_2.html 2023. 11. 1. 검색일자: 2023. 11. 27.

367) IGST, Section 12(3)(a):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directly in relation to an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services provided by architects, interior decorators, surveyors, engineers and other related experts or estate agents, any service provided by way of grant of rights to use immovable property or for carrying out or co-ordination of construction work shall be the location at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or boat or vessel, as the case may be, is located or intended to be located

368) Co-location Service란 '호스팅 및 정보 기술(IT)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서, 물리적 공간 임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버 및 하드웨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결, 백업 시설, 방화벽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감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서비스임

- ▶ 그러나 기본 인프라를 갖춘 물리적 공간의 임대만 포함되고 호스팅 및 IT 인프라 제공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부족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공급장소는 IGST법 제12(3)(a)조에 따라 인프라가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로 결정됨

4 인도네시아

가. 현물 혜택의 과세 처리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특정 현물 혜택(benefits-in-kind, BIK)의 과세 처리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³⁶⁹⁾
- ▣ 해당 지침에는 과세 대상 특정 현물 혜택과 비과세 대상 특정 현물 혜택이 규정됨
 - ▶ 지침에 따르면 2022년에 직원이 받은 BIK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3년 1월부터 6월 까지 수령한 BIK는 과세 대상임
 - 고용주가 BIK가 과세되는 과세기간과 관련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2023년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및 신고해야 함
 - ▶ 비과세 대상 특정 현물 혜택의 경우 직장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또는 음료 및 업무용 의복, 작업안전 장비, 종교시설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됨

나.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³⁷⁰⁾

369) IBFD, "Indonesia Issues Further Guidance on Tax Treatment of Benefits-In-Kind," 2023. 7.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17_id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370) IBFD, "Indonesia Issues Further Guidance on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2023. 8.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9_id_1.html, 검색일자: 2023. 8. 17.

- ▣ 해당 지침에는 건물,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무형자산, 가축 등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됨
 - ▶ 납세자는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영구 건물(일시적인 건물이 아닌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해 자신의 장부 기준 실제 내용연수 또는 20년 중 하나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음
 - 2022년 과세연도 이전에 소유 및 사용되었으며 20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된 영구 건물과 무형자산의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통지를 제출하여 납세자의 장부를 기준으로 실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영구 건물은 일괄적으로 20년에 걸쳐 감가상각함
 -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의 수리비는 해당 자산의 회계상 순장부가액으로 자본화된 후 감가상각비로 처리됨
 - ▶ 최대 1년 동안 사육 후 번식하는 가축은 최대 4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음

5 홍콩

가.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감면 시행 발표

[조세동향 23-11호]

- ▣ 홍콩 정부는 2023년 11월 15일, 투자자의 비용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에 부과되는 인지세(Stamp duty) 인하 법안을 통과시킴³⁷¹⁾
 - ▶ 2023년 입법 의회 법안 발표에서 제시된 주식 양도 인지세율 인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해당 법안 시행으로 인지세율이 0.13%에서 0.1%로 인하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

371) IBFD, "Hong Kong Enacts Reduction of Stamp Duty on Stock Transfers," 2023. 11.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6_hk_1.html, 검색일자: 2023. 10. 16.

6 호주

가. 세제 및 재정 관련 옴니버스 법안 상원 통과

[조세동향 23-07호]

- ▾ 호주 상원은 2023년 6월 14일, 세제 및 재정과 관련한 옴니버스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2022 Measures No. 4) Bill 2022)을 통과시켰^{372), 373)}

 - ▶ 본 법안은 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게임회사 및 소형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하원 통과를 예상하고 있음
 - 문화 부문을 지원하는 호주 정부의 다개년 실행 계획의 일부로서, 창작물의 개발에 50만호주달러³⁷⁴⁾ 이상을 지출하는 디지털 게임업체에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 소형 기업은 운영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교육 및 투자와 관련하여, 최대 2만호주달러³⁷⁵⁾까지 20%의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 또한 근로자가 국세청에 진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세법상 복리후생 관련 사항을 보고할 때 해당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함

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회계표준 개정

[조세동향 23-07호]

- ▾ 호주 회계표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23년 7월 5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한 공시를 수용하기 위해, 소득세 회계를 다루는 회계 표준 AASB 112를 개정함³⁷⁶⁾

372) Parliament of Australia, "Treasury Laws Amendment (2022 Measures No. 4) Bill 2022,"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6946, 검색일자: 2023. 7. 20.

373) Bloomberg Tax, "Australia Senate Passes Bill With Tax, Finance Law Changes," 2023. 6. 20.,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australia-senate-passes-bill-with-tax-finance-law-changes-3>, 검색일자: 2023. 7. 20.

374) 2023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3,392만원임

375) 2023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4만원임

- ▶ 본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부터 적용됨
 -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경상적인 세무 비용이나 소득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 ▶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 ▶ 개정안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정량 및 정성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량적 정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이익 비율 및 해당 이익에 적용되는 평균 유효세율 등이 해당됨
 - 정성적 정보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권역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포함됨

다. 조세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발표

[조세동향 23-0호]

-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8월 10일 조세 건전성(tax integrity)을 강화하고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함³⁷⁷⁾
 - ▶ 본 개혁안은 여성부, 재무부, 공공서비스부, 법무부, 금융서비스부 장관의 공동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짐
- ▾ 조세회피를 주도한 발기인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하여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함
 - ▶ 조세포탈 계획 주도에 대한 벌금을 최대 7억 8,000만호주달러³⁷⁸⁾까지 10배 인상함
 - ▶ 호주 국세청이 조세회피 발기인 처벌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행위 발생 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함

376) IBFD, "Australia-Standards Board Amends Accounting Standard to Accommodate Pillar Two Disclosures," 2023.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7-05_au_1, 검색일자: 2023. 7. 19.

377) IBFD, "Australia-Treasury Announces Reforms to Strengthen Tax Integrity, Counter Multinational Tax Avoidance," 2023. 8.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8-10_au_1, 검색일자: 2023. 8. 22.

378) 2023년 9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48억 8,760만원임

- ▾ 호주 국세청 및 공인세무사협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와 같은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함
 - ▶ 세무대리인의 조사를 제한하던 조세비밀보호법(Tax Secrecy Laws)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 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전문협회에 윤리적 위법 행위를 회부할 수 있게 함
- ▾ 세부적인 규제 조치와 관련한 재무부 검토를 포함한 협의를 진행한 후, 관련 법안을 2023년에 도입하고자 함
 - ▶ 다양한 발기인의 활동 유형을 포괄하는 발기인 처벌법, 조세 시스템의 계획적 남용에 의한 신종 사기 및 위협요소 등과 관련한 협의가 포함됨
 - ▶ 또한 세무조사 시 비밀유지 특권과 국세청의 필수정보 수집 권한, 국세청 및 공인세무사협회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라. 2023년 R&D 세제혜택 청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8월 16일, 2023년 소득세 R&D 세제혜택 청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³⁷⁹⁾
 - ▶ R&D 관련 사업자는 세제혜택 청구 전 R&D 활동을 등록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R&D 세제혜택 요율(tax incentive schedule)을 기재해야 함
 - 연매출 2,000만호주달러³⁸⁰⁾ 이상인 R&D 공제 대상 기업의 소득공제율은 R&D 집중도(R&D intensity) 2% 이하 지출은 8.5%, 2%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16.5%임
 - 연매출 2,000만호주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은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 세율에 18.5%를 더한 요율로 이루어짐
 - ▶ 국외에서 수행된 R&D 활동은 국외 공제와 관련한 Overseas Findings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
 - ▶ 또한 일반적인 회피 방지 규칙에 따라 공제가 취소될 수 있음

379) Bloomberg Tax, "Australia Tax Agency Clarifies R&D Tax Incentive Claims for 2023," 2023. 8. 2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tax-agency-clarifies-r-d-tax-incentive-claims-for-2023>, 검색일자: 2023. 8. 22.

380) 2023년 9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48억 8,760만원임

마. 원천징수 분할납부(PAYG installment) 관련 정보 업데이트

[조세동향 23-09호]

-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9월 12일, 사업 및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할납부(이하 'PAYG(pay-as-you-go installment)'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함^{381), 382)}

 - ▶ PAYG installment 납부 방식을 정액으로 선택하는 경우 호주 국내 GDP 조정계수에 따라 2023-24회계연도의 분할납부액을 6% 인상함
 - ▶ PAYG instalment는 사업 및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년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신고서 제출 시 큰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정액과 요율 중 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된 납부액은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재평가함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최종 세금신고서에서 특정 소득액이 4,000호주 달러³⁸³⁾ 이상이거나, 미납세액이 1,000호주달러³⁸⁴⁾ 이상, 예납세액이 500호주달러³⁸⁵⁾ 이상인 경우 PAYG installment 대상에 자동 등록함
 - 또한 제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자발적인 원천징수 분할납부를 권장함

바. R&D 세제 혜택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조세동향 23-11호]

-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10월 12일, 2024년부터 시작되는 R&D 세제혜택 투명성 보고서

381) Australian Taxation Office, "Pay as you go instalments for business and investment income," 12 Sep 2023,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Employer-information/Pay-as-you-go-instalments-for-business-and-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3. 9. 20.

382) Bloomberg Tax, "Australia Tax Agency Issues Information on PAYG Withholding Installments for Business, Investment Income,"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state/australia-tax-agency-issues-information-on-payg-withholding-installments-for-business-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3. 9. 20.

383)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5만 4,560원임

384)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만 3,710원임

385)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만 1,880원임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내 비즈니스 게시판 뉴스룸(business bulletins newsroom)에 발표함³⁸⁶⁾, ³⁸⁷⁾

- ▶ 이는 2021년 7월 1일 R&D 세제 혜택 프로그램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24년 9월부터 국세청에서 작성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매년 R&D 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지니게 됨
 - 보고서에는 기업명, 사업자 번호(ABN) 또는 회사 번호(ACN), 총 공제액 내용이 포함되며, 국세청은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2년 후에 R&D 지출액을 공개함
- ▶ 이와 함께 R&D 세액공제 청구 내용에 대한 무작위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 2022년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소득연도가 2021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 R&D 기업들이 첫 대상이 됨

사. 기업의 장외 자사주 매입 단속 법안 상원 승인

[조세동향 23-11호]

- ▣ 호주 상원은 2023년 11월 15일, 기업의 장외 자사주 매입 허용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 Treasury Laws Amendment(Off-Market Share Buy-Backs) Bill 2022을 최종 승인함³⁸⁸⁾
 - ▶ 기업들이 장외 주식 매입을 통한 세액공제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어 주주들에게 보다 높은 세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임
 - 최근 회계연도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변칙적 대규모 장외 주식매수 및 비일상적 자본조달을 하는 상장회사의 사례가 47회 발견됨
 - ▶ 이에 따라 장외 주식과 장내 주식의 배당금 관련 내용을 일치시켜, 세법상 불평등을 종식시키고자 함
 - 지금까지는 장외 주식의 매수 금액을 어떤 계정에서 출자하는지에 따라 주주의 배당

386) Australian Tax Office, "Our new requirement to publish R&D expenditure information," 2023. 11. 9., <https://www.ato.gov.au/newsrooms/tax-professionals-newsroom/our-new-requirement-to-publish-r-d-expenditure-information>, 검색일자: 2023. 11. 23.

387) Bloomberg Tax, "Australia Aims to Report R&D Tax Information in September 2024,"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aims-to-report-r-d-tax-information-in-september-2024>, 검색일자: 2023. 11. 23.

388) Bloomberg Tax, "Australian Lawmakers Back Crackdown on Share Buyback Tax Credits," 2023. 11. 15.,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n-lawmakers-back-crackdown-on-share-buyback-tax-credits>, 검색일자: 2023. 11. 23.

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전면 금지함³⁸⁹⁾

- ▶ 본 법안은 기타 추가적인 변경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음
 - 세무실무자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함
 -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됨
 - 세무대리인은 매년 재등록이 요구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함

7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조세동향 23-07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7월 9일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³⁹⁰⁾
-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동의 후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결정을 채택한 뒤, 뉴질랜드가 비준하면 협정이 발효됨
- ▶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 발효 시 뉴질랜드와 EU 가입국 간의 수출 관세가 철폐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촉진되며, EU 제품을 보호하고 EU 표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이 시행된다고 밝힘³⁹¹⁾
- ▶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sustainable food systems), 무역 및 양성 평등(trade and gender equality), 무역 및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trade and fossil fuel subsidies reform)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EU의 새로운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 방식을 통합한 최초의 협정임

389) The Treasury, "Exposure Draft Explanatory Materials: Treasury Laws Amendment (Off-Market Share Buy-Backs) Bill 2022," p. 9,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2-11/c2022-336731-bill-exm.pdf>, 검색일자: 2023. 11. 23.

390) IBFD, "European Union; New Zealand-European Union and New Zealand Sign FTA," 2023. 7.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7-10_e2_1, 검색일자: 2023. 7. 19.

39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New Zealand: Council adopts the decision to sign free trade agreement," 2023. 6. 2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6/27/eu-new-zealand-council-adopts-the-decision-to-sign-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8. 3.

나. 2023 미니예산 발표

[조세동향 23-12호]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3년 12월 20일, 10월 총선에서 계획한 세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2023 미니 예산을 발표함^{392), 393)}
 - ▶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보유 기간(Bright-line property rule)을 2024년 7월 1일 매도 건부터 2년으로 단축함
 - 기존에는 2021년 3월 27일 이후 매매하는 기존 부동산의 경우 보유 10년 이내, 적격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보유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음³⁹⁴⁾
 - ▶ 2024년 4월 1일부터 산업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를 폐지하고, 주요 세제 혜택 관련 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함
 - ▶ 본 조치 이후 소득세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예정임
 - 보육비용 환급(Family Boost childcare tax rebate)의 설계 및 시행과 근로소득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임
 -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 공제 복원과 관련하여 단계별 세부 사항을 준비 중에 있음

392) Inland Revenue, "Mini Budget 2023," 2023. 12. 20, <https://www.taxpolicy.ird.govt.nz/news/2023/2023-12-20-mini-budget-23>, 검색일자: 2023. 12. 26.

393) New Zealand Government, "First steps for tax and income relief announced," 2023. 12. 20., <https://www.beehive.govt.nz/release/first-steps-tax-and-income-relief-announced>, 검색일자: 2023. 12. 26.

394) Inland Revenue, "The bright-line property rule," <https://www.ird.govt.nz/property/buying-and-selling/when-you-need-to-pay/the-brightline-property-rule>, 검색일자: 2023. 12. 27.

IV 국제기구

1 OECD

가. 조세 관련 자동정보교환 국제기준 최종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OECD는 2023년 6월 8일, “조세 관련 자동정보교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최종보고서를 발표함³⁹⁵⁾
 - ▶ 새로운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제공함
 - 다른 관할국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공통 접근법을 제공함
 - 용역 제공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관할국에 규칙 관련 주석서를 제공함
 -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협약을 제공하고, 관할국은 양자 협약 또는 조약도 이용 가능함
 - 개별 관청이 CARF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후속 교환 시 사용할 수 있는 XML 포맷을 제공함
 - ▶ ‘공통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수정함
 - 가상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도 CRS의 범위로 포섭함
 - 과세관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함

395)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2023. 6. 8., <https://www.oecd.org/ctp/international-standards-for-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in-tax-matters-896d79d1-en.htm>, 검색일자: 2023. 6. 27.

나. 필라1·2 경과보고서 공개

[조세동향 23-08호]

- ▾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3년 7월 11일, BEPS 프로젝트 필라 1 및 필라2와 관련된 작업을 발표하고, 두 개의 필라 이행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할 예정임³⁹⁶⁾
 - ▶ 필라1과 관련하여 작업을 마무리하고, Amount B에 대한 초안을 공개함
 - Amount A와 관련하여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에 필요한 문서를 공개하였으며, 2023년 연말까지 서명이 예정되어 있음
 - OECD는 2023년 7월 17일, Amount B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적용대상 및 가격 체계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2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함³⁹⁷⁾

다. 필라2 행정지침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추가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3년 7월 17일, BEPS 프로젝트 필라2와 관련하여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를 추가 발표함
- ▾ 필라2 행정지침은 2023년 2월에 발표된 행정지침에 이어 필라2 모델규정 및 주식서의 상세한 적용을 위하여 추가로 발표된 지침임³⁹⁸⁾
 - GloBE 규칙을 위한 일반 통화 환산 규칙, 세액공제 지침, 실질기반제외소득(Substance-based

396) 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public input on Amount B under Pillar One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amount-b-under-pillar-one-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 검색일자: 2023. 7. 31.

397)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Subject to Tax Rule (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subject-to-tax-rule-pillar-two-9afd6856-en.htm>, 검색일자: 2023. 7. 31.

39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july-2023.pdf>, 검색일자: 2023. 7. 31.

Income Exclusion),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적격 소재국 추가세 세이프하버 및 경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세이프하버의 내용을 담음

- ▶ 수정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기존 발표되었던 신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됨³⁹⁹⁾
 - 신고서는 부록으로 데이터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 지침을 제공함
 - 데이터 항목은 '다국적기업 그룹 정보, 관할국별 세이프하버 및 제외, GloBE 산정'으로 구성됨

라. “Tax Policy Reform 2023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23-09호]

- ▣ OECD는 2023년 9월 13일, “Tax Policy Reform 2023 보고서”를 발간하여 OECD 회원국 등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75개 관할국에서 지난 2022년에 발표 및 이행된 주요 세제개편을 다룸⁴⁰⁰⁾
 - ▶ 세제개편의 배경이 된 거시경제 환경과 세수 확보의 맥락을 살펴봄
 - 세제개편의 주요 요인이 되는 2022년 말까지의 거시경제 환경 조건(성장, 인플레이션, 생산성, 투자, 노동 시장 및 공공 재정)을 설명함
 - 세수 확보의 맥락 및 조세체계의 경향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2021년 명목 세수는 OECD 전체 평균 명목 GDP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의 조세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난 10년간의 체계와 유사함
 - ▶ 각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소비세, 환경세 등 각 세목에서 시행한 세제개편을 다룸
 - 각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관련 상품에 대한 조세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삼음
 - 나아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

399)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E Information Return (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globe-information-return-pillar-two.pdf>, 검색일자: 2023. 7. 31.

400) OECD, “Countries deploy tax policy to shield households and businesses from decade-high inflation,” 2023. 9. 13., https://www.oecd.org/tax/countries-deploy-tax-policy-to-shield-households-and-businesses-from-decade-high-infla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4-09-23&utm_content=Press%20releas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9. 19.

여 기존의 조세 제도를 수정하였으며,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활동을 과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정함

마.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 현재안 발표

[조세동향 23-10호]

- ▾ OECD는 2023년 10월 11일,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 현재안을 발표함⁴⁰¹⁾
 - ▶ MLC 현재안은 조약문과 설명지침으로 구성됨
 - 필라1 Amount A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회원국의 현 시점에서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정 항목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이견은 각주로 표시함
 - ▶ 필라1 Amount A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관할국에 재배분함
 - 국제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향상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 및 관련 유사 조치를 폐지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바. 필라2 STTR 다자협약 발표 및 최저한세 이행 편람 발간

[조세동향 23-10호]

- ▾ OECD는 2023년 10월 3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을 발표함⁴⁰²⁾
 - ▶ 필라2 STTR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관할국은 기존의 양자조약에 이를 도입하는

401) OECD,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new multilateral convention to address tax challenges of globalisation and digitalisation,” https://www.oecd.org/newsroom/inclusive-framework-releases-new-multilateral-convention-to-address-tax-challenges-of-globalisation-and-digitalisa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2-10-23&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10. 13.

402)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s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adopts-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implementation-of-the-global-minimum-tax-subject-to-tax-rule.htm>, 검색일자: 2023. 10. 31.

- 것이 허용되며, 기존의 양자조약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MLI에 의해서도 가능함
- IF 회원국 중 7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9%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IF 회원국에 대해 그 조약에 STTR 도입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STTR MLI는 조약문과 설명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0월 서명 절차가 시작됨⁴⁰³⁾
- ▶ 원천지국 과세규칙(STTR)은 GloBE 규칙에 더하여 필라 2의 핵심적 요소로서 조약에 기반하는 규칙임
- 특정 그룹 내 지급에 9% 미만의 명목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 이익이 발생한 원천지국(개발도상국에 한함)이 기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지급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 OECD는 2023년 10월 11일, “최저한세 이행 편람(필라 2)”을 발간함⁴⁰⁴⁾
- ▶ 편람은 필라 2 GloBE 모델규정의 구조와 주요 조문(제1조부터 제5조)을 간략하게 안내함
 - ▶ 필라 2 이행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서 각 정부가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결정 및 이행 단계에 대해 설명함
 - 필라 2의 이행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에 따라야 하고 현재 상당수의 관할국은 GloBE 규칙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음
 - 결정 단계에서는 관할국이 GloBE 규칙의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관할국 내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 금액 및 15% 미만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이익 금액 등을 평가한 후 개정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음
 - 이행 단계에서는 입법 기술상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일관되고 조화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하며, 관할국은 합의된 행정지침(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세이프하버 및 행정 관련 사항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

403)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tax/beps/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the-implementation-of-the-pillar-two-subject-to-tax-rule.htm>, 검색일자: 2023. 10. 31.

404) OECD, “Minimum Tax Implementation Handbook(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minimum-tax-implementation-handbook-pillar-two.htm>, 검색일자: 2023. 10. 13.

2 EU

가.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3-07호]

-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6월 30일, 필라1과 관련한 진행상황 보고서(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 Progress Report on Pillar One)⁴⁰⁵⁾를 발표함⁴⁰⁶⁾

 - ▶ 현재 필라1은 OECD 단계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번에 발표한 EU 집행위원회의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에는 필라1에 대한 소개, 필라1 관련 OECD의 계획 일정 및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담음
 - ▶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사무국은 2023년 7월 10~12일 중 필라1 관련 기술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자간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MLC) 및 설명 지침(Explanatory Statement)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임⁴⁰⁷⁾
 - 이후 다자간협정의 서명식은 2023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 또한 OECD 사무국은 7월 중 Amount B의 주요 요소에 관한 예비적 협정(preliminary agreement)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⁴⁰⁸⁾
 - ▶ EU 집행위원회는 다자간협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OECD 사무국의 2023년 7월 다자간협정 및 설명 지침 패키지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 EU 수준에서 필라1이 적시에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405)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Progress Report on Pillar One," 2023. 6. 3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docs_autres_institutions/commission_europeenne/com/2023/0377/COM_COM\(2023\)0377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docs_autres_institutions/commission_europeenne/com/2023/0377/COM_COM(2023)0377_EN.pdf), 검색일자: 2023. 7. 20.

406) IBFD,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Reports to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n Pillar One Progress," 2023. 6.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30_e2_1.html, 검색일자: 2023. 7. 20.

407)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제15차 총회(2023년 7월 10~12일)에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하였음(OECD, "138 countries and jurisdictions agree historic milestone to implement global tax deal," 2023. 7. 12., <https://www.oecd.org/tax/beps/138-countries-and-jurisdictions-agree-historic-milestone-to-implement-global-tax-deal.htm>, 검색일자: 2023. 8. 2.)

408) OECD는 2023년 7월 17일, Amount B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적용 대상 및 가격 체계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2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임(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public input on Amount B under Pillar One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2023. 7. 17.,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amount-b-under-pillar-one-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 검색일자: 2023. 8. 2.)

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조세동향 23-07호]

-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6월 16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⁴⁰⁹⁾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5월 정식으로 발효된 바 있으며, EU 역내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과 EU 탄소배출 규제기준과의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부과하게 되는 제도임⁴¹⁰⁾
-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치며 본격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를 계획으로 하고 있음

 - 규정 초안은 CBAM 전환기간 중 EU 역외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음
 - 보고 당사자, 보고 항목, 보고서 제출 및 수정기한, 보고서 검토와 평가 및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음
- ▶ 의견수렴은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 규정 확정안 발표

[조세동향 23-08호]

-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8월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환기 적용을 위한 이행 규정 확정안을 발표함⁴¹¹⁾
- ▶ CBAM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3년 10월부터 2025년말까지 전환기로 정한 바 있음

409) European Commissi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starts applying in its transitional phase as of 1 October: Commission consults on reporting obligations," 2023. 6.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243, 검색일자: 2023. 7. 20.

4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5호』, p. 25

41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adopts detailed reporting rules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transitional phase," 2023. 8. 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186, 검색일자: 2023. 8. 23.

- ▶ 전환기에는 각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방식 등이 담김
 - 의무보고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가지 품목임
- ▶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페널티가 부과됨
 - 다만, EU는 전환기 초반에 해당하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EU의 산정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라.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EFIT) 이니셔티브 제안 발표

[조세동향 23-10호]

-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9월 12일,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BEFIT) 이니셔티브의 제안을 발표함^{412), 413)}
 - ▶ BEFIT은 기업의 각 회원국별 모든 수익을 통합한 후 각 회원국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배분방식은 기업의 각 회원국 내 매출, 자산 및 인력 현황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준비된 공식에 따라 각 회원국에 과세 대상 수익을 분배하도록 함
 - 다만 BEFIT에 최소법인세 또는 EU 단일 법인세율 등은 도입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분배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자체적인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함
 - ▶ BEFIT은 과거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 이상 연간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며, 최종 모기업이 소유권의 최소 75%를 보유하는 기업 그룹에 대해 적용됨

412) IBFD,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BEFIT Proposal," 2023. 9.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13_e2_1, 검색일자: 2023. 10. 4.

413) Bloomberg Tax,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Directive on Transfer Pricing, BEFIT Framework to Simplify Cross-Border Taxation," 2023. 9.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7B3KG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82YjA5MTUwOTc3YjU1M2Y5OTgyYWlWZDhiNDUzM2Q0NyJdXQ-1fb0f21b045a80dc6c1d23a2d9a53f503a1f6775&criteria_id=6b09150977b553f9982ab0d8b4533d47&search32=bHwzjig-O99zyIO5WMwWdQ%3D%3DQ-1PiJ8Uw1G61CvzjhYXbXc_edHB2ayFBhHFSROHiU61aZmEewSwnOMKCKFm4NZg6u-fZUJtKa5NTubs3DCYazc10vw_Yx9TH4Np103GEkM%3D, 검색일자: 2023. 10. 10.

- ▶ BEFIT은 EU의 법인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며, 회원국과 다국적기업 간 이른바 ‘세계 혜택거래(sweetheart deals)’를 방지하고, 수익이 창출된 회원국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EU는 BEFIT의 도입으로 기업의 EU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최대 65%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⁴¹⁴⁾
- ▶ BEFIT 이니셔티브가 유럽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각 회원국은 BEFIT을 2028년 1월 1일까지 국내법에 도입하고 2028년 7월 1일부터 BEFIT 조항을 적용해야 함

마. EU 5개국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연기

[조세동향 23-12호]

- ▣ 유럽연합은 2023년 12월 12일, EU 회원국 중 5개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415), 416)}
 - ▶ 해당 5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임
 - ▶ EU 최저한세 지침(EU Minimum Tax Directive)은 글로벌 최저한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가 12개보다 적은 경우, 이행의 연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해당 5개국은 자국 내 본사를 둔 기업 중 글로벌 최저한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국가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연기를 발표한 것임
 - ▶ 이에 따라 해당 5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6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EU 회원국들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운영을 개시해야 함
 - 다만 해당 5개국은 이행을 연기하더라도, EU 최저한세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414)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new proposals to simplify tax rules and reduce compliance costs for cross-border businesses,” 2023. 9. 1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05, 검색일자: 2023. 10. 10.

415) European Union, “Commission Notice - Election to delay application of the IIR and UTPR under Article 50 of the Pillar Two Directive,” 2023. 12.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C_202301536, 검색일자: 2023. 12. 20.

416) IBFD, “European Union; Estonia; Latvia; Lithuania; Malta; Slovak Republic - Five EU Member States Delay Application of Pillar Two IIR and UTPR,” 2023.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12_e2_1.html, 검색일자: 2023. 12. 20.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2호

2023년 12월 28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범신사

I S S N 3058-205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

